연구보고서 2005-07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백화종 원종욱 이정우
김태완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경제위기이후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의 깊은 늪을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까지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는 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시도되었으며, 거시적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되 고용 없는 성장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나라 성장동력에 대한 의문점들이 드러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및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은 노동시장에 있어 비정규직의 양산과 소득양극화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국민연금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미시적으로는 가입자들의 자격변동에 따른 소득등급의 하락, 가입기간의 축소, 납부예외문제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기금운용 수익률 보전의 어려움, 연금 사각지대-여성,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의 증가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에의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및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시장 및 국민연금의 변화를 분석하고, 실제 연금가입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추계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본원의 백화종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종욱 연구위원, 김태완, 김문길 연구원 등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진들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조언을 해주신 KDI 정책대학원의 유일호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중렬 교수 및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와 자료를 제공해주고 상담을 통해 많은 조언을 해준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철 원장,

이용하 선임연구위원 및 강성호 주임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들은 바쁜 일정 가운데도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준 본원의 최병호 연구위원과 김수봉 책임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있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요약 ····· 15

제1장 서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7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 39
제3절 주요 연구내용 ····· 44
제4절 선행연구 ····· 45

제2장 경제여건 변화와 국민연금 현황 ····· 48
제1절 경제여건 변화 ····· 48
제2절 국민연금제도 현황 ····· 73

제3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가입실태의 변화 ····· 78
제1절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가입실태 ····· 78
제2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민연금 구조변화 ····· 89
제3절 국민연금가입자 자격변동에 따른 실태변화 ····· 108

제4장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연금재정(Simulation) ····· 118

제5장 선진국의 경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134
제1절 조기퇴직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방안 ····· 134
제2절 여성의 수급권 보장 ····· 143
제3절 소결 ····· 156

제6장 결론 ····· 157

참고문헌 ····· 162

부 표 ····· 165

표 목 차

〈표 2- 1〉 (연구분석을 위한) 근로자 분류체계 ····· 50
〈표 2- 2〉 고용형태 변화추이 ····· 52
〈표 2- 3〉 산업별 근로자 구성비 변화 ····· 54
〈표 2- 4〉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산업별 근로자수 변화추이 ····· 55
〈표 2- 5〉 산업별 고용형태별 근로자수(2004년 기준) ····· 56
〈표 2- 6〉 고용형태의 산업별 근로자수 비중(2004년 기준) ····· 57
〈표 2- 7〉 산업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중(2004년 기준) ····· 57
〈표 2- 8〉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별 근로자(2004년 기준) ····· 58
〈표 2- 9〉 인구학적 특성별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4년 기준) ····· 60
〈표 2-10〉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형태별 근로자(2001년 기준) ····· 60
〈표 2-11〉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형태별 근로자(2002년 기준) ····· 61
〈표 2-12〉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형태별 근로자(2003년 기준) ····· 61
〈표 2-13〉 인구학적 특성별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1년 기준) ····· 62
〈표 2-14〉 인구학적 특성별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2년 기준) ····· 62
〈표 2-15〉 인구학적 특성별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3년 기준) ····· 63
〈표 2-16〉 연도별 각 지표별 변화추이(1988～2004) ····· 64
〈표 2-17〉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66
〈표 2-18〉 연령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1년 기준) ····· 66
〈표 2-19〉 연령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2년 기준) ····· 67
〈표 2-20〉 연령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3년 기준) ····· 67
〈표 2-21〉 연령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4년 기준) ····· 68
〈표 2-22〉 연도별 소득분위별 임금근로자 추이 ····· 69
〈표 2-23〉 연도별 소득분위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추이 ····· 70
〈표 2-24〉 분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소득비율 추이 ····· 71

〈표 2-25〉 5분위소득 비율 변화 ····· 72
〈표 2-26〉 퇴직연령대별 분포 ····· 73
〈표 2-27〉 국민연금 가입자 및 납부자 현황 ····· 74
〈표 2-28〉 사유별·연령별 납부예외자 현황(2004년 12월) ····· 75
〈표 2-29〉 연령대별 납부예외 사유(2004년 12월) ····· 75
〈표 2-30〉 급여종류별 지급현황(2004년 12월) ····· 76
〈표 2-31〉 성별 가입자 변화추이 ····· 77
〈표 2-32〉 성별 가입자 증가율 변화 ····· 77
〈표 3- 1〉 연도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 79
〈표 3- 2〉 연도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자비율 변화(연령통제시) ····· 80
〈표 3- 3〉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구성비의 변화 ····· 81
〈표 3- 4〉 연도별 연령별 전체근로자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추이 ····· 82
〈표 3- 5〉 연도별 연령별 국민연금가입자 추이 ····· 86
〈표 3- 6〉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1년기준) ····· 86
〈표 3- 7〉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2년기준) ····· 87
〈표 3- 8〉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3년기준) ····· 87
〈표 3- 9〉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4년기준) ····· 87
〈표 3-10〉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1년기준) ····· 88
〈표 3-11〉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2년기준) ····· 88
〈표 3-12〉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3년기준) ····· 88
〈표 3-13〉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4년기준) ····· 89
〈표 3-14〉 연령별 국민연금가입자 변화추이 ····· 89
〈표 3-15〉 연령대별 가입자의 증가율 변화 ····· 90
〈표 3-16〉 소득등급별 가입자 변화추이(2004. 12월기준) ····· 92
〈표 3-17〉 연도별 소득분위별 국민연금가입자 추이 ····· 94
〈표 3-18〉 연도별 소득분위별 전체근로자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추이 ····· 95
〈표 3-19〉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용형태별 소득분위별 분포(2001년) ····· 96
〈표 3-20〉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용형태별 소득분위별 분포(2002년) ····· 96

〈표 3-21〉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용형태별 소득분위별 분포(2003년) ····· 97
〈표 3-22〉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용형태별 소득분위별 분포(2004년) ····· 97
〈표 3-23〉 국민연금 가입자의 산업별 소득분위별 고용형태별 분포(2001년) ····· 98
〈표 3-24〉 국민연금 가입자의 산업별 소득분위별 고용형태별 분포(2002년) ····· 99
〈표 3-25〉 국민연금 가입자의 산업별 소득분위별 고용형태별 분포(2003년) ····· 100
〈표 3-26〉 국민연금 가입자의 산업별 소득분위별 고용형태별 분포(2004년) ····· 101
〈표 3-27〉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및 2004년 가입유형(전체) ····· 103
〈표 3-28〉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및 2004년 가입유형(전체) ····· 104
〈표 3-29〉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및 2004년 등급변동(전체) ····· 106
〈표 3-30〉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및 2004년 등급변동(전체) ····· 107
〈표 3-31〉 연도별 성별 사업장 및 지역의 신규가입자 추이 ····· 108
〈표 3-32〉 연도별 성별 사업장 및 지역의 탈퇴자 추이 ····· 109
〈표 3-33〉 연도별 연령별 사업장 및 지역 의 신규가입자 추이 ····· 110
〈표 3-34〉 연도별 연령별 사업장 및 지역의 탈퇴자 추이 ····· 111
〈표 3-35〉 연도별 등급별 사업장 및 지역의 신규가입자 추이 ····· 113
〈표 3-36〉 연도별 등급별 사업장 및 지역의 탈퇴자 추이 ····· 114
〈표 3-37〉 연도별 산업별 사업장 및 지역의 신규가입자 추이 ····· 116
〈표 3-38〉 연도별 산업별 사업장 및 지역의 탈퇴자 추이 ····· 117
〈표 4- 1〉 1998년대비 2004년 기준 연금가입자중 등급상승자들의 수지분석 ····· 121
〈표 4- 2〉 1998년대비 2004년 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들의 수지분석 ····· 123
〈표 4- 3〉 1998년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등급별 분포 ····· 125
〈표 4- 4〉 2004년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등급별 분포(1998년기준) ····· 126

〈표 4- 5〉 2004년 지역가입자의 연령별·등급별 분포(1998년기준) …… 127
〈표 4- 6〉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대비 등급상승한 자의 1998년 연령별·
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 128
〈표 4- 7〉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대비 등급상승한 자의 2004년 연령별·
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 129
〈표 4- 8〉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대비 등급하락한 자의 1998년 연령별·
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 130
〈표 4- 9〉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대비 등급하락한 자의 2004년 연령별·
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 131
〈표 4-10〉 2004년 지역가입자의 사업장자격변동전 1998년까지의 연령·
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 132
〈표 4-11〉 2004년 지역가입자의 연령·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1998년기준) …… 13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분석틀 …… 41
〔그림 2-1〕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성비의 변화 …… 53
〔그림 2-2〕 분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소득비율 추이 …… 71
〔그림 2-3〕 5분위소득 비율 변화 …… 72
〔그림 2-4〕 성별 가입자 증가율 변화 …… 77
〔그림 3-1〕 국민연금가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임금근로자전체) …… 83
〔그림 3-2〕 국민연금가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정규직) …… 84

〔그림 3-3〕 국민연금가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비정규직) …… 85
〔그림 3-4〕 연령대별 가입자의 증가율 변화 …… 90
〔그림 3-5〕 연령대별 가입자의 구성비의 변화 …… 91
〔그림 3-6〕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비중 변화 …… 92
〔그림 3-7〕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비중 변화 …… 93
〔그림 5-1〕 점진적 퇴직의 진행과정과 부분연금제도의 기능 …… 136

부 표

〈부표 1〉 산업별 고용유형의 분포(2001년) …… 167
〈부표 2〉 산업별 고용유형의 분포(2002년) …… 168
〈부표 3〉 산업별 고용유형의 분포(2003년) …… 169
〈부표 4〉 산업별 고용유형의 분포(2004년) …… 170
〈부표 5〉 산업별 고용별 근로자수(2001년 기준) …… 171
〈부표 6〉 산업별 고용별 근로자수(2002년 기준) …… 172
〈부표 7〉 산업별 고용별 근로자수(2003년 기준) …… 173
〈부표 8〉 근로형태별 사회보험적용여부(2004년 기준) …… 174
〈부표 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적용여부(2004년 기준) …… 174

Abstracrt

The Impact of Recent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 on National Pension Scheme

Introduced in 1988,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has become a universal social insurance program, with the extension of its coverage in 1999 to the urban self-employed. But the wide gaps in the system make it hard to see it as a properly functioning old age income protection mechanism. Further compounding the situation is the doubl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the aging of population and decline in fertility) and the economic woes brought about by a longstanding recession and the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impact of such changes on the NPS.

One of the findings is that the gaps in the coverage of the NPS are traceable to early retirement, youth unemployment, and income polarization, which themselves arethought to have been caused an increase in atypical workers and long-term economic doldrums. Also, this study analyzes by simulation what impactthe changes in income classes and the period of contribution have on the finance of the NPS. With a view to drawing policy measures to narrow the gaps in the coverage of the NPS, this study looks into gradual retirement system, pension credit system for childrearing women, pension sharing in advanced countri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short- and long-term policy direction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economic changes on the NPS.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carrying outvia a social agreement the proposed parametric reform,

which has been at the core of much debat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should be able to help stabilize the finance of the NPS. For benefit adequacy, efforts should be put forth to increase the publicity of the retirement pension (which was introduced in December 2005) and to minimiz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private pension benefit entitlement. To reduce the gaps over the long run, we suggest introducing gradual retirement system, pension credit system for childrearing women, and pension sharing. Lastly, although basic pension may be highly effective as a way of reducing the gaps in the coverage of the NPS, further discussion and studies will be required before implementing it.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1999년에는 주민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외형상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 인구고령화·저출산의 인구학적 충격과 장기적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 여건 변화의 경제적 충격은 국민연금제도를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실정임.

- 경기침체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하락은 국가 입장에서는 보험료 베이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소득비례연금급여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급여의 적절성).
- 경기하락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납부예외자 양산 및 기여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여 적용 사각지대 문제로 귀결될 것임(적용의 보편성).
- 영세자영자들의 소득하향신고로 급여산식의 균등부분의 상승을 억제시킴으로써 사업장가입자 연금급여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형평성 문제).
- 노동시장 유연화의 영향으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일용직형태의 고용과 함께 특수고용 및 대체고용의 형태가 확산 되어 가는 추세임.

□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 경제여건 변화의 추세 파악 및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노동시장유연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노동시장관련 통계 및 거시경제 자료,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고용형태변화에 대한 자료,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함.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재정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imulation 분석을 시도함.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연금보험료 및 급여구조의 개선, 기초연금제도의 검토, 보편성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와 국민연금의 실제 원자료(1998·2000년 기준 45～50세 사업장자격 변동자, 2000년 이후 신규가입자 및 탈퇴자)를 이용해 분석하고자 함.

Ⅱ. 경제여건 변화와 국민연금 현황

1. 경제여건 변화

□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1년 8월 임금근로자수는 13,540천명에서 2004년 8월에는 14,584천명으로 1,044천명(7.7%)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수는 2001년 8월 기준 8,198천명에서 2004년 8월에는 7,797천명으로 401천명(△4.9%) 감소

□ 임금근로자 내부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무기계약근로자는 감소한 반면에 유기계약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라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용, 파견, 용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

- 무기계약근로자는 2001년 10,195천명에서 2004년에는 10,092천명으로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5.3%에서 2004년 69.2%로 6.1%포인트 감소
- 유기계약근로자는 2001년 1,056천명에서 2004년 1,819천명으로 763천명(72.2%)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임. 특히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2000년 들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도별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8월 16.8%에서 2002년 8월 16.5%, 2003년 8월 16.4%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4년 8월에 18.4%로 증가하여 다소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가. 고용형태에 따른 산업별 근로자 비중

□ 전체 임금근로자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3년까지 작아지다가 2004년에 다시 2001년도 수준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임금근로자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서비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 비중이 2002년에 줄어들었다가 2003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에 따른 산업별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징적인 것은 건설업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 성별로 정규근로라 할 수 있는 무기 및 유기계약근로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비정규근로로 분류되는 분야에서 남성은 2004년 기준 1,155천명(13.6%)이며, 여성은 1,517천명(24.9%)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특히 파견근로 및 독립도급근로는 여성이 남성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시간제근로에서는 여성이 8.9%로 남성(2.2%)에 비해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7세 연령대는 비정규직이 52.0%로 임금근로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45.6%로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50～59세 연령대의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24.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18～29세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14.0%로 각 연령대중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
- 용역근로의 경우 50～59세 연령대는 6.2%가, 60세 이상 연령대도 용역근로가 15.1%로 타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5～17세 연령대의 경우 시간제근로가 40.0%로 동연령대 전체 비정규직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 연령대도 10.1%로 시간제근로가 타 연령대에 비해 거의 2배 정도에 이름.

□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의 경우 비정규직이 23.3%, 전문대졸 이하가 10.3%, 대학 이상이 9.8%로 나타남

- 즉 일용근로의 경우 고졸이하는 629천명으로 전체 (고졸 이하)임금근로자 대비 6.9%인 반면에 대학 이상은 19천명으로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 경기침체 장기화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최고 9.4%에서 최저 5.9%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7년말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9%까지 감소하였음.

- 이후 경기회복을 하며 1999년 9.5%, 2000년 8.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 7.0%의 성장을 보인 이후에는 낮은 수준을 유지
- 절대빈곤율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위기기간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7.58%, 8.51%로 높아졌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2003년에 5.2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상대빈곤율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7～8%대 수준에서 경제위기이후 최고 10.8%까지 상승한 이후 2003년에는 10.55%로 아직 1990년 초중반시기로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음.

□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의 실업상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남. 즉, 1997년 32.2천명에서 1998년 65.5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34.1천명까지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03년 이후 청년실업이 다시 증가해 2004년에는 39.1천명까지 증가함. 청년실업률도 1997년 5.7%에서 1998년 12.2%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실업률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4년 7.9%로 경제위기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분위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2004년을 기준으로 1분위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7.4%),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줄고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져서 5분위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은 4.1%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

직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로 소득분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상위 소득집단인 5분위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5.5%에서 2004년 4.1%로 낮아진 반면, 최저 소득집단인 1분위의 비중은 2001년 43.0%에서 2004년 47.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평균소득 대비 비정규직 평균소득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58.9%에서 2002년에는 61.3%가 되었다가 2003년 53.3%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 후 2004년에는 55.2%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2001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의 소득수준이 정규직에 비하여 감소함.
- 임금근로자 전체의 5분위 소득비율은 2001년 5.5배에서 2003년 6.1배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5.9배로 약간 감소하고 있음. 한편 정규직의 5분위 소득비율은 2001년 4.9배에서 2003년 5.2배까지 증가하였으나 2004년 다시 4.9배로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은 10.6배(2001)에서 시작하여 7.7배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8.4배로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확대로 인한 양극화도 문제이지만 비정규직내에서의 소득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비자발적 조기퇴직의 관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외환위기 이후 50대 이상 실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가 이후에 점차 감소했으나 최근 2년간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50% 정도가 50대 중반 이전에 주된 일자리(major job)에서 퇴직하고 있으며, 취업형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균퇴직 연령은 54.1세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를 구성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평균 퇴

직연령은 52.3세로 자영업자나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56.5세보다 4.2세나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국민연금제도 현황

□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현황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실직 및 휴직, 사업중단의 요인에 의한 납부예외자의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납부예외자 중 30대가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와 20대(24.6%)의 순으로 큰 비중을 나타나고 있어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과 국민연금에의 기여를 보여야 할 연령대에서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30대의 경우 실직, 휴직과 사업중단에 의한 사유가 약 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40대는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중단에 의한 사유가 14% 정도로 높아 다른 연령대와는 차별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50대 이상은 8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실직 및 휴직, 사업중단의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납부예외자가 전 연령대에 걸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에서도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2, 30대가 경제여건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Ⅲ.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가입실태의 변화

1.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가입실태

□ 연도별 직종별로 국민연금의 가입자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12,879천명 중 6,951.0천명(54.0%)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가입규모는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 8월에는 13,803천명 중 8,599.8천명으로 2001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제, 파견, 용역직 등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의 가입수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국민연금가입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1년 8월 15.7%에서 2002년 8월 15.2%, 2003년 8월에는 15.1%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 8월에는 16.8%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인 18~29세 연령대의 가입자 중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95% 이상을 차지하여 50~59세 연령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규직 중에서의 유기계약근로 비중의 증가는 다른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9~29세의 청년층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50~59세 연령대 가입자들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용역근로가 8.6%(2004년 기준)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민연금 구조변화

가. 청년실업 및 소득양극화와 국민연금 가입실태

□ 18~29세 연령대의 가입자 비율은 2000년 21.5%, 2001년 20.2%, 2002년 19.6%, 그리고 2003년 19.5%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어 청년실업의 문제가 국민연금가입자에게서도 반영되고 있음.

- 연령별 가입자 증가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40대와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전체가입자의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18~29세, 그리고 30~39세와 50~59세의 연령대는 증가율이 전체가입자의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18~29세의 경우는 2001년 음(-)의 증가율(-5.7%)을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사업장가입자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2년과 2004년 모두 21~25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고, 41~45등급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은 bimodal 형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각 년도의 분포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중위등급인 25등급까지는 2002년에 비해 2004년에 가입자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26등급 이상의 등급에서는 가입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득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지역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등급별 분포는 21~25등급의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unimodal 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는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하위등급인 1~15등급과 상위등급인 31~45등급의 지역가입자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중위등급인 16~30등급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 기간의 사업장가입자의 소득변화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득양극화에 따른 임금근로자전체의 연금가입자비율은 2001년 52.2%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5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분위별로 1분위의 가입자 비율은 2001년 11.2%에서 2004년 17.9%로 증가하고 있으나 5분위의 가입자비율인 2001년 88.2%에서 2004년 94.4%와 비교시 증가폭은 5분위의 4.3% 포인트 보다 높은 4.6% 포인트 증가했으

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5분위의 19.0%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의 경우는 2004년 1분위의 가입자 비율이 5분위의 28.3%이나, 비정규직은 16.8%로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가입자비율은 2001년 4.9%에서 2004년 7.5%로 한자리수에 지나지 않고,
  - 5분위라 하더라도 2004년 44.7%로 정규직의 동년도 5분위 가입자비율 96.5%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비정규직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나. 조기퇴직 경향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실태 변화

□ 1998년 사업장탈퇴 후 다시 사업장으로 가입한 사람의 수는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2003년 이후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998년 사업장 탈퇴자 중 2003년과 2004년에 사업장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45세에 비해 50세의 연령대의 등급이 상승한 경우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00년 사업장탈퇴자는 1998년 사업장 탈퇴자에 비해 다소 높은 65% 이상이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등급이 하락한 경우는 1998년 탈퇴자는 2003년과 2004년 공히 30～40%의 사람들이 사업장자격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0년 탈퇴자는 약 20%대의 등급하락을 보임.
- 또한 등급이 변하지 않은 경우도 1998년 탈퇴자는 10% 대인 반면에

2000년 탈퇴자는 2003년에는 13%대 20004년에는 11%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이 변동된 경우 1998년 탈퇴자는 85% 이상이 2000년 탈퇴자는 80% 이상이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등급이 하락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국민연금가입자 자격변동에 따른 실태변화

□ 연도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금의 가입자는 2000년 787천여 명에서 2004년에는 960천명으로 약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는 약 447천명 이었으나 2004년에는 615천명으로 37.6% 증가하였음.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 340천명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167천명, 235천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346천명, 345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탈퇴자의 경우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2000년 2,376천명에서 2004년에는 3,402천명으로 약 4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장 및 지역 모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사업장의 경우에는 72.2%,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3.2%로 사업장 가입자의 탈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음.
- 이는 2000년 이후 나타난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 탈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성별 분석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경우 남성 및 여성 공히 탈퇴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지역가입자에서는 절대적으로 남성의 탈퇴자가 여성의 탈퇴자에 비해 높음을 볼 수 있음.

□ 연령별로 사업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신규가입자의 대부분은 29세 이하로 2000년 에서 2004년에는 85.7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이한 것은 50세 이상에서도 적지만 신규가입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는 30세 이상에서의 가입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3년 이후에는 29세 이하의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은 첫째, 2000년말 지역가입자 적용대상을 23세에서 27세로 상향조정한 것과 둘째, 강한 가정으로 볼 경우 청년실업의 증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2000년 이후 탈퇴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공히 29세 이하에서의 탈퇴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사업장가입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즉, 청년층에서의 노동시장 변화가 매우 크고 또한 직업적인 안정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 등급별로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6～20등급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2000년 54.3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39.4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11～15등급에서도 나타나는데 2000년 24.87%에서 2004년에는 5.23%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변화 중 중요한 점은 최하위등급이라 할 수 있는 1～10등급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위등급인 11～20등급의 비중은 감소하고 20등급 이상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는 신규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분포가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한 최하위등급의 가입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대부분이 1～5등급인 최하위등급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특히 2001년에는 77.59%까지 도달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51.70%까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급에 관한 분포가 사업장 가입자와 같이 상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공히 2000년 이후 연금에서의 탈퇴규모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2000년에 968천에서 2004년에는 1,667천명으로 7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0년 1,185천명에서 2004년 1,704천명으로 4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기준으로 사업장 및 지역에서 탈퇴한 3,372천명의 연금탈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파악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탈퇴자들의 탈퇴사유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음.

– 국민연금 탈퇴자료와 관련해 20등급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탈퇴자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20등급 이상에서의 탈퇴자 비중 및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Ⅳ.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연금재정(Simulation)

1. 등급이 상승한 경우

□ 1998년에서 2004년까지 연금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1998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가입자의 연금보험수입 및 급여지출의 차이를 분석함.

- 2004년 사업장가입자 중 1998년 대비 등급상승자들이 1998년의 등급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기간만 추가된 경우의 보험료 수입은 7123억원, 연금급여는 1조 826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재정수지는 1조 1145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2004년 사업자가입자중 1998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사람들의 보험료 수입은 1조 581억원, 연금급여는 2조 1244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수지는 1조 663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998년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보험료 수입은 1377억원, 연금급여는 6280억원으로 재정수지는 4903억원의 수지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1998년에 비해 2004년에 등급이 상승한 사람들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1591억원, 연금급여는 4039억원으로 재정수지적자는 2448억원으로 분석됨.

2. 등급이 하락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1998년에 비해 2004년 등급 하락한 사람들은 먼저 1998년의 등급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보험료 수입은 1조 598억원, 연금급여는 2조 25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9,427억원으로 나타남.

- 반면에 2004년에 등급이 하락한 경우 보험료 수입은 7,083억원, 연금급여는 1조 5,440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8,357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04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이 1998년 이후 계속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 수입은 1조 1,530억원, 연금급여는 3조 1,395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1조 9,865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 1998년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의 보험료수입은 3,125억원, 연금급여는 1조 1,382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8,257억원으로 추계되었음.

□ 2004년 기준 연금미납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금미납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만약 1998년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보험료수입은 7,758억원, 연금급여는 2조 5,107억원으로 재정수지는 1조 7,349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2004년 이후에도 연금미납자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 보험료 수입은 4,763억원, 연금급여는 4,863억원으로 재정수지는 1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Ⅴ. 선진국의 경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1. 조기퇴직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방안

□ 점진적 퇴직제도(gradual retirement system)는 경제활동주기의 후반부에 위치한 노령근로자들이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충해 주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임.

- 점진적 퇴직의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와 퇴직이 서로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점진적 퇴직모형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작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동시에 별도의 보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노령인력의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중요한 유인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가.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 운영사례

1) 고용보험 책임의 점진적 퇴직제도

□ 독일 정부는 1996년 '점진적 퇴직 촉진법'을 제정함. 점진적 퇴직제도는 흔히 '고령자 파트타임모형'(Altersteilzeitmodell)으로 불리고 있으며, 고용보험 제도의 수행주체인 연방고용에이전시(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담당

- 근로시간의 단축방법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 일일 근로시간의 단축・격일・격주・격월・격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개인별로 점진적 퇴직의 종료시점이 어떠한 경우에도 조기노령연금이나 정규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연령 이후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점진적 퇴직을 통하여 노령근로자가 종전의 근로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게 될 경우 당사자는 임금의 하락과 연금 가입경력 상의 불이익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점진적 퇴직 촉진법'은 해당 기업이 파트타임 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시에 파트타임 이전 정상소득의 9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파트타임 임금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보충소득은 세금이나 제반 사회보험료의 부담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는 최소한 종전 임금의 7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연금보험료는 개인의 실제 임금에 상관없이 종전임금의 90%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고, 이 경우 각각의 차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전적으로 기업이 맡게 됨.
-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55세부터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므로 또 다른

형태의 '조기퇴직제도'(Vorruhestandsregelung)로 불리고 있음.

□ 적용대상은 구체적으로 신청 당시 55세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난 5년의 기간동안 실업급여, 실업부조 또는 의료보험의 상병급여를 수급한 기간 또한 자격요건에 가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국민연금제도 책임의 점진적 퇴직제도

□ 독일은 고령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서 1992년의 연금개혁에 따라 부분연금제도(Teilrentensystem)를 도입

- 개정 연금법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완전한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거나, 아니면 부분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만약 개인이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 부분연금은 자신의 조기노령연금을 기준으로 1/3, 1/2 또는 2/3의 수준에서 지급이 됨.

□ 부분연금의 수급자에 대한 소득활동의 제한은 근로소득의 상한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부분연금의 수준 또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 됨.

2. 여성의 수급권 보장

가. 독일

□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은 1992년 연금개혁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음.

- 구체적으로 법개정 당시 1991년 이전의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1년의 연금가입 인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3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육아기간 동안 재차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경우 연금가입의 인정기간은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3년으로 연장이 되도록 하고 있음.
- 육아기간 동안 당사자의 연금가입 인정소득은 매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00%가 되며, 이러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되고 있음.
-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은 실제 육아의 책임자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의 책임을 담당하게 될 경우 합의를 바탕으로 수혜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됨.

□ 육아기간 동안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

- 독일은 육아활동에 대한 3년간의 연금가입 인정제도 이외에 별도로 개인의 연금가입소득을 인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
- 아동이 만 10세가 될 때까지 개인이 별도의 소득활동을 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2001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초로 도입되었음.
- 동 규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5년 이상의 연금가입경력이 요구되며, 이는 육아 책임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판단됨.
- 2001년 연금개혁에 따라 가정에서 10세 미만의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고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의 가산점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유족연금제도의 개선

- 2001년의 연금개혁을 통하여 독일 정부는 사전적으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기존의 60%에서 55%로 하향조정 하였음.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여유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활

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별도로 첫째 아동의 양육경력에 대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2배에 준하는 가산점이 주어지도록 하였음.
  - 그리고 그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매 1명당 평균소득의 1배에 상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일례로 당사자 자신의 노령연금)과의 병급이 허용되고 있음.

□ 연금분할제도

- 독일의 경우 연금분할제도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되었음. 동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자 확보한 연금소득점수(Entgeltpunkt)를 합산하여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그리고 부부간 연금의 분할은 이혼 당시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됨.
- 2001년의 연금개혁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연금분할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음. 먼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부부 상호간 합의가 있을 경우 연금의 분할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부부가 공히 최소한 25년 이상의 연금가입경력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함.

나. 스위스

□ 육아기간의 연금가입 인정

- 스위스는 1997년 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양육 그리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발로 인하여 보험가입경력에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

- 양육의 경우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연금가입소득에 별도의 '양육가산점'(Erziehungsgutschrift)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육아의 가산점은 출산 이후 아동이 16세에 도달하는 기간동안 주어지게 됨. 그리고 2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게 될 경우 인정기간은 최종적으로 막내가 16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로 정해두고 있음.

□ 1인 1연금의 원칙 도입

- 1997년 제10 연금개혁 이후 스위스는 종전 '부부연금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 왔던 노령연금제도는 제도 개혁에 따라 '1인 1연금의 원칙'(Individualrentenkonzept)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음.

□ 연금분할제도

- 스위스의 경우 연금분할제도는 1997년 연금개혁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음. 배우자 상호간 연금의 분할은 이혼 시는 물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스웨덴

□ 육아기간의 연금가입 인정

- 스웨덴의 경우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은 소득연계연금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소득연계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을 토대로 운영이 되며, 보험료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보장소득 등)을 기준으로 16%로 정해져 있음.
- 소득연계연금제도에 있어서 육아의 경우 아동 1인당 4년간 그리고 수발의 경우 그 기간동안 연금가입이 인정되고 있음.

□ 연금분할제도

- 1998년 연금법개정에 따라 스웨덴은 수익연금제도를 대상으로 연금분할과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였음.
- 연금의 분할은 부부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중도에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허용되고 있음.
- 연금분할의 신청 시 수혜자의 선정, 분할기간 그리고 분할수준 등은 전적으로 부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

Ⅵ. 결론

□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완화 혹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장단기대책 살펴 볼 수 있을 것임.

□ 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안정화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재정안정화 측면으로 2003년 재정재계산을 통해 확정된 정부안 -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15.9%), 소득대체율의 축소(40년 60%→50%) - 을 토대로 저부담·고급여의 연금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 및 연금지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급여의 적정성측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조기퇴직이 일상화되는 시점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과 소득대체율의 축소는 노령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다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임.

- 위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민간보험을 통한 개인연금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민간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제도적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개인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후 충분한 소득대체수단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점과 다른 제도-퇴직금제도-와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임. 개인연금의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파산이나, 저금리현상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연금수급권에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을 들 수 있음.

— 조기퇴직 및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으로는 독일 등 서유럽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점진적 퇴직 및 부분연금제도를 들 수 있음.

— 또 하나의 사각지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여성들이라 할 수 있음. 육아 및 보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연금제도내의 지위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 개정안내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경제여건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문제라 할 수 있음. 소득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초연금제도가 어떤 식으로 도입되느냐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 있어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그리고 1999년에는 도시지역주민으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외형상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당초 4,433천명에서 2005년 10월 현재 17,002천명으로 늘어났고 2천명에 못 미치던 수급자수도 1,71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오는 2008년에는 300만 여명이 연금을 수급하는 본격적인 연금수급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기금의 규모도 2005년 10월 현재 약 152조원에 달하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인 확대를 이루어낸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앞으로 심각한 재정불안정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2005년 7월 현재 납부예외자 수가 4,569천명으로 지역가입자의 51% 이상)[주1]에 있는 등 광범위한 적용 및 급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엄청난 규모의 연기금이 급속도로 쌓이다가 소진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불안정성 혹은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저출산의 인구학적 충격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 여건변화의 경제적 충격은 국민연금제도를 더욱 큰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연금제도의

주1) 도시지역 적용확대 이후 6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40%(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비중)를 상회하는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납부예외자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 재정재계산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급여수준을 줄이는 재정안정화방안에 반영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차원에서의 연구와 대응책이 모색되기도 하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그 파급효과와 대응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반면, 경제적 여건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인구고령화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인구적 충격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경기침체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어떻게든 조절해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변화(고용구조의 변화)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제도의 합목적성 혹은 실효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경기침체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하락은 국가 입장에서는 보험료 베이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소득비례연금급여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경기하락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다수의 납부예외자 양산 및 기여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여 결국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적용의 보편성). 그리고 영세자영자들의 소득하향신고로 급여산식의 균등부분(A값)의 상승을 억제시킴으로써 사업장가입자 연금급여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형평성 문제).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영향으로 상용직보다는 임시직, 일용직형태의 고용과 함께 특수고용 및 대체고용의 형태가 확산 되어 가는 추세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를 상용직중심의 사업장가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중심의 지역가입자로 양분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의 현실은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인 상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대부분 80%를 웃돌고 있으나,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시직 근로자들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며

특수고용의 경우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이렇듯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국민연금제도가 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다수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주2)]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 할 경우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을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분석결과에 따른 적절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물론 금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그 실효성 여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효성이 검증된다 하더라도 혜택이 사업장가입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1994년부터 도입된 개인연금도 아직까지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연구방법

경제여건 변화의 추세 파악 및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노동시장유연화, 경기침체 장

주2)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3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종사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임시계약직근로자의 적용범위도 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 18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토록 하는 등 영세사업장 및 불완전근로계층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적용관리의 제고를 통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 국민연금과 동일한 사업장가입범위를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험을 볼 때, 법제도적 적용노력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제 행정상의 적용관리가 용이치 않고, 실제 적용성과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화에 대한 노동시장관련 통계 및 거시경제 자료,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고용형태변화에 대한 자료,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가입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분석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 고용 및 산업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사례의 검토로는 선진국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연금크레딧 제도의 검토, 기초연금제도 검토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재정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imulation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국민연금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격 변동 전·후의 보험료 수입 및 급여지출을 파악하여 자격변동에 따른 연금재정수지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분석틀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경제여건 및 노동시장유연화에 따른 국민연금에의 영향(적용의 보편성, 급여의 적정성, 가입자간의 형평성, 재정안정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분석틀은 아래의 그림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경제적 여건변화로는 크게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기침체 장기화를 들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하나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국내 노동시장에는 급격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과거와 같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되었으며, 정규노동시장에서 벗어난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저성장의 경제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한 노동시장 변화와 국민연금에의 영향은 우선적으로 경제활동부가조사를 통해 그 규모와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경제활동부가조사를 통해서는 비정규직 증가, 소득양극화, 조기퇴직문제 및 증가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의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기침체 장기화가 연금제도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결론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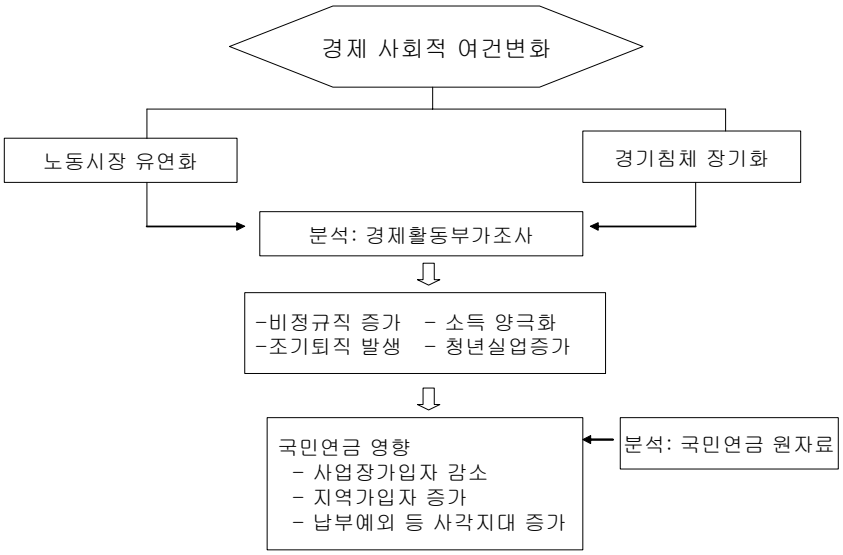

3. 분석자료

가. 경제활동부가조사

1998년의 경제위기이후 늘어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8년부터 기존의 경제

활동인구조사와는 달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이하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조사는 2008년 8월 실시이후 2004년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부가조사에는 증가하는 청년실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회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 200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근로형태) 처음 실시
- 200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비정규 근로형태 및 산업·직업간 인력이동 실태)
- 200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2002년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200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200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200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200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부가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가구(약 30,000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표에 비정규관련 추가적인 설문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은 해당 월의 15일이 속한 1주간으로 하고 있다(안주엽, 2003). 부가조사 대상은 청년층에 대한 부가조사를 제외하고 주로 임금근로자를 위주로 조사 하고 있으며, 2001년 8월 조사에 한해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가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2004년 부가조사표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간

-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여부, (근로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경우) 계속 근로여부, 향후 근로기간 및 주된 사유, 지난 주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동기

— 급여를 받은 곳, 근무 사업체, 근로형태, 일한 장소, 근로동기

○ 근로자 복지관련

— 사회보험 가입여부, 직장에서의 혜택

○ 근로계약 관련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 임금형태,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

본 연구에서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의 부가조사 자료를 기초로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000년 8월 조사는 초창기 조사라 조사표 구성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차후 연도의 부가조사와 비교분석이 다소 용이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으며, 시계열적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8월 조사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내용은 과거와는 달리 새로이 등장한 고용계약의 형태, 산업별 직종별 고용형태 변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연금에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실제자료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제 고용구조와 연금가입자들의 고용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 국민연금 자료

노동시장의 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자 원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1998년 45～50세와 2000년에 45～50세로 사업장 가입자중 퇴사자(=가입자격 변동자) 자료와 두 번째는 2001～2004년 기간의 신규가입자 및 연금탈퇴자에 대한 자료이다.

먼저 1998년 45～50세와 2000년에 45～50세 자료의 분석 목적은 사업장가입자들이 퇴사로 인해 자격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들이 향후 국민연금에 어떠한 형태로 가입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기퇴직의 연령을 빠르게는 45세로 보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1998년 45～50세, 2000년에 45～50세로 사업장가입자중 퇴사를 하여 자격변동이 발생한 전수에 대해 2003년, 2004년 현재 가입형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은 두 기간의 가입유형변화, 소득등급변화 등이다.

2001～2004년 신규가입자 및 연금탈퇴자를 통해서는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연금가입자 및 탈퇴자의 규모의 변화와 소득등급별, 연령별, 성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3절 주요 연구내용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의 발현 형태 및 변화추이-고용형태 및 산업별 고용구조변화, 조기퇴직, 전직 등 직장의 이동성(job mobility) 증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침체의 장기화 추세 및 파급효과에 따른 근로빈곤층과 같은 신빈곤층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 청년실업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국민연금현황 자료를 통한 분석으로 가입자 실태, 그 변화 및 재정적인 부문에 대해 추정하고자 한다.

경제사회적 여건변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 경기침체 장기화가 국민연금의 보편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또한 연금가입자의 고용구조변화 및 연금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변화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대응체계 고찰에서는 인구고령화 등 경제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선진국의 제도개선 방안, 특히 점진적 퇴직제도, 여성수급권 보호방안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

로 연금보험료 및 급여구조의 개선, 기초연금제도의 검토, 보편성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4절 선행연구

기존 연구들을 살펴볼 경우,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원종욱 외(2003), 백화종 외(2004) 등의 연구가 있으며, 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박무환 외(2002)의 연구가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로는 석재은(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외 경제학적 분석틀을 기초로 거시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에의 연구로는 백화종(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원종욱 외(2003)의 연구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연금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 경제위기 이후 불어닥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연금제도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공단의 연금가입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45～50세의 자격변동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 사업장에서 지역으로 변경한 가입자 중 40.1%가 보험료 미납자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44.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사시 연령이 높을수록 사업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지역으로 자격 변동시 재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지역가입자 스스로 노후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형태의 노후소득보장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가입자들의 자격 변동은 근로자들의 소득감소와 더불어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는 국민연금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가입자 변동과 이에 따른 재정에의 영향을 연구한 점에서 좋은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이 두 시점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시계열적인 분석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두 시점사이의 변화

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국민연금제도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백화종 외(2004)의 연구에서는 1990년 중반이후 나타난 저금리의 영향하에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기금운용방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저금리기조 하에서 자산배분에 관한 Markowitz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시나리오별 최적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05년도 포트폴리오보다 높고, 위험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포트폴리오가 국내자산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 자산 중에서도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투자대상에 대한 자산배분의 변화와 함께, 투자위험의 축소와 수익률의 증대를 위해서는 투자대상의 다양화(부동산 및 SOC투자, 사모펀드투자 등)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연구는 90년대이후 발생한 저금리현상에서의 기금운용방향에 대해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저금리라는 경제상황 하나만을 가정함으로써 연구 초점이 좁아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기금운용에 기반을 두고 있음으로 해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 및 영향 분석은 제외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무환 외(2002)의 연구는 계량경제모형과 중복세대모형을 통해 연금과 경제변수간의 상호관계와 연금변수 변화에 따른 세대별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연금부문과 경제부문 변수간 상호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경제모형은 최종수요, 정부, 물가, 금융, 생산·고용·임금, 연금 등 6개부문으로 23개의 개별행태식과 11개의 정의식을 포함하는 34개의 연립방정식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보험요율 인상,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급여대체율 인하 등에 따라 경제정책 목표인 물가안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성장간에는 상충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재정수지 개선효과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uerbach & Kotlikoff모형을 기초로 연금관련 정책들의 후생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중복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였다. 국민연금이 저축과 노동공급에 미치

는 영향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 모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결과로 동 모형이 지니는 한계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분석시 소득대체율 하향안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은 미래세대의 생애후생손실을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3배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석재은(2004)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들을 연구하고 있다. 사각지대의 규모 추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로 분석에 의할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사각지대규모는 60세 이상 노인 중 82%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 공적보장의 사각지대 규모는 71.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미래세대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로 현재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2003년을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는 18～59세 인구 중 59.2%로 이 중 18～29세사이가 72.6%로 가장 높게 추정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임시·일용직 및 여성들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1인 1연금제도로의 전환과 연금의 다층체계화 및 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2장 경제여건 변화와 국민연금 현황

제1절 경제여건 변화

1.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과 고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박동운, 1997)으로 보기도 하고, 노동유연성을 외부환경변화에 인적자원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및 재배분되는 노동시장의 능력이라고 설명되기도 하고(어수봉, 1997), 그리고 미국·영국과 같이 일시해고(lay off)와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과 전통적으로 고용안정을 중요시 하는 유럽대륙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 및 업무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박래영, 1999)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태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연금제도 사각지대를 확산시키는 주요인으로서의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고용관계의 축소와 대안적 고용관계의 확대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대경향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해하고, 대안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여 이들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의 「경제활동 부가조사」 자료를 기초로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000년 8월 조사는 초창기 조사라 조사표 구성 및 내용이 구체적이

지 못하고 차후 연도의 부가조사와 비교분석이 다소 용이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으며, 시계열적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8월 조사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새로이 등장한 고용계약의 형태와 그 실태, 그리고 산업별 고용형태 변화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시장 유연화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경제활동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분류체계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주3]를 참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고용형태는 세 가지의 분류방법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 사용자, 고용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의 세 가지 분류이다. 직접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동일한 고용유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1 대 1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긴밀한 경우이며, 간접고용은 사용주와 고용주가 상이하여 근로자와 '삼각관계'가 성립하는 고용유형이다. 이는 고용주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상법상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계약을 맺는 형태이다. 특수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동일한 고용유형이라는 점에서는 직접고용과 동일하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가 느슨하여 근로자특성을 모두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오히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임금근로자에 가까운 고용유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전통적 고용관계와 대안적 고용관계이다. 전통적 고용관계는 전일제 직접고용을 의미하며, 대안적 고용관계는 직접고용 중 시간제 근로, 간접고용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주4], 특수고용에 속하는 일용대기, 독립도급, 재

주3) 안주엽 외(2001), 안주엽 외(2002), 안주엽 외(2003) 참조

주4) 구체적으로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근로자 파견이라 함(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 반면에

택근로가 포함된다.

〈표 2-1〉 (연구분석을 위한) 근로자 분류체계

근로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무기계약	유기계약	시간제	일용	파견	용역	독립도급	재택	

자료: 안주엽·김동배·이시균,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Ⅲ)』, 정책연구 2003-10, 한국노동연구원, 2003.

셋째는 전통적 고용관계에 속하는 전일제 직접고용을 근로계약의 유무와 계약기간의 장단 및 근로지속 가능여부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근로계약의 유무에 따라 유기계약근로와 무기계약근로로 구분되며, 유기계약근로의 경우 1년 미만, 1년, 1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의 4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의 경우 근로지속가능여부에 따라 2개범주로 구분 후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1년 이하의 기간에서만 근로지속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무기계약, 1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4개의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기준을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비정규직의 확산과정을 노동시장 유연화의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고용관계인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용대기, 독립도급, 재택근로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고 전통적 고용관계인 전일제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기로 한다.[주5)]

용역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함. 근본적인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차이는 임금(급여)이나 기타 신분상의 관리는 고용계약 된 사업체에서 지급되거나 관리되는 것은 동일함. 그러나 근로제공에 있어서 파견근로는 사용사업주(실제 파견된 사업체), 용역근로는 고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함.

주5)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야 할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유기 및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나. 고용형태별 변화추이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부가조사자료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8월 임금근로자수는 13,540천명에서 2004년 8월에는 14,584천명으로 1,044천명(7.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수는 2001년 8월 기준 8,198천명에서 2004년 8월에는 7,797천명으로 401천명(△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내부의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무기계약근로자는 감소한 반면에 유기계약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라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용, 파견, 용역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는 2001년 10,195천명에서 2004년에는 10,092천명으로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75.3%에서 2004년 69.2%로 6.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계약근로자는 2001년 1,056천명에서 2004년 1,819천명으로 763천명(72.2%)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2000년 들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타 비정규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시간제, 일용, 파견, 용역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도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면에서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1년 미만 유기계약 근로자 수의 증가현상과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도별 구성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8월 16.8%에서 2002년 8월 16.5%, 2003년 8월 16.4%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4년 8월에 18.4%로 증가하여 다소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 2-2〉 고용형태 변화추이[1)]

(단위: 천 명, %)

구분	2001년 8월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임금근로자	13,540 (100.0)	14,030 (100.0)	14,149 (100.0)	14,584 (100.0)
무기계약근로자	10,195 (75.3)	10,601 (75.6)	10,032 (70.9)	10,092 (69.2)
근로지속 가능	9,659 (71.3)	10,237 (73.0)	9,502 (67.2)	9,395 (64.4)
제한적 근로지속 가능				
3년 초과하는 기간	74 (0.5)	34 (0.2)	89 (0.6)	109 (0.7)
1년 초과～3년 이하	234 (1.7)	149 (1.1)	252 (1.8)	369 (2.5)
1년 이하	228 (1.7)	181 (1.3)	189 (1.3)	219 (1.5)
유기계약근로자	1,056 (7.8)	1,123 (8.0)	1,792 (12.7)	1,819 (12.5)
계약기간 3년 초과	60 (0.4)	74 (0.5)	100 (0.7)	107 (0.7)
계약기간 1～3년	65 (0.5)	77 (0.5)	172 (1.2)	210 (1.4)
계약기간 1년 미만	931 (6.9)	972 (6.9)	1,520 (10.7)	1,503 (10.4)
(비정규직)	2,288 (16.8)	2,307 (16.5)	2,334 (16.4)	2,673 (18.3)
시간제근로자	587 (4.3)	565 (4.0)	647 (4.6)	725 (5.0)
일용근로자	298 (2.2)	412 (2.9)	589 (4.2)	666 (4.6)
파견근로자	127 (0.9)	92 (0.7)	94 (0.7)	114 (0.8)
용역근로자	288 (2.1)	316 (2.3)	322 (2.3)	383 (2.6)
독립도급근로자	769 (5.7)	743 (5.3)	551 (3.9)	661 (4.5)
재택근로자	219 (1.6)	179 (1.3)	121 (0.9)	124 (0.8)
비임금근로자	8,198 (37.7)	8,193 (36.9)	7,977 (36.0)	7,797 (34.8)

주: 1) 노동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가 계산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안주엽·김동배·이시균,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Ⅲ)』, 정책연구 2003-10, 한국노동연구원, 2003.

〔그림 2-1〕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성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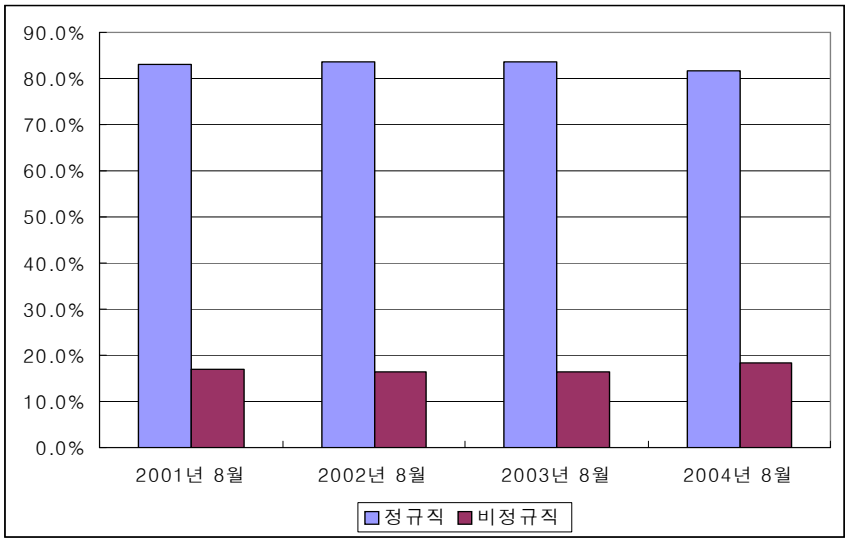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안주엽·김동배·이시균, 『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Ⅲ)』, 정책연구 2003-10, 한국노동연구원, 2003.

다. 고용형태에 따른 산업별 근로자 비중

이번에는 산업별로 고용형태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산업별 근로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두 산업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서비스업은 그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숙박 및 음식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 산업별 근로자 구성비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01년 8월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임금근로자	13,540 (100.0)	14,030 (100.0)	14,149 (100.0)	14,584 (100.0)
농림어업	165 (1.2)	139 (1.0)	140 (1.0)	144 (1.0)
제조업(광업 포함)	3,453 (25.5)	3,477 (24.8)	3,469 (24.5)	3,595 (24.6)
전기·가스·수도사업	55 (0.4)	52 (0.4)	76 (0.5)	69 (0.5)
건설업	1,239 (9.2)	1,291 (9.2)	1,318 (9.3)	1,302 (8.9)
도매 및 소매업	1,807 (13.3)	1,877 (13.4)	1,785 (12.6)	1,819 (12.5)
숙박 및 음식점업	1,035 (7.6)	1,095 (7.8)	1,019 (7.2)	1,063 (7.3)
운수업	696 (5.1)	671 (4.8)	595 (4.2)	627 (4.3)
통신업	192 (1.4)	199 (1.4)	210 (1.5)	219 (1.5)
금융 및 보험업	682 (5.0)	673 (4.8)	695 (4.9)	687 (4.7)
부동산 및 임대업	238 (1.8)	247 (1.8)	258 (1.8)	264 (1.8)
사업서비스업	1,004 (7.4)	1,073 (7.7)	1,186 (8.4)	1,296 (8.9)
기타서비스업	2,976 (22.0)	3,236 (23.1)	3,399 (24.0)	3,501 (2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번에는 산업별 근로자수 변화추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중이 큰 제조업, 기타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전체 임금근로자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비중은 2003년까지 작아지다가 2004년에 다시 2001년도 수준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서비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 비중이 2002년에 줄어들었다가 2003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에 따른 산업별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건설업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271천명(21.8%)에서 2004년 398천명(30.6%)으로 늘어나 이 부문에 있어서의 유연화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산업별 근로자수 변화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1년 8월						2002년 8월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1,251	(83.1)	2,289	(16.9)	13,540	(100.0)	11,723	(83.6)	2,306	(16.4)	14,030	(100.0)
농림어업	108	(65.5)	57	(34.5)	165	(100.0)	84	(60.2)	55	(39.8)	139	(100.0)
제조업(광업 포함)	3,204	(92.8)	250	(7.2)	3,453	(100.0)	3,246	(93.4)	231	(6.6)	3,477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50	(91.2)	5	(8.8)	55	(100.0)	50	(96.3)	2	(3.7)	52	(100.0)
건설업	968	(78.2)	271	(21.8)	1,239	(100.0)	970	(75.1)	321	(24.9)	1,291	(100.0)
도매 및 소매업	1,409	(78.0)	397	(22.0)	1,807	(100.0)	1,492	(79.5)	385	(20.5)	1,877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822	(79.5)	212	(20.5)	1,035	(100.0)	906	(82.8)	189	(17.2)	1,095	(100.0)
운수업	604	(86.8)	92	(13.2)	696	(100.0)	591	(88.2)	79	(11.8)	671	(100.0)
통신업	176	(91.9)	16	(8.1)	192	(100.0)	182	(91.3)	17	(8.7)	199	(100.0)
금융 및 보험업	460	(67.5)	222	(32.5)	682	(100.0)	480	(71.4)	193	(28.6)	673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204	(85.8)	34	(14.2)	238	(100.0)	204	(82.5)	43	(17.5)	247	(100.0)
사업서비스업	705	(70.2)	300	(29.8)	1,004	(100.0)	716	(66.7)	357	(33.3)	1,073	(100.0)
기타서비스업	2,541	(85.4)	435	(14.6)	2,976	(100.0)	2,803	(86.6)	434	(13.4)	3,236	(100.0)
구분	2003년 8월						2004년 8월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1,824	(83.6)	2,325	(16.4)	14,149	(100.0)	11,911	(81.7)	2,673	(18.3)	14,584	(100.0)
농림어업	88	(62.7)	52	(37.3)	140	(100.0)	86	(59.8)	58	(40.2)	144	(100.0)
제조업(광업 포함)	3,260	(94.0)	208	(6.0)	3,469	(100.0)	3,337	(92.8)	257	(7.2)	3,595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75	(98.3)	1	(1.7)	76	(100.0)	64	(92.9)	5	(7.1)	69	(100.0)
건설업	936	(71.0)	382	(29.0)	1,318	(100.0)	904	(69.4)	398	(30.6)	1,302	(100.0)
도매 및 소매업	1,441	(80.7)	344	(19.3)	1,785	(100.0)	1,463	(80.4)	357	(19.6)	1,819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835	(82.0)	184	(18.0)	1,019	(100.0)	828	(77.9)	235	(22.1)	1,063	(100.0)
운수업	544	(91.5)	51	(8.5)	595	(100.0)	553	(88.2)	74	(11.8)	627	(100.0)
통신업	185	(87.9)	25	(12.1)	210	(100.0)	187	(85.2)	32	(14.8)	219	(100.0)
금융 및 보험업	529	(76.0)	167	(24.0)	695	(100.0)	501	(72.9)	186	(27.1)	687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215	(83.6)	42	(16.4)	258	(100.0)	214	(80.8)	51	(19.2)	264	(100.0)
사업서비스업	788	(66.5)	397	(33.5)	1,186	(100.0)	811	(62.6)	484	(37.4)	1,296	(100.0)
기타서비스업	2,927	(86.1)	472	(13.9)	3,399	(100.0)	2,965	(84.7)	537	(15.3)	3,501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근로계약 형태를 세분화하여 산업별 고용형태를 살펴볼 경우, 2004년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중 7,096천명(48.6%)이 제조업(광업포함) 및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주로 제조업(광업포함),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1,131천명(62.1%)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와 유기계약 근로자간의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건설업분야에서의 유연화 현상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46.8%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이 분야의 노동시장 유연화 현상이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파견근로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용역근로는 사업서비스분야가 356만명(92.9%)으로 절대적인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립도급근로는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및 기타서비스업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기타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5〉 산업별 고용형태별 근로자수(2004년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4,584	10,092	1,819	666	114	383	661	124	725
농림어업	144	44	43	40	-	-	3	1	14
제조업(광업 포함)	3,595	2,998	339	87	12	2	50	66	41
전기·가스·수도사업	69	57	6	-	-	-	1	2	2
건설업	1,302	558	346	312	10	7	18	1	51
도매 및 소매업	1,819	1,298	165	39	27	-	159	10	121
숙박 및 음식점업	1,063	727	101	57	4	3	24	1	146
운수업	627	499	54	12	2	3	49	1	8
통신업	219	162	25	3	1	1	17	-	10
금융 및 보험업	687	409	91	1	2	-	175	2	6
부동산 및 임대업	264	173	41	4	4	7	17	-	18
사업서비스업	1,296	649	163	43	41	356	23	5	16
기타서비스업	3,501	2,519	446	68	13	4	124	35	2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4.

〈표 2-6〉 고용형태의 산업별 근로자수 비중(2004년 기준)

(단위: %)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0	0.4	2.3	6.1	-	-	0.4	0.8	1.9
제조업(광업 포함)	24.6	29.7	18.7	13.0	10.5	0.6	7.6	53.0	5.6
전기·가스·수도사업	0.5	0.6	0.3	-	-	-	0.2	1.3	0.3
건설업	8.9	5.5	19.0	46.8	8.3	1.8	2.8	0.9	7.0
도매 및 소매업	12.5	12.9	9.1	5.9	23.5		24.1	8.4	16.7
숙박 및 음식점업	7.3	7.2	5.6	8.6	3.2	0.8	3.6	0.9	20.1
운수업	4.3	4.9	3.0	1.8	1.4	0.9	7.4	0.5	1.1
통신업	1.5	1.6	1.4	0.4	0.5	0.2	2.6	0.4	1.4
금융 및 보험업	4.7	4.1	5.0	0.1	1.9	-	26.5	1.3	0.9
부동산 및 임대업	1.8	1.7	2.2	0.7	3.6	1.9	2.6	0.2	2.4
사업서비스업	8.9	6.4	8.9	6.4	36.0	92.9	3.5	4.3	2.1
기타서비스업	24.0	25.0	24.5	10.2	11.2	0.9	18.8	28.1	4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4

〈표 2-7〉 산업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중(2004년 기준)

(단위: %)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00.0	69.2	12.5	4.6	0.8	2.6	4.5	0.8	5.0
농림어업	100.0	30.3	29.6	28.1	0.0	0.0	1.8	0.7	9.6
제조업(광업 포함)	100.0	83.4	9.4	2.4	0.3	0.1	1.4	1.8	1.1
전기·가스·수도사업	100.0	83.7	9.1	0.0	0.0	0.0	1.7	2.3	3.1
건설업	100.0	42.9	26.6	23.9	0.7	0.5	1.4	0.1	3.9
도매 및 소매업	100.0	71.3	9.1	2.2	1.5	0.0	8.7	0.6	6.6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68.4	9.5	5.4	0.3	0.3	2.2	0.1	13.7
운수업	100.0	79.5	8.7	1.9	0.2	0.5	7.8	0.1	1.3
통신업	100.0	73.9	11.4	1.3	0.2	0.4	7.9	0.2	4.8
금융 및 보험업	100.0	59.6	13.3	0.1	0.3	0.0	25.5	0.2	0.9
부동산 및 임대업	100.0	65.4	15.5	1.6	1.5	2.7	6.5	0.1	6.6
사업서비스업	100.0	50.1	12.5	3.3	3.2	27.5	1.8	0.4	1.2
기타서비스업	100.0	71.9	12.7	1.9	0.4	0.1	3.5	1.0	8.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4.

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고용형태별 근로자수를 200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규근로라 할 수 있는 무기 및 유기계약근로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비정규근로로 분류되는 분야에서 남성은 2004년 기준 1,155천명(13.6%)이며, 여성은 1,517천명(24.9%)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간제근로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55천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의 차이는 2001년부터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2-10, 11, 12 참조).

〈표 2-8〉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별 근로자(2004년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4,584	10,092	1,819	666	114	383	661	124	725
남성	8,489	6,258	1,075	395	52	220	282	21	185
여성	6,096	3,834	744	271	62	163	379	103	540
15～17세	25	8	5	3	-	-	-	-	10
18～29세	4,055	2,888	601	82	37	53	142	20	232
30～39세	4,446	3,295	480	146	30	47	232	39	176
40～49세	3,581	2,526	397	206	31	62	187	29	142
50～59세	1,722	1,083	219	127	9	107	72	17	88
60세 이상	756	292	118	102	6	114	28	19	76
고졸 이하	9,117	5,802	1,186	629	78	345	430	102	544
전문대졸 이하	1,748	1,354	215	18	17	21	70	11	43
대학 이상	3,719	2,936	418	19	19	17	161	10	1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4.

연령별로 살펴보면 근로형태에 따라 연령대별 특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일용근로의 경우는 40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연령대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근로의 경우 대부분이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에서는 50세 이후가 221만명

(58.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립도급의 경우 50세 미만이 561천명(8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근로의 경우에도 젊은층 일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용근로의 경우 고졸이하는 629천명으로 전체(고졸 이하)임금근로자 대비 6.9%인 반면에 대학 이상은 19천명으로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고용형태별 근로자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근로자 중 비정규근로로 분류되는 남성은 13.6%이며, 여성은 24.9%로 여성의 비중이 거의 남성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 및 독립도급근로는 여성이 남성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시간제근로에서는 여성이 8.9%로 남성(2.2%)에 비해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7세 연령대는 비정규직이 52.0%로 임금근로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45.6%로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59세 연령대의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24.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29세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14.0%로 각 연령대중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용역근로의 경우 50～59세 연령대는 6.2%가, 60세 이상 연령대도 용역근로가 15.1%로 타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7세 연령대의 경우 시간제근로가 40.0%로 동연령대 전체 비정규직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0세 이상 연령대도 10.1%로 시간제근로가 타 연령대에 비해 거의 2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졸 이하의 경우 비정규직이 23.3%, 전문대졸 이하가 10.3%, 대학 이상이 9.8%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의 경우 고졸 이하는 고졸 이하 전체 임금근로자의 6.9%인 반면에 대학 이상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인구학적 특성별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4년 기준)

(단위: %)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비정규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00.0	69.2	12.5	18.3	4.6	0.8	2.6	4.5	0.9	5.0
남성	100.0	73.7	12.7	13.6	4.7	0.6	2.6	3.3	0.2	2.2
여성	100.0	62.9	12.2	24.9	4.4	1.0	2.7	6.2	1.7	8.9
15～17세	100.0	32.0	20.0	52.0	12.0	-	-	-	-	40.0
18～29세	100.0	71.2	14.8	14.0	2.0	0.9	1.3	3.5	0.5	5.7
30～39세	100.0	74.1	10.8	15.1	3.3	0.7	1.1	5.2	0.9	4.0
40～49세	100.0	70.5	11.1	18.3	5.8	0.9	1.7	5.2	0.8	4.0
50～59세	100.0	62.9	12.7	24.4	7.4	0.5	6.2	4.2	1.0	5.1
60세 이상	100.0	38.6	15.6	45.6	13.5	0.8	15.1	3.7	2.5	10.1
고졸 이하	100.0	63.6	13.0	23.3	6.9	0.9	3.8	4.7	1.1	6.0
전문대졸 이하	100.0	77.5	12.3	10.3	1.0	1.0	1.2	4.0	0.6	2.5
대학 이상	100.0	78.9	11.2	9.8	0.5	0.5	0.5	4.3	0.3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4.

지금까지 살펴본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형태별 근로자수와 근로자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볼 경우 2004년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별도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표 2-10에서 15까지 참조).

〈표 2-10〉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형태별 근로자(2001년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3,540	10,195	1,056	298	127	288	769	219	587
남성	8,059	6,475	658	182	56	178	313	33	164
여성	5,481	3,720	399	116	71	110	456	186	423
15～17세	28	14	4	1	0	0	2	0	7
18～29세	4,212	3,320	368	36	49	38	176	21	204
30～39세	4,149	3,266	237	61	31	33	301	85	136
40～49세	3,070	2,339	203	100	21	55	199	35	119
50～59세	1,449	958	160	57	17	87	66	39	65
60세 이상	634	298	85	44	9	76	25	39	57
고졸 이하	8,393	6,057	646	277	83	255	542	191	344
전문대졸 이하	1,684	1,365	131	6	17	15	76	6	68
대학 이상	3,463	2,774	279	15	27	19	151	23	17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1.

〈표 2-11〉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형태별 근로자(2002년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4,030	10,601	1,123	412	92	316	743	179	565
남성	8,258	6,530	708	263	44	195	314	33	172
여성	5,772	4,070	415	149	48	121	430	147	393
15～17세	34	15	6	0	2	0	0	0	10
18～29세	4,228	3,338	376	40	42	33	176	22	201
30～39세	4,297	3,444	249	90	26	39	261	58	132
40～49세	3,254	2,456	249	133	13	53	200	40	109
50～59세	1,527	1,010	156	89	7	97	76	30	62
60세 이상	691	338	87	59	2	94	29	29	51
고졸 이하	8,461	6,110	652	378	61	286	509	152	314
전문대졸 이하	1,892	1,536	156	18	15	12	82	7	66
대학 이상	3,676	2,954	315	15	16	18	152	21	1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2.

〈표 2-12〉 인구학적 특성별 고용형태별 근로자(2003년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4,149	10,032	1,792	589	94	322	551	121	647
남성	8,283	6,240	1,053	380	39	189	205	14	163
여성	5,866	3,793	739	208	55	134	347	107	484
15～17세	23	6	5	5	0	1	0	0	5
18～29세	4,076	2,925	626	86	32	47	116	10	234
30～39세	4,320	3,316	429	118	27	28	212	39	150
40～49세	3,393	2,468	367	181	22	57	152	24	121
50～59세	1,647	1,051	226	124	4	94	51	23	75
60세 이상	689	266	137	75	8	95	21	25	63
고졸 이하	9,019	5,878	1,258	560	72	289	359	110	495
전문대졸 이하	1,611	1,275	180	14	14	13	70	5	41
대학 이상	3,518	2,879	354	15	9	21	123	6	1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3.

〈표 2-13〉 인구학적 특성별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1년 기준)

(단위: %)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비정규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남성	100.0	80.3	8.2	11.5	2.3	0.7	2.2	3.9	0.4	2.0
여성	100.0	67.9	7.3	24.9	2.1	1.3	2.0	8.3	3.4	7.7
15～17세	100.0	49.8	14.3	35.8	3.2	1.1	0.0	6.2	0.0	25.4
18～29세	100.0	78.8	8.7	12.4	0.9	1.2	0.9	4.2	0.5	4.8
30～39세	100.0	78.7	5.7	15.6	1.5	0.7	0.8	7.3	2.0	3.3
40～49세	100.0	76.2	6.6	17.2	3.2	0.7	1.8	6.5	1.2	3.9
50～59세	100.0	66.1	11.0	22.8	3.9	1.2	6.0	4.5	2.7	4.5
60세 이상	100.0	47.0	13.3	39.7	7.0	1.5	12.0	4.0	6.2	9.0
고졸 이하	100.0	72.2	7.7	20.1	3.3	1.0	3.0	6.5	2.3	4.1
전문대졸 이하	100.0	81.0	7.8	11.2	0.4	1.0	0.9	4.5	0.4	4.0
대학 이상	100.0	80.1	8.1	11.8	0.4	0.8	0.5	4.4	0.7	5.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1.

〈표 2-14〉 인구학적 특성별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2년 기준)

(단위: %)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비정규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남성	100.0	79.1	8.6	12.3	3.2	0.5	2.4	3.8	0.4	2.1
여성	100.0	70.5	7.2	22.3	2.6	0.8	2.1	7.4	2.5	6.8
15～17세	100.0	44.5	17.5	38.0	0.9	5.5	1.0	0.0	0.0	30.7
18～29세	100.0	79.0	8.9	12.2	0.9	1.0	0.8	4.2	0.5	4.8
30～39세	100.0	80.1	5.8	14.1	2.1	0.6	0.9	6.1	1.3	3.1
40～49세	100.0	75.5	7.6	16.9	4.1	0.4	1.6	6.2	1.2	3.3
50～59세	100.0	66.1	10.2	23.7	5.9	0.4	6.3	5.0	2.0	4.0
60세 이상	100.0	49.0	12.7	38.4	8.6	0.3	13.6	4.2	4.3	7.4
고졸 이하	100.0	72.2	7.7	20.1	4.5	0.7	3.4	6.0	1.8	3.7
전문대졸 이하	100.0	81.2	8.2	10.6	1.0	0.8	0.6	4.4	0.4	3.5
대학 이상	100.0	80.4	8.6	11.1	0.4	0.4	0.5	4.1	0.6	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2.

〈표 2-15〉 인구학적 특성별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3년 기준)

(단위: %)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비정규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남성	100.0	75.3	12.7	12.0	4.6	0.5	2.3	2.5	0.2	2.0
여성	100.0	64.7	12.6	22.7	3.6	0.9	2.3	5.9	1.8	8.2
15～17세	100.0	28.8	23.4	47.8	23.2	0.0	2.5	0.0	0.0	22.1
18～29세	100.0	71.8	15.4	12.9	2.1	0.8	1.2	2.8	0.2	5.7
30～39세	100.0	76.8	9.9	13.3	2.7	0.6	0.7	4.9	0.9	3.5
40～49세	100.0	72.7	10.8	16.5	5.3	0.7	1.7	4.5	0.7	3.6
50～59세	100.0	63.8	13.7	22.5	7.5	0.3	5.7	3.1	1.4	4.5
60세 이상	100.0	38.6	19.9	41.5	10.8	1.2	13.8	3.0	3.6	9.1
고졸 이하	100.0	65.2	13.9	20.9	6.2	0.8	3.2	4.0	1.2	5.5
전문대졸 이하	100.0	79.2	11.2	9.7	0.9	0.8	0.8	4.3	0.3	2.5
대학 이상	100.0	81.8	10.1	8.1	0.4	0.3	0.6	3.5	0.2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3.

2. 경기침체 장기화

가. 경기침체 장기화: 개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최고 9.4%에서 최저 5.9%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7년말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9%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경기회복을 하며 1999년 9.5%, 2000년 8.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 7.0%의 성장을 보인 이후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추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내부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잠재성장율 역시 감소하였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91～2000년 6.1%에서 2001～2004년 4.8%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

의 감소도 있지만 자본기여도의 하락이 가장 큰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표 2-16〉 연도별 각 지표별 변화추이(1988～2004)주6)

(단위: %, $)

년도	경제성장률 (실질GDP기준)1)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절대빈곤율2)	상대빈곤율2)3)	지니계수2)
1988	10.6	4,268	9.06	8.06	0.3951
1989	6.7	5,185	9.06	8.48	0.3227
1990	9.2	5,886	8.31	8.20	0.3002
1991	9.4	6,810	6.02	8.34	0.2967
1992	5.9	7,183	5.72	7.81	0.2960
1993	6.1	7,811	5.69	7.75	0.2977
1994	8.5	8,998	5.27	8.21	0.3049
1995	9.2	11,432	4.68	8.40	0.3013
1996	7.0	12,197	4.41	9.31	0.3063
1997	4.7	11,176	3.92	8.78	0.2998
1998	-6.9	7,355	7.58	10.80	0.3019
1999	9.5	9,438	8.21	10.71	0.3110
2000	8.5	10,841	6.35	9.87	0.3007
2001	3.8	10,160	5.21	9.57	0.3037
2002	7.0	11,499	4.04	9.56	0.2984
2003	3.1	12,720	5.27	10.55	0.3027
2004	4.6	14,162	-	-	-

주: 1) 2000년 기준임. 2) 경상소득 기준
3)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기준임.

자료: 원종욱 외,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성장분배의 선순환정책방향』, 정책 05-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한국은행, 인터넷통계 자료

주6) 절대 및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의 추정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함. 절대빈곤율 추정을 위한 빈곤선의 설정은 1999년 이전은 본 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1988년, 1994년 1999년 추정된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 연도간 동일비율을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2000년 이후는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함. 보건복지부발표 자료의 경우 7인가구 이상의 최저생계비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연구원 연구결과는 7인가구까지 나와 있음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8인가구 이상은 제외하였음.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여러 원인들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유도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연관관계의 약화, 2000년 이후 투자위축,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 둔화,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의 악화와 사회적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 및 교육기회의 불균형 심화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박양수·문소상, 2005).

1인당 국민총소득에서도 1996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다 1998년 $7,355까지 감소한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3년과 2004년에는 $12,720, $14,162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1인당 국민소득의 상승은 기준년도 변경과 원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에 의하면 절대빈곤율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위기기간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7.58%, 8.51%로 높아졌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2003년에 5.2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상대빈곤율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7～8%대 수준에서 경제위기 이후 최고 10.8%까지 상승한 이후 2003년에는 10.55%로 아직 1990년 초중반시기로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나. 청년실업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청년층의 실업상태는 매우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7년 32.2천명에서 1998년 65.5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34.1천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청년실업이 다시 증가해 2004년에는 39.1천명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도 1997년 5.7%에서 1998년 12.2%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실업률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4년 7.9%로 경제위기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7〉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상태의 변화[1)]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취 업	5,349	4,733	4,691	4,879	4,815	4,799	4,606	4,578
		-616	-42	188	-64	-16	-193	-28
		-13.0	-0.9	3.9	-1.3	-0.3	-4.2	-0.6
실 업	322	655	574	402	388	341	383	391
		333	-81	-172	-14	-47	42	9
		50.8	-14.1	-42.8	-3.6	-13.8	10.8	2.2
비경활	6,053	6,264	6,197	5,962	5,749	5,511	5,379	5,171
		211	-67	-235	-213	-238	-132	-208
		3.4	-1.1	-3.9	-3.7	-4.3	-2.5	-4.0
계(인구)	11,724	11,651	11,461	11,243	10,952	10,651	10,368	10,141
		-73	-190	-218	-291	-301	-283	-227
		-0.6	-1.7	-1.9	-2.7	-2.8	-2.7	-2.2
취업비율	45.6	40.6	40.9	43.4	44.0	45.1	44.4	45.1
실 업 율	5.7	12.2	10.9	7.6	7.5	6.6	7.7	7.9

주: 분석자료는 이병희 연구를 참조로 저자가 새롭게 구성

자료: 통계청, 인터넷자료(http://kosis.nso.go.kr/)

이병희,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연구 2003-1, 한국노동연구원, 2003.

연령별로 구분된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층인 15~29세 근로자가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1.3%에서 2002년 30.3%, 2003년 29.0%로 점차 줄어들어 2004년에는 28.0%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부터 청년실업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8〉 연령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1년 기준)

(단위: %)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5～17세	0.2	0.1	0.4	0.3	0.2	0.0	0.2	0.0	1.2
18～29세	31.1	32.6	34.9	12.1	38.6	13.2	22.9	9.3	34.6
30～39세	30.6	32.0	22.4	20.3	24.2	11.3	39.2	38.6	23.1
40～49세	22.7	22.9	19.2	33.4	16.3	18.9	25.9	16.1	20.2
50～59세	10.7	9.4	15.1	19.0	13.4	30.2	8.5	17.9	11.1
60세 이상	4.7	2.9	8.0	14.8	7.3	26.4	3.3	18.0	9.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1.

〈표 2-19〉 연령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2년 기준)

(단위: %)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5～17세	0.2	0.1	0.5	0.1	2.0	0.1	0.0	0.0	1.8
18～29세	30.1	31.5	33.5	9.7	45.5	10.3	23.7	12.2	35.7
30～39세	30.6	32.5	22.2	21.8	28.4	12.2	35.1	32.1	23.3
40～49세	23.2	23.2	22.2	32.3	14.7	16.8	27.0	22.4	19.2
50～59세	10.9	9.5	13.9	21.7	7.3	30.7	10.3	16.8	10.9
60세 이상	4.9	3.2	7.8	14.4	2.1	29.8	3.9	16.4	9.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2.

〈표 2-20〉 연령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3년 기준)

(단위: %)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5～17세	0.2	0.1	0.3	0.9	0.0	0.2	0.0	0.0	0.8
18～29세	28.8	29.2	35.0	14.6	33.8	14.6	21.0	7.9	36.1
30～39세	30.5	33.1	24.0	20.1	28.9	8.8	38.4	32.7	23.2
40～49세	24.0	24.6	20.5	30.7	23.8	17.7	27.6	20.2	18.8
50～59세	11.6	10.5	12.6	21.1	4.7	29.1	9.2	18.8	11.5
60세 이상	4.9	2.7	7.7	12.7	8.8	29.6	3.8	20.5	9.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3.

〈표 2-21〉 연령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율(2004년 기준)

(단위: %)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5～17세	0.2	0.1	0.3	0.5	0.0	0.0	0.0	0.0	1.3
18～29세	27.8	28.6	33.0	12.4	32.3	13.9	21.5	16.0	32.0
30～39세	30.5	32.7	26.4	21.8	26.4	12.3	35.1	31.9	24.3
40～49세	24.6	25.0	21.8	31.0	27.5	16.2	28.3	23.5	19.6
50～59세	11.8	10.7	12.0	19.0	8.2	27.8	10.8	13.5	12.2
60세 이상	5.1	2.9	6.5	15.3	0.0	29.9	4.2	15.1	1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94.4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2.

다. 소득양극화

국민연금제도 이외에도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고소득자와는 달리 저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이외에 딱히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해줄만한 장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양극화는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정책목표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침체 장기화의 결과 드러나고 있는 소득양극화 문제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부가조사에 나온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2004년을 기준으로 1분위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7.4%), 반면에 분위가 증가할수록,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줄고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져서 5분위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은 4.1%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도별로 소득분위별 임금근로자 수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상위 소득집단인 5분위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1년 5.5%(159천

명)에서 2004년 4.1%(123천명)로 낮아진 반면, 최저 소득집단인 1분위의 비중은 2001년 43.0%(1,133천명)에서 2004년 47.4%(1,318천명)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2〉 연도별 소득분위별 임금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1			2002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분위	1,500 (57.0)	1,133 (43.0)	2,634 (100.0)	1,396 (57.1)	1,048 (42.9)	2,444 (100.0)
2분위	2,183 (85.5)	371 (14.5)	2,554 (100.0)	2,577 (85.6)	435 (14.4)	3,011 (100.0)
3분위	1,991 (86.2)	319 (13.8)	2,310 (100.0)	2,355 (86.1)	379 (13.9)	2,734 (100.0)
4분위	2,856 (90.3)	306 (9.7)	3,162 (100.0)	2,436 (90.0)	270 (10.0)	2,706 (100.0)
5분위	2,721 (94.5)	159 (5.5)	2,880 (100.0)	2,959 (94.4)	175 (5.6)	3,134 (100.0)
전체	11,251 (83.1)	2,289 (16.9)	13,540 (100.0)	11,723 (83.6)	2,306 (16.4)	14,030 (100.0)
구분	2003			2004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분위	1,141 (51.6)	1,070 (48.4)	2,211 (100.0)	1,464 (52.6)	1,318 (47.4)	2,782 (100.0)
2분위	2,084 (82.0)	458 (18.0)	2,542 (100.0)	2,435 (81.3)	559 (18.7)	2,994 (100.0)
3분위	2,909 (86.7)	446 (13.3)	3,355 (100.0)	1,879 (87.3)	273 (12.7)	2,153 (100.0)
4분위	2,330 (91.3)	221 (8.7)	2,552 (100.0)	3,277 (89.1)	400 (10.9)	3,677 (100.0)
5분위	3,359 (96.3)	130 (3.7)	3,489 (100.0)	2,855 (95.9)	123 (4.1)	2,979 (100.0)
전체	11,824 (83.6)	2,325 (16.4)	14,149 (100.0)	11,911 (81.7)	2,673 (18.3)	14,584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소득 수준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규직 평균소득 대비 비정규직 평균소득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 58.9%에서 2002년에는 조금 상승하여 61.3%가 되었다가 2003년에는 53.3%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 후 2004년에는 55.2%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2001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의 소득수준이 정규직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득비율의 변화

를 1분위와 5분위를 대비해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60%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인 1분위는 30%대로 약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변화추이의 경우 5분위는 2002년 감소한 이후 2004년에 반등하고 있으나 1분위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3〉 연도별 소득분위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추이

(단위: 천원)

구분	2001			2002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분위	516,196	160,452	441,902	593,366	228,385	463,266
2분위	800,111	362,626	756,554	849,564	464,931	803,450
3분위	1,093,469	600,864	993,539	1,130,677	708,420	1,087,923
4분위	1,485,111	924,535	1,386,139	1,602,515	989,328	1,485,237
5분위	2,517,625	1,695,335	2,444,422	2,737,735	1,749,326	2,565,637
전체	1,334,594	785,880	1,241,831	1,414,729	867,268	1,324,730
5분위비율[1)]	4.88	10.57	5.53	4.61	7.66	5.54
구분	2003			2004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분위	591,494	213,048	455,240	675,379	234,820	522,817
2분위	936,894	458,594	801,913	997,514	468,981	918,370
3분위	1,272,537	699,535	1,148,475	1,370,241	706,592	1,244,586
4분위	1,743,694	977,339	1,627,008	1,918,536	1,071,123	1,727,872
5분위	3,101,956	1,716,270	2,779,685	3,273,528	1,972,046	3,107,534
전체	1,588,322	846,445	1,466,429	1,680,284	927,363	1,542,279
5분위비율[1)]	5.24	8.06	6.11	4.85	8.40	5.94

주: 1) 5분위 비율 = 5분위 평균소득/1분위 평균소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24〉 분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소득비율 추이

(단위: %)

	2001	2002	2003	2004
1분위	31.1	38.5	36.0	34.8
2분위	45.3	54.7	48.9	47.0
3분위	55.0	62.7	55.0	51.6
4분위	62.3	61.7	56.0	55.8
5분위	67.3	63.9	55.3	60.2
전체	58.9	61.3	53.3	55.2

주: 5분위 비율 = 5분위 평균소득/1분위 평균소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2〕 분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소득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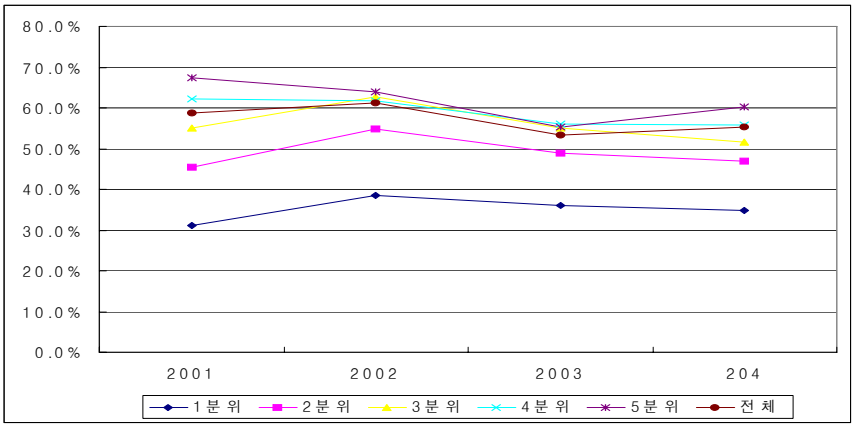

주: 5분위 비율 = 5분위 평균소득/1분위 평균소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은 1분위 평균소득에 대한 5분위 평균소득의 비율인 5분위 소득비율에 의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임금근로자 전체의 5분위 소득비율은 2001년 5.5배에서 2003년 6.1배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5.9배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정규직의 5분위 소득비율은 2001년 4.9배에서 2003년 5.2배까지 증가하였으나 2004년 다시 4.9배로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10.6배

(2001)에서 시작하여 7.7배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8.4배로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확대로 인한 양극화도 문제이지만 비정규직내에서의 소득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5〉 5분위소득 비율 변화

	2001	2002	2003	2004
정규직	4.88	4.61	5.24	4.85
비정규직	10.57	7.66	8.06	8.4
전체	5.53	5.54	6.11	5.94

〔그림 2-3〕 5분위소득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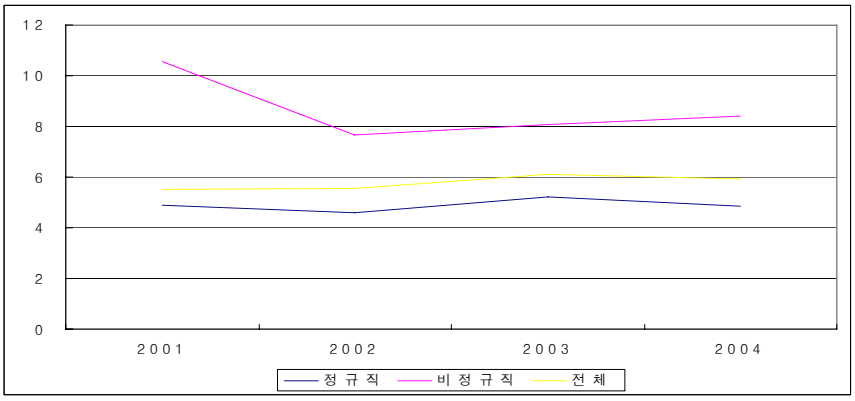

라. 조기퇴직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보다 20여 년이나 늦게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오륙도', '사오정' 등으로 표현되는 비자발적 조기퇴직의 관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50대 이상 실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가 이후에 점차 감소했으나 최근 2년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50% 정도가 50대 중반 이전에 주된 일자리(major job)에서

퇴직하고 있으며, 취업형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균퇴직 연령은 54.1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 2003).[주7] 이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으로 알려져 있는 56.0세보다 1.9세 낮은 수치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를 구성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평균 퇴직연령은 52.3세로 자영업자나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평균 56.5세보다 4.2세나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6〉 퇴직연령대별 분포

(단위: %)

	퇴직연령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남성	47.72	21.09	18.87	7.77	2.59	1.97
여성	49.63	17.39	17.69	6.60	6.00	2.70
임금근로자	52.47	22.50	17.69	4.45	1.93	0.96
비임금근로자	43.59	15.46	19.17	10.82	6.96	4.02

자료: 한국노동패널(KLIPS), 「중고령자 부가조사자료」, 2003.
방하남 외,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

제2절 국민연금제도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및 납부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17백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연금보험료납부자는 12.3백만명으로 전체가입자의 72.1%에 달하고 있다. 연금가입자중 지역가입자는 55.1%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보험료 납부자는 470만명으로 납부율은 지역가입자 대비 50.3%에 머무르고 있다. 2002년, 2003년말에 비해 각각 7.2%포인트, 3.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주7) 조기퇴직 경향에 관한 정보는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로부터 의미있는 결과를 찾기가 어려워 부득이 2003년도 한국노동패널 중고령자 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한 보고서를 인용하였음.

〈표 2-27〉 국민연금 가입자 및 납부자 현황

(단위: 명)

기준	총가입자	보험료 납부자 전체[1]	지역가입자		
			전체가입자	보험료 납부자	납부예외자[2]
2002년 12월말	16,498,932	12,248,483 (74.2)	10,004,789	5,754,340	4,250,449 (42.5)
2003년 12월말	17,181,778	12,358,149 (71.9)	9,964,234	5,399,355	4,564,879 (45.8)
2004년 12월말	17,070,217	12,310,152 (72.1)	9,412,566	4,729,503	4,683,063 (49.7)

주: 1) ( )안은 총가입자대비 보험료납부자의 비율임.
2) ( )안은 지역가입자대비 납부예외자의 비율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자료, 2005.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현황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실직 및 휴직, 사업중단의 요인에 의한 납부예외자의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납부예외율이 높은 연령대를 살펴보면 납부예외자 중 30대가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와 20대(24.6%)의 순으로 큰 비중을 나타나고 있어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과 국민연금에의 기여를 보여야 할 연령대에서 납부예외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대별로 납부예외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20대의 경우 재학 및 병역에 의한 사유가 8.2%로 20세 미만(18~19세)의 연령대 다음으로 높기는 하지만 역시 실직 및 휴직과 사업중단이 약 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의 경우도 역시 실직 및 휴직과 사업중단에 의한 사유가 약 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40대는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중단에 의한 사유가 14% 정도로 높아 다른 연령대와는 차별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50대 이상은 8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하면 실직 및 휴직, 사업중단의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납부예외자가 전 연령대에 걸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에서도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2, 30대가 경제여건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8〉 사유별·연령별 납부예외자 현황(2004년 12월)

(단위: 천명, %)

	계	실직 휴직	사업 중단	3월 이상 입원	자연 재해	기초 생활 곤란	교도소 수감	주소 불명	재학 병역	기타
계	4,683.1 (100.0)	3,426.6 (100.0)	436.0 (100.0)	16.3 (100.0)	1.2 (100.0)	6.6 (100.0)	15.4 (100.0)	518.1 (100.0)	118.6 (100.0)	144.4 (100.0)
20세 미만	19.7 (0.4)	15.8 (0.5)	0.0 (0.0)	0.0 (0.0)	- -	0.0 (0.0)	0.0 (0.0)	0.1 (0.0)	3.0 (20.9)	0.3 (0.2)
20~29세	1,154.4 (24.6)	982.2 (28.7)	30.7 (7.1)	0.4 (2.4)	0.0 (1.9)	0.6 (9.1)	1.7 (10.8)	25.6 (4.9)	79.5 (64.8)	18.8 (13.0)
30~39세	1,522.8 (32.5)	1,095.2 (32.0)	162.1 (37.2)	5.3 (32.5)	0.3 (27.5)	1.8 (27.8)	6.8 (43.9)	174.4 (33.7)	15.9 (13.0)	58.0 (40.2)
40~49세	1,231.9 (26.3)	791.5 (23.1)	168.5 (38.6)	5.8 (35.5)	0.5 (41.4)	2.4 (35.4)	5.2 (34.0)	213.2 (41.2)	1.3 (1.1)	43.2 (29.9)
50세 이상	754.3 (16.1)	541.8 (15.8)	74.6 (17.1)	4.8 (29.6)	0.3 (29.2)	1.8 (27.8)	1.7 (11.3)	104.8 (20.2)	0.2 (0.2)	24.1 (6.7)

주: ( )안은 연령대별 비중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4.

〈표 2-29〉 연령대별 납부예외 사유(2004년 12월)

(단위: %)

	계	실직 휴직	사업 중단	3월 이상 입원	자연 재해	기초 생활 곤란	교도소 수감	주소 불명	재학 병역	기타
계	100	73.17	9.31	0.35	0.02	0.14	0.33	11.06	2.53	3.08
20세 미만	100	80.24	0.16	0.01	0.00	0.01	0.01	0.27	17.99	1.32
20~29세	100	85.09	2.66	0.03	0.00	0.05	0.14	2.22	8.17	1.63
30~39세	100	71.92	10.65	0.35	0.02	0.12	0.44	11.45	1.24	3.81
40~49세	100	64.25	13.68	0.47	0.04	0.19	0.42	17.31	0.13	3.51
50세 이상	100	71.83	9.89	0.64	0.04	0.24	0.23	13.89	0.03	3.2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4.

다음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수급자는 1,542천명이고 총 급여액은 2,914백만원으로 1인당 연간 1,890천원씩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령연금의 수급자수가 1,156천명으로 전체의 75%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족연금이 14.72%, 장애연금이 3.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급여액도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0〉 급여종류별 지급현황(2004년 12월)

(단위: 천명, 천원, %)

계	수급자수	1,542(100)
	금액	2,914,015(100)
	1인당	1,890
노령연금	수급자수	1,156(74.97)
	금액	1,987,451(68.20)
	1인당	1,719
장애연금	수급자수	47(3.05)
	금액	163,629(5.62)
	1인당	3,481
유족연금	수급자수	227(14.72)
	금액	417,886(14.34)
	1인당	1,841
일시금(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수급자수	111(7.26)
	금액	345,049(11.84)
	1인당	3,109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4.

한편, 2000년 이후 인구학적 분류에 따른 국민연금의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비중이 2000년 이후 남성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의 경우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연금가입자수가 약 10만명 증가한 것에 비해 동기간 여성은 약 75만명이 증가하여 남성에 비해 7.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주8]함에 따라 국민연금에의 가입기회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분류에 의할 경우, 20대 연금가입자의 비중과 절대적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대와 40대의 비중의 큰 변화가 없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성별 가입자 증가율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성 가입자의 증가율은 가입자 전체의 증가율 보다 낮고, 여성 가입자의 증가율은 전체 가입자의

주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에서 2004년 49.8%로 2.8%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남성은 1990년 74.0%에서 2004년 74.8%로 0.8%포인트가 증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가입자의 증가율이 여성가입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1〉 성별 가입자 변화추이

(단위: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사람수	비율	사람수	비율	사람수	비율	사람수	비율
남	8,499,161	(72.3)	8,425,650	(71.4)	8,559,538	(69.9)	8,601,454	(68.2)
여	3,263,955	(27.7)	3,376,454	(28.6)	3,688,945	(30.1)	4,015,445	(31.8)
합계	11,763,116	(100.0)	11,802,104	(100.0)	12,248,483	(100.0)	12,616,899	(10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표 2-32〉 성별 가입자 증가율 변화

(단위: %)

	2001	2002	2003
남	-0.9	1.6	0.5
여	3.4	9.3	8.9
전체	0.3	3.8	3.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4〕 성별 가입자 증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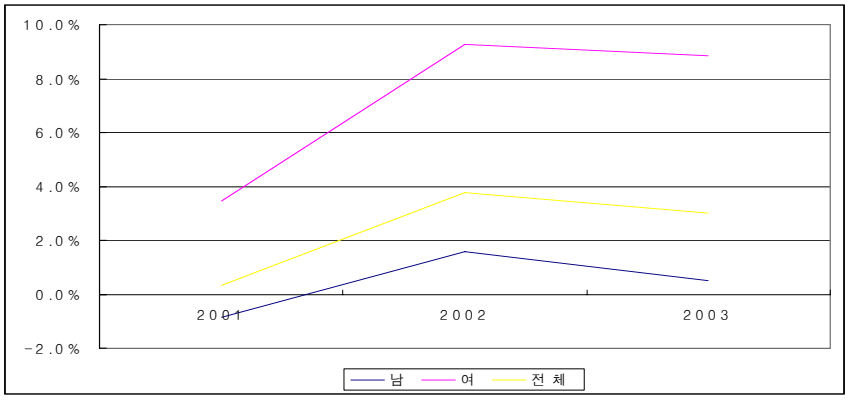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제3장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가입실태의 변화

제1절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가입실태

본 절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가 국민연금 가입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용형태별 국민연금제도 가입실태

연도별 직종별로 국민연금의 가입자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12,879천명 중 6,951.0천명(54.0%)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가입규모는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 8월에는 13,803천명 중 8,599.8천명으로 2001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주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용직에 해당되는 무기계약 및 유기계약 근로자들의 연금가입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기계약근로자의 가입규모가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제, 파견, 용역직 등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의 가입수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가입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관련하여 2003년 7월

주9) 국민연금관리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8월기준 실제 사업장가입자 규모는 5,815천명, 2004년 8월은 7,384천명으로 본 자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시간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자료까지는 연금가입자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10]. 그러나 2003년 국민연금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03년 8월 이후의 분석에서는 시간 및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가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주11].

〈표 3-1〉 연도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자 변화

(단위: 천 명, %)

구분	2001년 8월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임금근로자	7,068.3 (100.0)	7,392.4 (100.0)	8,162.6 (100.0)	8,682.6 (100.0)
무기계약근로자	6,286.5 (88.9)	6,535.2 (88.4)	6,950.0 (85.1)	7,122.0 (82.0)
유기계약근로자	351.8 (5.0)	417.8 (5.7)	822.6 (10.1)	1,039.2 (12.0)
시간제근로자	9.7 (0.1)	14.7 (0.2)	14.0 (0.2)	20.6 (0.2)
일용근로자	0.3 (0.0)	0.0 (0.0)	0.8 (0.0)	3.3 (0.0)
파견근로자	67.5 (1.0)	50.0 (0.7)	51.2 (0.6)	73.4 (0.8)
용역근로자	146.2 (2.1)	165.2 (2.2)	191.1 (2.3)	221.3 (2.5)
독립도급근로자	181.8 (2.6)	185.5 (2.5)	124.8 (1.5)	179.3 (2.1)
재택근로자	24.5 (0.3)	24.0 (0.3)	8.1 (0.1)	23.5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1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관련하여 2003년 7월 시행령개정이전의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1. 일용근로자 또는 3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 4. 비상임이사,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시행령 2조)로 되어 있음.

주11) 2003년 6월 27일 국민연금 시행령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범위가 확대됨. 즉 2003년 7월부터는 ① 5인 이상 사업장의 1월 이상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② 5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인사업장과 의사, 변호사 등이 운용하는 전문직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004년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중 시행령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 2006년 1월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체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가 확대됨.

〈표 3-2〉 연도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자비율 변화(연령통제시)[1)]

(단위: 천 명, %)

구분	2001년 8월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전체	가입자	비율[2)]	전체	가입자	비율[2)]	전체	가입자	비율[2)]	전체	가입자	비율[2)]
임금근로자	12,879	6,951.0	(54.0)	13,305	7,247.5	(54.5)	13,437	8,063.4	(60.0)	13,803	8,559.8	(62.0)
무기계약	9,884	6,207.8	(62.8)	10,248	6,429.4	(62.7)	9,760	6,892.6	(70.6)	9,792	7,051.4	(72.0)
유기계약	968	345.7	(35.7)	1,029	409.3	(39.8)	1,649	808.3	(49.0)	1,697	1,016.4	(59.9)
시간제	523	9.1	(1.7)	503	14.8	(2.9)	579	14.0	(2.4)	639	20.0	(3.1)
일용	253	0.3	(0.1)	352	0.0	(0.0)	509	0.8	(0.2)	561	3.4	(0.6)
파견	117	66.5	(56.8)	88	49.1	(56.0)	86	50.3	(58.4)	108	70.8	(65.5)
용역	212	122.5	(57.8)	221	139.6	(63.1)	226	165.4	(73.1)	269	199.0	(74.0)
독립도급	742	174.9	(23.6)	714	181.2	(25.4)	531	124.0	(23.4)	633	175.6	(27.7)
재택	180	24.2	(13.4)	150	24.1	(16.1)	96	8.0	(8.3)	105	23.2	(22.1)

주: 1) 연령통제는 국민연금가입기준인 18~59세사이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임.

2) 비율 =(연금)가입자/전체 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국민연금가입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1년 8월 15.7%에서 2002년 8월 15.2%, 2003년 8월에는 15.1%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 8월에는 16.8%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정규직 비중이 2001년에는 1.2% 포인트, 2002년에는 1.2% 포인트, 2003년 1.3% 포인트, 2004년에는 1.6%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가입 비대상 연령층인 15~17세 및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입대상 연령층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구성비의 변화

(단위: %)

구분	2001년 8월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84.3	84.8	84.9	83.2
무기계약	76.7	77.0	72.6	70.9
유기계약	7.5	7.7	12.3	12.3
비정규직	15.7	15.2	15.1	16.8
시간제	4.1	3.8	4.3	4.6
일용	2.0	2.6	3.8	4.1
파견	0.9	0.7	0.6	0.8
용역	1.6	1.7	1.7	1.9
독립도급	5.8	5.4	4.0	4.6
재택	1.4	1.1	0.7	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적용실태

국민연금가입대상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8~59세까지의 가입비율은 2001년 54.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62.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정부의 가입자범위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연령대별 가입자 비율은 30~39세 연령대가 18~59세의 가입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층의 가입자 비율도 40~49세의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의 일자리도 국민연금가입 측면에서는 타 연령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청년층의 가입자 비율이 62.1%로 30~39세 연령대의 가입비율 바로 다음으로 나타나, 조기퇴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49세 및 50~59세 연령대보다 국민연금의 가입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의 증가 추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가입자 비율이 정규직의 1/3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대추세를 고려하면 이들의 국민연금가입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50~59세를 제외하고 타 연령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인 18~29세 연령대의 가입자 비율은 2004년 20.8%로 조기퇴직 문제를 안고 있는 40~49세 연령대보다 2.6% 포인트 높게 나타나 국민연금 가입가능성 측면에서 조기퇴직자들의 일자리보다는 다소 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 연도별 연령별 전체근로자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연금가입자			연금가입자			연금가입자	
2001	18～29세	3,688	2,122	(57.5)	523	100	(19.1)	4,212	2,222	(52.8)
	30～39세	3,503	2,257	(64.4)	645	126	(19.5)	4,149	2,383	(57.5)
	40～49세	2,542	1,545	(60.8)	528	95	(18.0)	3,070	1,640	(53.4)
	50～59세	1,118	629	(56.2)	331	77	(23.3)	1,449	706	(48.7)
	전체	10,851	6,553	(60.4)	2,028	398	(19.6)	12,879	6,951	(54.0)
2002	18～29세	3,714	2,136	(57.5)	514	110	(21.4)	4,228	2,246	(53.1)
	30～39세	3,693	2,415	(65.4)	605	117	(19.4)	4,297	2,532	(58.9)
	40～49세	2,705	1,627	(60.2)	549	99	(18.0)	3,254	1,726	(53.0)
	50～59세	1,166	661	(56.7)	361	83	(23.0)	1,527	744	(48.7)
	전체	11,277	6,839	(60.6)	2,029	409	(20.2)	13,305	7,248	(54.5)
2003	18～29세	3,552	2,325	(65.5)	524	79	(15.1)	4,076	2,404	(59.0)
	30～39세	3,745	2,684	(71.7)	575	105	(18.3)	4,320	2,789	(64.6)
	40～49세	2,835	1,906	(67.2)	558	86	(15.4)	3,393	1,992	(58.7)
	50～59세	1,277	786	(61.6)	370	94	(25.4)	1,647	880	(53.4)
	전체	11,409	7,701	(67.5)	2,028	363	(18.0)	13,437	8,063	(60.0)
2004	18～29세	3,488	2,400	(68.8)	566	118	(20.8)	4,055	2,518	(62.1)
	30～39세	3,775	2,818	(74.6)	671	141	(21.0)	4,446	2,959	(66.6)
	40～49세	2,922	1,984	(67.9)	658	120	(18.3)	3,581	2,104	(58.8)
	50～59세	1,302	866	(66.5)	419	113	(26.9)	1,722	979	(56.9)
	전체	11,489	8,068	(70.2)	2,315	492	(21.3)	13,803	8,560	(6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변화를 살펴보면, 30~39세 연령대는 2001년 32.0%에서 2002년 34.9%까지 증가한 후 2003년과 2004년에는 34.6%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1년보다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40~49세 연령대에서도 나타나 2001년 23.6%에서 204년 24.6%가 되었다. 한편 청년층인 18~29세 연령대는 2001년 32.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29.4%가 되었으나, 50~59세의 연령대는 2001년 1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11.4%가 되었다.

〔그림 3-1〕 국민연금가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임금근로자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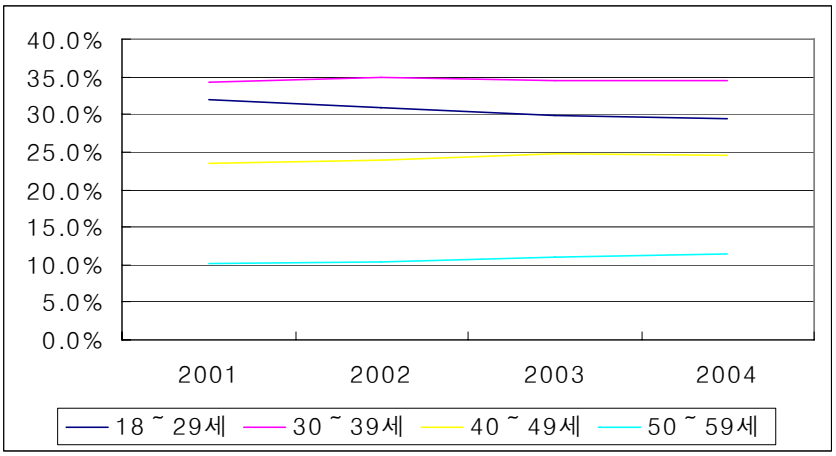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와 같은 연령대별 국민연금자의 연도별 구성비 변화는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것도 문제이지만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면, 먼저 정규직의 경우 임금근로자 전체와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30~39세 및 40~49세 연령대는 2001년 보다 2004년의 구성비가 증가하였으나 전자는 20032 보다, 후자는 2003년보다는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그리고 청년층인 18~29세 연령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50~59세의 연령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경우 18~29세 연령대는 25.1%(2001년)에서 2002년 26.9%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 21.7%로 감소 후 2004년에 다시 증가하였지만 2001년보다는 감소한 수준인 24.0%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등락 패턴은, 증가와 감소하는 연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어 정규직과는 다른 양태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비교해 볼 때, 18~39세 연령대의 구성비가 감소하고 50~59세 연령대의 구성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기퇴직이 원인인 것으로 유추된다.

〔그림 3-2〕 국민연금가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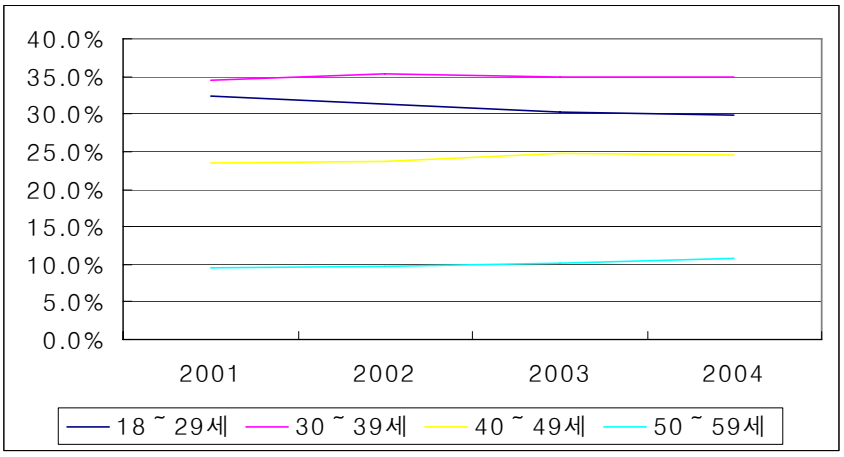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3〕 국민연금가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변화(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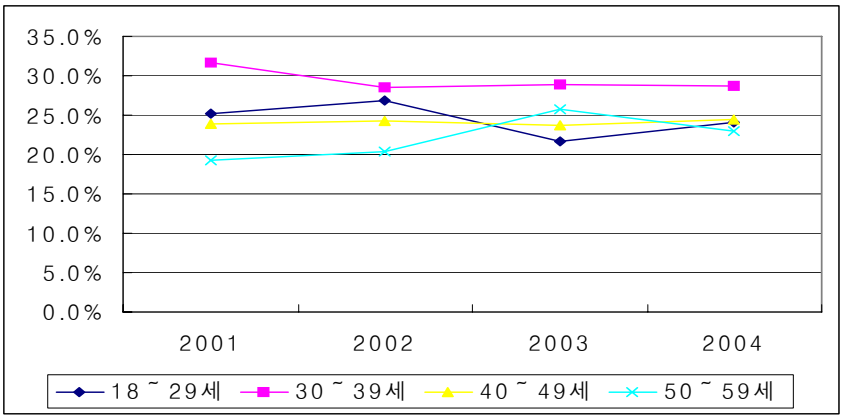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번에는 국민연금가입자의 각 연령대별 고용형태의 분포를 살펴보자. 우선 청년층인 18~29세 연령대의 가입자 중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95% 이상을 차지하여 50~59세 연령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기계약근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무기계약근로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중에서의 유기계약근로 비중의 증가는 다른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8~29세의 청년층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50~59세 연령대 가입자들의 경우는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용역근로가 8.6%(2004년 기준)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계약의 형태가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도 반영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양자간의 비중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 중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유기계약근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넓은 의미에서의 비정규직의 확대경향이 국민연금가입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연도별 연령별 국민연금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1			2002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8～29세	2,122 (95.5)	100 (4.5)	2,222 (100.0)	2,136 (95.1)	110 (4.9)	2,246 (100.0)
30～39세	2,257 (94.7)	126 (5.3)	2,384 (100.0)	2,415 (95.4)	117 (4.6)	2,532 (100.0)
40～49세	1,545 (94.2)	95 (5.8)	1,640 (100.0)	1,627 (94.3)	99 (5.7)	1,726 (100.0)
50～59세	629 (89.0)	77 (11.0)	706 (100.0)	661 (88.8)	83 (11.2)	744 (100.0)
전체	6,553 (94.3)	398 (5.7)	6,951 (100.0)	6,839 (94.4)	409 (5.6)	7,248 (100.0)
구분	2003			2004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8～29세	2,325 (96.7)	79 (3.3)	2,404 (100.0)	2,400 (95.3)	118 (4.7)	2,518 (100.0)
30～39세	2,684 (96.3)	105 (3.7)	2,789 (100.0)	2,818 (95.2)	141 (4.8)	2,959 (100.0)
40～49세	1,906 (95.7)	86 (4.3)	1,992 (100.0)	1,984 (94.3)	120 (5.7)	2,104 (100.0)
50～59세	786 (89.4)	94 (10.6)	880 (100.0)	866 (88.5)	113 (11.5)	979 (100.0)
전체	7,701 (95.5)	364 (4.5)	8,065 (100.0)	8,068 (94.3)	492 (5.7)	8,56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6〉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1년기준)

(단위: 천명)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8～29세	2,221.9	1,968.8	153.5		33.9	19.1	37.8	7.3	1.5
30～39세	2,383.5	2,154.2	103.2	0.3	17.2	19.9	73.9	9.8	5.0
40～49세	1,639.7	1,495.6	49.6		8.0	29.2	50.5	5.6	1.2
50～59세	705.9	589.2	39.4		7.4	54.3	12.7	1.5	1.4
전체	6,951.0	6,207.8	345.7	0.3	66.5	122.5	174.9	24.2	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1.

〈표 3-7〉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2년기준)

(단위: 천명)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8～29세	2,246.2	1954.1	182.1		30.6	20.2	46.1	10.3	2.8
30～39세	2,531.5	2294.1	120.7		12.9	25.7	68.5	5.2	4.4
40～49세	1,725.9	1553.5	73.4		2.4	30.7	52.9	6.3	6.7
50～59세	743.9	627.7	33.1		3.2	63	13.7	2.3	0.9
전체	7,247.5	6429.4	409.3		49.1	139.6	181.2	24.1	14.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2

〈표 3-8〉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3년기준)

(단위: 천명)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8～29세	2,403.5	1963.8	360.7		20.4	31.4	23.5	1.9	1.8
30～39세	2,788.7	2441.6	242.6	0.4	14.6	19.9	61.9	2	5.7
40～49세	1,991.6	1765.9	140.2		12.7	40.4	26.3	2.7	3.4
50～59세	879.6	721.3	64.8	0.4	2.6	73.7	12.3	1.4	3.1
전체	8,063.4	6892.6	808.3	0.8	50.3	165.4	124	8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3.

〈표 3-9〉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4년기준)

(단위: 천명)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8～29세	2,518.4	1984.5	415.9		28.7	38.1	37.3	9.5	4.4
30～39세	2,958.3	2483.9	333.7		22	32.3	69.6	9.3	7.5
40～49세	2,104.1	1807.4	176.4	1.9	16.6	44.2	46.7	3.4	7.5
50～59세	979.0	775.6	90.4	1.5	3.5	84.4	22	1	0.6
전체	8,559.8	7051.4	1016.4	3.4	70.8	199	175.6	23.2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4.

〈표 3-10〉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1년기준)

(단위: %)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8～29세	100.00	88.61	6.91		1.53	0.86	1.70	0.33	0.07
30～39세	100.00	90.38	4.33	0.01	0.72	0.83	3.10	0.41	0.21
40～49세	100.00	91.21	3.02		0.49	1.78	3.08	0.34	0.07
50～59세	100.00	83.47	5.58		1.05	7.69	1.80	0.21	0.20
전체	100.00	89.31	4.97		0.96	1.76	2.52	0.35	0.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1.

〈표 3-11〉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2년기준)

(단위: %)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8～29세	100.00	87.00	8.11		1.36	0.90	2.05	0.46	0.12
30～39세	100.00	90.62	4.77		0.51	1.02	2.71	0.21	0.17
40～49세	100.00	90.01	4.25		0.14	1.78	3.07	0.37	0.39
50～59세	100.00	84.38	4.45		0.43	8.47	1.84	0.31	0.12
전체	100.00	88.71	5.65		0.68	1.93	2.50	0.33	0.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2.

〈표 3-12〉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3년기준)

(단위: %)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8～29세	100.0	81.71	15.01	0.00	0.85	1.31	0.98	0.08	0.07
30～39세	100.0	87.55	8.70	0.01	0.52	0.71	2.22	0.07	0.20
40～49세	100.0	88.67	7.04	0.00	0.64	2.03	1.32	0.14	0.17
50～59세	100.0	82.00	7.37	0.05	0.30	8.38	1.40	0.16	0.35
전체	100.0	85.48	10.02	0.01	0.62	2.05	1.54	0.10	0.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3.

〈표 3-13〉 연령별 고용형태별 국민연금가입자 분포(2004년기준)

(단위: %)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8～29세	100.0	78.80	16.51		1.14	1.51	1.48	0.38	0.17
30～39세	100.0	83.96	11.28		0.74	1.09	2.35	0.31	0.25
40～49세	100.0	85.90	8.38	0.09	0.79	2.10	2.22	0.16	0.36
50～59세	100.0	79.22	9.23	0.15	0.36	8.62	2.25	0.10	0.06
전체	100.0	82.38	11.87	0.04	0.83	2.32	2.05	0.27	0.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4.

제2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민연금 구조변화

1. 청년실업과 국민연금 가입실태

경기침체에 의한 청년실업의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령별 국민연금가입자수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29세 연령대의 가입자 비율은 2000년 21.5%, 2001년 20.2%, 2002년 19.6%, 그리고 2003년 19.5%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어 청년실업의 문제가 국민연금가입자에게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연령별 국민연금가입자 변화추이

(단위: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사람수	비율	사람수	비율	사람수	비율	사람수	비율
18～29세	2,529,148	(21.5)	2,385,251	(20.2)	2,399,253	(19.6)	2,455,786	(19.5)
30～39세	3,737,604	(31.8)	3,739,058	(31.7)	3,865,847	(31.6)	3,959,926	(31.4)
40～49세	3,249,458	(27.6)	3,449,436	(29.2)	3,650,394	(29.8)	3,768,122	(29.9)
50～59세	2,126,597	(18.1)	2,080,230	(17.6)	2,125,159	(17.4)	2,169,565	(17.2)
60세 이상	120,309	(1.0)	148,129	(1.3)	207,830	(1.7)	263,500	(2.1)
합계	11,763,116	(100.0)	11,802,104	(100.0)	12,248,483	(100.0)	12,616,899	(10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연령별 가입자 증가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40대와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전체가입자의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18~29세, 그리고 30~39세와 50~59세의 연령대는 증가율이 전체가입자의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8~29세의 경우는 2001년 음(-)의 증가율(-5.7%)을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는 2002년의 가입자 증가율이 0.6%로 취업의 어려움이 2002년 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5〉 연령대별 가입자의 증가율 변화

(단위: %)

	2001	2002	2003
18～29세	-5.7	0.6	2.4
30～39세	0.0	3.4	2.4
40～49세	6.2	5.8	3.2
50～59세	-2.2	2.2	2.1
60세 이상	23.1	40.3	26.8
전체	0.3	3.8	3.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3-4〕 연령대별 가입자의 증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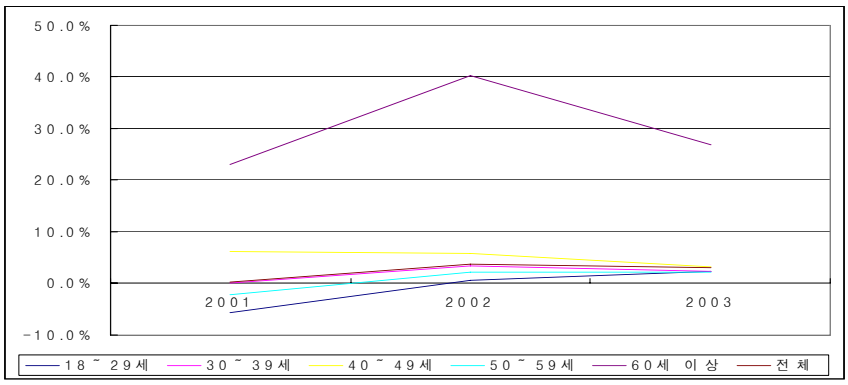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가입자의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30~39세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18~29세와 50~59세의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30~39세 및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층의 근로활동 증가와 청년실업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5〕 연령대별 가입자의 구성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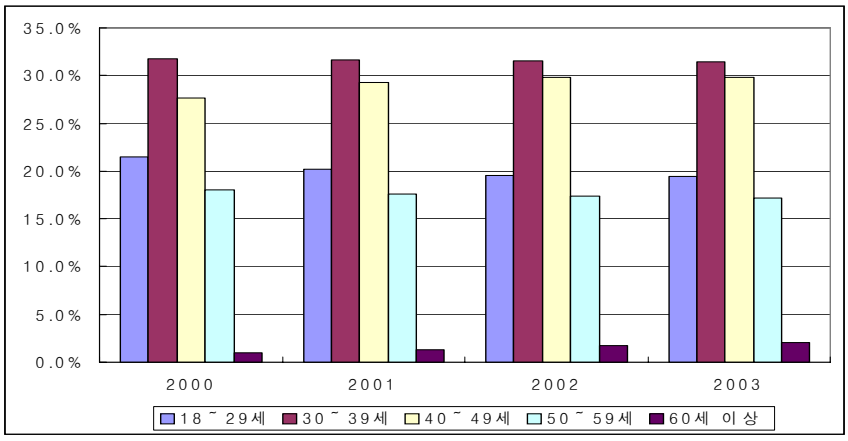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2. 소득양극화와 국민연금 가입실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2년과 2004년의 등급별 소득자료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장가입자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2년과 2004년 모두 21~25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고, 41~45등급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은 bimodal 형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각 년도의 분포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위등급인 25등급까지는 2002년에 비해 2004년에 가입자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26등급 이상의 등급에서는 가입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득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3-16〉 소득등급별 가입자 변화추이(2004. 12월기준)

(단위: 명, %)

등급	사업장		지역	
	2002	2004	2002	2004
1～5	3,498 (0.05)	4,063 (0.05)	6126 (0.11)	4,715 (0.10)
6～10	16,309 (0.23)	16,886 (0.22)	68,562 (1.3)	34721 (0.73)
11～15	237,498 (3.38)	178,153 (2.35)	457,696 (8.67)	306,795 (6.49)
16～20	1,099,106 (15.67)	1,137,180 (15.00)	129,7271 (24.58)	1,238,546 (26.19)
21～25	1,453,475 (20.7)	1,539,405 (20.31)	2,557,725 (48.4)	2,362,465 (49.95)
26～30	1,272,789 (18.15)	1,380,097 (18.21)	518,069 (9.8)	481,664 (10.18)
31～35	983,021 (14.0)	1,065,528 (14.06)	189,723 (3.6)	161,747 (3.42)
36～40	679,796 (9.75)	774,043 (10.21)	73,908 (1.4)	59,741 (1.26)
41～45	1,265,728 (18.05)	1,485,294 (19.59)	108,652 (2.05)	79,109 (1.67)
계	7,011,220 (100.0)	7,580,649 (100.0)	5,277,732 (100.0)	4,729,503 (10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자료, 2005.

〔그림 3-6〕 사업장의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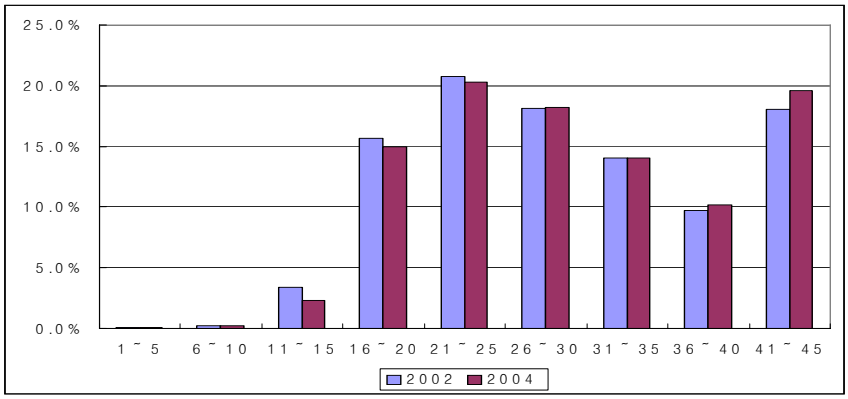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자료, 2005.

한편, 지역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등급별 분포는 사업장가입자와는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1~25등급의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unimodal 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는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등급인 1~15등급과 상위등급인 31~45등급의 지역가입자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중위등급인 16~30등급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동기간의 사업장가입자의 소득변화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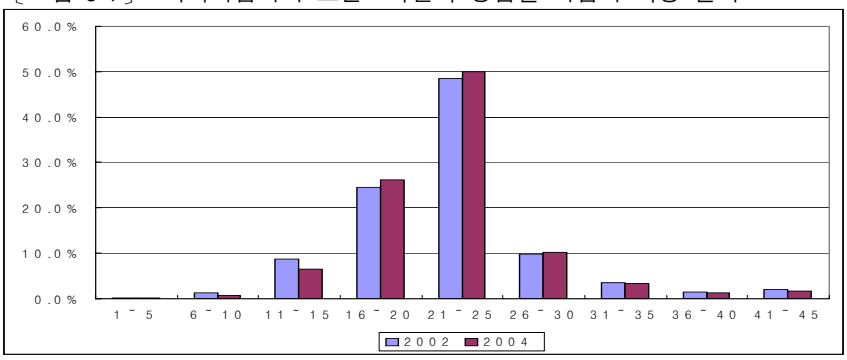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터넷자료, 2005.

이번에는 2001년에서 2004년까지의 소득분위별 가입자 추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정규직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연금가입규모 및 전체적인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임시·일용직에 대한 연금가입 범위가 확대된 2003년 이후에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분위별 분포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대부분이 3분위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분위 이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수준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수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청장년층에서의 소득격차가 향후 노후 연금수급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3-17〉 연도별 소득분위별 국민연금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1			2002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분위	241 (81.3)	55 (18.7)	296 (100.0)	250 (81.0)	59 (19.0)	309 (100.0)
2분위	815 (89.4)	96 (10.6)	911 (100.0)	1,003 (90.3)	108 (9.7)	1,111 (100.0)
3분위	1,096 (93.1)	82 (6.9)	1,177 (100.0)	1,285 (92.8)	100 (7.2)	1,386 (100.0)
4분위	2,030 (94.7)	113 (5.3)	2,143 (100.0)	1,761 (94.9)	95 (5.1)	1,856 (100.0)
5분위	2,457 (96.7)	84 (3.3)	2,541 (100.0)	2,654 (97.2)	77 (2.8)	2,731 (100.0)
전체	6,638 (93.9)	430 (6.1)	7,068 (100.0)	6,953 (94.1)	439 (5.9)	7,392 (100.0)
구분	2003			2004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분위	236 (79.9)	59 (20.1)	295 (100.0)	400 (80.2)	99 (19.8)	499 (100.0)
2분위	916 (89.9)	103 (10.1)	1,018 (100.0)	1,145 (89.0)	142 (11.0)	1,287 (100.0)
3분위	1,721 (93.2)	125 (6.8)	1,846 (100.0)	1,267 (92.6)	101 (7.4)	1,368 (100.0)
4분위	1,787 (97.1)	52 (2.9)	1,839 (100.0)	2,593 (95.4)	124 (4.6)	2,717 (100.0)
5분위	3,114 (98.4)	50 (1.6)	3,164 (100.0)	2,756 (98.0)	55 (2.0)	2,811 (100.0)
전체	7,773 (95.2)	390 (4.8)	8,163 (100.0)	8,161 (94.0)	521 (6.0)	8,683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소득양극화에 따른 임금근로자전체의 연금가입자비율은 2001년 52.2%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5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의 가입자 비율은 2001년 11.2%에서 2004년 17.9%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소득층인 5분위의 가입자비율인 2001년 88.2%에서 2004년 94.4%와 비교하여보면 증가폭은 5분위의 4.3% 포인트 보다 높은 4.6% 포인트 증가했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5분위의 19.0%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규직의 경우는 2004년 1분위의 가입자 비율이 5분위의 28.3%이나, 비정규직은 16.8%로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가입자비율은 2001년 4.9%에서 2004년

7.5%로 한자리수에 지나지 않고, 5분위라 하더라도 2004년 44.7%로 정규직의 동년도 5분위 가입자비율 96.5%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 비정규직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 연도별 소득분위별 전체근로자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연금가입자			연금가입자			연금가입자	
2001	1분위	1,500	241	(16.1)	1,133	55	(4.9)	2,633	296	(11.2)
	2분위	2,183	815	(37.3)	371	96	(25.9)	2,554	911	(35.7)
	3분위	1,991	1,096	(55.0)	319	82	(25.7)	2,310	1,178	(51.0)
	4분위	2,856	2,030	(71.1)	306	113	(36.9)	3,162	2,143	(67.8)
	5분위	2,721	2,457	(90.3)	159	84	(52.8)	2,880	2,541	(88.2)
	전체	11,251	6,639	(59.0)	2,288	430	(18.8)	13,539	7,069	(52.2)
2002	1분위	1,396	250	(17.9)	1,048	59	(5.6)	2,444	309	(12.6)
	2분위	2,577	1,003	(38.9)	435	108	(24.8)	3,012	1,111	(36.9)
	3분위	2,355	1,285	(54.6)	379	100	(26.4)	2,734	1,385	(50.7)
	4분위	2,436	1,761	(72.3)	270	95	(35.2)	2,706	1,856	(68.6)
	5분위	2,959	2,654	(89.7)	175	77	(44.0)	3,134	2,731	(87.1)
	전체	11,723	6,953	(59.3)	2,307	439	(19.0)	14,030	7,392	(52.7)
2003	1분위	1,141	236	(20.7)	1,070	59	(5.5)	2,211	295	(13.3)
	2분위	2,084	916	(44.0)	458	103	(22.5)	2,542	1,019	(40.1)
	3분위	2,909	1,721	(59.2)	446	125	(28.0)	3,355	1,846	(55.0)
	4분위	2,330	1,787	(76.7)	221	52	(23.5)	2,551	1,839	(72.1)
	5분위	3,359	3,114	(92.7)	130	50	(38.5)	3,489	3,164	(90.7)
	전체	11,823	7,774	(65.8)	2,325	389	(16.7)	14,148	8,163	(57.7)
2004	1분위	1,464	400	(27.3)	1,318	99	(7.5)	2,782	499	(17.9)
	2분위	2,435	1,145	(47.0)	559	142	(25.4)	2,994	1,287	(43.0)
	3분위	1,879	1,267	(67.4)	273	101	(37.0)	2,152	1,368	(63.6)
	4분위	3,277	2,593	(79.1)	400	124	(31.0)	3,677	2,717	(73.9)
	5분위	2,855	2,756	(96.5)	123	55	(44.7)	2,978	2,811	(94.4)
	전체	11,910	8,161	(68.5)	2,673	521	(19.5)	14,583	8,682	(59.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은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소득분위별 변화상태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무기계약 및 유기계약 근

로자의 경우 3분위 이상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 용역근로의 경우는 주로 하위분위에 독립도급근로 및 재택근로의 경우에는 다소 상위분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금가입자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분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연금가입자가 증가하더라도 정규직근로자는 3분위 이상에, 비정규직근로자는 주로 3분위 이하에 분포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금가입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 내에서는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유기계약근로자의 증가도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19〉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용형태별 소득분위별 분포(2001년, 전체)

(단위: 천명)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분위	296	213	28	0	4	38	9	0	4
2분위	911	749	66	0	14	57	19	2	4
3분위	1,177	1,014	81	0	15	22	41	3	1
4분위	2,143	1,939	91	0	21	20	66	6	0
5분위	2,541	2,371	86	0	14	9	47	14	1
전체	7,068	6,286	352	0	67	146	182	25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20〉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용형태별 소득분위별 분포(2002년, 전체)

(단위: 천명)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분위	309	224	26	0	1	42	5	3	7
2분위	1,111	922	81	0	9	61	27	7	4
3분위	1,386	1,196	89	0	20	31	45	4	0
4분위	1,856	1,670	90	0	11	21	61	2	0
5분위	2,731	2,523	131	0	8	10	47	9	3
전체	7,392	6,535	418	0	50	165	185	24	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21〉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용형태별 소득분위별 분포(2003년, 전체)

(단위: 천명)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분위	295	176	59	0	2	43	5	0	9
2분위	1,018	753	163	0	15	69	17	1	1
3분위	1,846	1,473	247	1	23	60	37	2	3
4분위	1,839	1,622	165	0	8	14	29	2	0
5분위	3,164	2,926	188	0	4	6	37	3	0
전체	8,163	6,950	823	1	51	191	125	8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22〉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용형태별 소득분위별 분포(2004년, 전체)

(단위: 천명)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 근로	시간제 근로
1분위	499	280	120	1	9	64	10	1	14
2분위	1,287	923	222	0	21	77	36	6	2
3분위	1,368	1,061	205	1	17	47	31	5	0
4분위	2,717	2,307	286	1	16	28	63	10	4
5분위	2,811	2,550	206	0	10	5	40	1	0
전체	8,683	7,122	1,039	3	73	221	179	23	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도별 고용형태별 산업별 소득분위별 분포는 다음 표에 보여지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조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위별 분포에 있어서는 제조업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분포가 작아지는 반면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분포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기타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등급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및 사업서

비스분야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상위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주로 하위등급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포는 앞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정규직은 상위분위에 비정규직은 하위등급에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23〉 국민연금 가입자의 산업별 소득분위별 고용형태별 분포(2001년)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정규근로자	3.6	12.3	16.5	30.6	37.0	100.0
농림어업	0.0	0.0	14.3	42.9	42.9	100.0
제조업(광업 포함)	5.9	16.3	17.6	30.7	29.6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0.0	4.4	11.1	28.9	55.6	100.0
건설업	1.7	7.6	11.6	37.5	41.6	100.0
도매 및 소매업	2.8	16.9	22.0	33.0	25.2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3	17.5	33.8	23.8	23.8	100.0
운수업	1.4	9.3	18.3	40.9	30.2	100.0
통신업	0.7	6.5	20.3	24.8	47.7	100.0
금융 및 보험업	1.0	8.9	13.8	25.7	50.6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10.3	26.8	20.6	23.7	18.6	100.0
사업서비스업	4.4	9.5	16.2	31.5	38.4	100.0
기타서비스업	2.3	8.6	13.2	27.3	48.6	100.0
비정규근로자	13.1	22.4	18.9	26.2	19.4	100.0
농림어업	0.0	0.0	100.0	0.0	0.0	100.0
제조업(광업 포함)	11.1	16.7	11.1	19.4	41.7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0.0	0.0	33.3	0.0	66.7	100.0
건설업	7.1	14.3	14.3	35.7	28.6	100.0
도매 및 소매업	5.7	21.4	20.0	30.0	22.9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20.0	40.0	0.0	20.0	20.0	100.0
운수업	3.3	3.3	32.8	49.2	11.5	100.0
통신업	0.0	0.0	14.3	57.1	28.6	100.0
금융 및 보험업	3.3	10.0	23.3	40.0	23.3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18.2	36.4	27.3	18.2	0.0	100.0
사업서비스업	27.1	41.4	3.8	16.5	11.3	100.0
기타서비스업	12.2	17.1	17.1	19.5	34.1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24〉 국민연금 가입자의 산업별 소득분위별 고용형태별 분포(2002년)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정규근로자	3.6	14.4	18.5	25.3	38.2	100.0
농림어업	0.0	27.3	18.2	45.5	9.1	100.0
제조업(광업 포함)	5.8	18.9	20.6	24.4	30.2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0.0	10.4	8.3	22.9	58.3	100.0
건설업	0.8	7.0	16.1	31.8	44.3	100.0
도매 및 소매업	3.1	19.5	22.8	24.8	29.8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3.8	25.0	31.7	21.2	18.3	100.0
운수업	1.2	9.7	21.9	36.6	30.6	100.0
통신업	1.3	5.3	15.3	28.0	50.0	100.0
금융 및 보험업	0.7	9.3	18.0	18.5	53.4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11.5	27.9	24.0	18.3	18.3	100.0
사업서비스업	2.2	11.0	17.9	26.0	43.0	100.0
기타서비스업	3.0	11.5	13.6	24.0	47.8	100.0
비정규근로자	13.7	24.2	23.1	21.7	17.4	100.0
농림어업	0.0	100.0	0.0	0.0	0.0	100.0
제조업(광업 포함)	12.1	24.2	12.1	30.3	21.2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0.0	0.0	0.0	100.0	0.0	100.0
건설업	0.0	0.0	26.7	40.0	33.3	100.0
도매 및 소매업	7.4	13.2	35.3	23.5	20.6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16.7	16.7	33.3	16.7	16.7	100.0
운수업	2.2	13.0	30.4	34.8	19.6	100.0
통신업	0.0	0.0	50.0	0.0	50.0	100.0
금융 및 보험업	5.0	25.0	27.5	22.5	20.0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33.3	33.3	16.7	16.7	0.0	100.0
사업서비스업	22.4	34.5	19.5	14.9	8.6	100.0
기타서비스업	13.0	19.6	13.0	19.6	34.8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25〉 국민연금 가입자의 산업별 소득분위별 고용형태별 분포(2003년)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정규근로자	3.0	11.8	22.1	23.0	40.1	100.0
농림어업	0.0	12.5	18.8	37.5	31.3	100.0
제조업(광업 포함)	5.0	15.7	25.2	23.9	30.2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1.4	4.2	8.3	19.4	66.7	100.0
건설업	1.3	8.0	19.3	28.6	42.8	100.0
도매 및 소매업	2.3	14.9	31.4	23.3	28.2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7.8	17.6	19.6	34.3	20.6	100.0
운수업	1.5	9.1	26.7	30.4	32.2	100.0
통신업	1.8	7.9	13.4	17.7	59.1	100.0
금융 및 보험업	0.6	6.6	20.1	18.8	53.8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8.2	20.5	25.4	17.2	28.7	100.0
사업서비스업	1.4	8.1	23.4	24.6	42.5	100.0
기타서비스업	2.3	9.4	16.2	19.7	52.4	100.0
비정규근로자	15.5	26.3	32.5	13.1	12.6	100.0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제조업(광업 포함)	8.3	11.1	25.0	22.2	33.3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0	0.0	28.6	28.6	42.9	100.0
도매 및 소매업	4.7	20.9	25.6	23.3	25.6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33.3	33.3	33.3	0.0	0.0	100.0
운수업	7.4	18.5	44.4	25.9	3.7	100.0
통신업	66.7	0.0	33.3	0.0	0.0	100.0
금융 및 보험업	4.5	9.1	40.9	13.6	31.8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33.3	33.3	0.0	16.7	16.7	100.0
사업서비스업	19.4	34.7	31.9	8.8	5.1	100.0
기타서비스업	20.0	16.0	48.0	4.0	12.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26〉 국민연금 가입자의 산업별 소득분위별 고용형태별 분포(2004년)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정규근로자	4.9	14.0	15.5	31.8	33.8	100.0
농림어업	15.0	10.0	20.0	35.0	20.0	100.0
제조업(광업 포함)	6.6	17.2	18.4	32.5	25.3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3.2	4.8	3.2	27.4	61.3	100.0
건설업	1.2	10.9	16.5	34.9	36.5	100.0
도매 및 소매업	4.5	19.2	21.9	35.6	18.8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6.6	27.3	17.4	33.9	14.9	100.0
운수업	3.1	14.2	19.3	36.3	27.1	100.0
통신업	1.9	4.9	12.3	29.6	51.2	100.0
금융 및 보험업	1.3	7.2	12.2	29.5	49.9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10.7	25.6	18.2	26.4	19.0	100.0
사업서비스업	2.7	12.1	13.3	38.6	33.3	100.0
기타서비스업	5.4	10.7	10.7	26.9	46.4	100.0
비정규근로자	19.1	27.2	19.3	23.7	10.6	100.0
농림어업	0.0	0.0	0.0	0.0	0.0	0.0
제조업(광업 포함)	4.1	28.6	12.2	32.7	22.4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33.3	0.0	66.7	0.0	0.0	100.0
건설업	6.7	0.0	13.3	46.7	33.3	100.0
도매 및 소매업	13.8	22.4	20.7	27.6	15.5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42.9	14.3	0.0	42.9	0.0	100.0
운수업	10.5	28.9	28.9	28.9	2.6	100.0
통신업	33.3	16.7	0.0	33.3	16.7	100.0
금융 및 보험업	8.3	16.7	12.5	41.7	20.8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30.0	10.0	10.0	30.0	20.0	100.0
사업서비스업	25.5	33.6	19.7	15.8	5.4	100.0
기타서비스업	14.3	18.4	24.5	28.6	14.3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조기퇴직 경향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실태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결과 나타나는 조기퇴직의 경향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연금 원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과 2000년 당시 45～50세 연령대의 사업장가입자 중 자격변동이 발생한 자의 2003년과 2004년 각각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중 2003년 자료는 원종욱(2003)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며, 이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2004년의 변화를 추가하였다.

먼저 1998년의 사업장 탈퇴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3년에는 172,528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161,104명으로 감소하였다. 동일한 연령대임에도 실제 자료가 줄어드는 까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의 전산처리 및 일부 사업장 탈퇴자가 탈퇴 당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다시 반환일시금을 갚을 경우 이는 1998년 탈퇴자에서 제외됨으로 2003년과 2004년에 약 만천여명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1998년 사업장탈퇴 후 다시 사업장으로 가입한 사람의 수는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2000년 사업장 탈퇴자의 2003년과 2004년의 비교에서는 사업장가입자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지만, 역시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납부자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1998년과 2000년의 45세 연령대의 사람들이 2003년과 2004년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업장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조기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45세에 비해 연령대가 다소 높은 50대에서의 지역가입자 비중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27〉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및 2004년 가입유형(전체)

(단위: 명, %)

퇴사당시 연령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미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납부예외	합 계	납부자	납부예외		
2003	45세	12,422 (40.3)	12,339 (99.3)	83 (0.7)	11,057 (35.9)	6,577 (59.7)	4,480 (40.5)	7,352 (23.8)	30,831 (100.0)
	46세	13,643 (39.7)	13,552 (99.3)	91 (0.7)	12,330 (35.9)	7,393 (60.0)	4,937 (40.0)	8,386 (24.4)	34,359 (100.0)
	47세	10,007 (39.8)	9,956 (99.5)	51 (0.5)	8,983 (35.7)	5,326 (59.3)	3,657 (40.7)	6,143 (24.4)	25,133 (100.0)
	48세	10,791 (39.6)	10,737 (99.5)	54 (0.5)	9,922 (36.4)	6,012 (60.6)	3,910 (39.4)	6,523 (23.9)	27,236 (100.0)
	49세	10,577 (38.7)	10,527 (99.5)	50 (0.5)	10,280 (37.6)	6,167 (60.0)	4,113 (40.0)	6,484 (23.7)	27,341 (100.0)
	50세	10,282 (37.2)	10,224 (99.4)	58 (0.6)	10,559 (38.2)	6,352 (60.2)	4,207 (39.8)	6,787 (24.6)	27,628 (100.0)
	전체	67,722 (39.3)	67,335 (99.4)	387 (0.6)	63,131 (36.6)	37,817 (59.9)	25,304 (40.1)	41,675 (24.2)	172,528 (100.0)
2004	45세	12,024 (41.6)	11,965 (99.5)	59 (0.5)	9,725 (33.6)	5,141 (52.9)	4,584 (47.1)	7,161 (24.8)	28,910 (100.0)
	46세	13,252 (41.2)	13,176 (99.4)	76 (0.6)	10,713 (33.3)	5,677 (53.0)	5,036 (47.0)	8,162 (25.4)	32,127 (100.0)
	47세	9,586 (40.8)	9,542 (99.5)	44 (0.5)	7,992 (34.0)	4,182 (52.3)	3,810 (47.7)	5,930 (25.2)	23,508 (100.0)
	48세	10,226 (40.2)	10,181 (99.6)	45 (0.4)	8,933 (35.1)	4,818 (53.9)	4,115 (46.1)	6,264 (24.6)	25,423 (100.0)
	49세	9,837 (38.7)	9,799 (99.6)	38 (0.4)	8,906 (35.1)	4,856 (54.5)	4,050 (45.5)	6,644 (26.2)	25,387 (100.0)
	50세	9,583 (37.3)	9,539 (99.5)	44 (0.5)	9,150 (35.6)	5,269 (57.6)	3,881 (42.4)	6,963 (27.1)	25,696 (100.0)
	전체	64,508 (40.0)	64,202 (99.5)	306 (0.5)	55,419 (34.4)	29,943 (57.6)	25,476 (42.4)	41,124 (25.6)	161,051 (100.0)

자료: 원종욱·백화종·김태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 2003-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표 3-28〉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및 2004년 가입유형(전체)

(단위: 명, %)

퇴사당시연령 구분		사업장			지역			미가입 (미납부자)	합 계
		합 계	납부자	납부예외	합 계	납부자	납부예외		
2003	45세	14,978 (46.8)	14,894 (99.4)	84 (0.6)	9,693 (30.3)	5,421 (55.9)	4,272 (44.1)	7,355 (23.0)	32,026 (100.0)
	46세	12,521 (46.4)	12,444 (99.4)	77 (0.6)	8,481 (31.4)	4,720 (55.7)	3,761 (44.3)	5,993 (22.2)	26,995 (100.0)
	47세	10,923 (46.9)	10,864 (99.5)	59 (0.5)	7,153 (30.7)	3,938 (55.1)	3,215 (44.9)	5,228 (22.4)	23,304 (100.0)
	48세	11,650 (45.8)	11,591 (99.5)	59 (0.5)	7,965 (31.3)	4,397 (55.2)	3,568 (44.8)	5,841 (22.9)	25,456 (100.0)
	49세	8,505 (45.8)	8,466 (99.5)	39 (0.5)	5,832 (31.4)	3,252 (55.8)	2,580 (44.2)	4,216 (22.7)	18,553 (100.0)
	50세	9,228 (45.6)	9,171 (99.4)	57 (0.6)	6,503 (32.1)	3,602 (55.4)	2,901 (44.6)	4,505 (22.3)	20,236 (100.0)
	전체	67,805 (46.3)	67,430 (99.4)	375 (0.6)	45,627 (31.1)	25,330 (55.5)	20,297 (44.5)	33,138 (22.6)	146,570 (100.0)
2004	45세	14,370 (46.9)	14,310 (99.6)	60 (0.4)	8,977 (29.3)	4,434 (49.4)	4,543 (50.6)	7,272 (23.7)	30,619 (100.0)
	46세	12,033 (46.9)	11,982 (99.6)	51 (0.4)	7,688 (29.9)	3,825 (49.8)	3,863 (50.2)	5,941 (23.1)	25,662 (100.0)
	47세	10,273 (46.3)	10,224 (99.5)	49 (0.5)	6,693 (30.1)	3,301 (49.3)	3,392 (50.7)	5,231 (23.6)	22,197 (100.0)
	48세	11,089 (45.8)	11,043 (99.6)	46 (0.4)	7,408 (30.6)	3,741 (50.5)	3,667 (49.5)	5,733 (23.7)	24,230 (100.0)
	49세	8,048 (45.4)	8,020 (99.7)	28 (0.3)	5,533 (31.2)	2,761 (49.9)	2,772 (50.1)	4,125 (23.3)	17,706 (100.0)
	50세	8,704 (45.3)	8,674 (99.7)	30 (0.3)	6,180 (32.2)	3,054 (49.4)	3,126 (50.6)	4,309 (22.4)	19,193 (100.0)
	전체	64,517 (46.2)	64,253 (99.6)	264 (0.4)	42,479 (30.4)	21,116 (49.7)	21,363 (50.3)	32,611 (23.4)	139,607 (100.0)

자료: 원종욱·백화종·김태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 2003-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다음은 1998년 및 2000년 사업장가입자의 등급변동 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1998년 사업장 탈퇴자 중 2003년과 2004년에 사업장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변하면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연령대별로는 45세에 비해 50세의 연령대의 등급이 상승한 경우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사업장탈퇴자는 1998년 사업장 탈퇴자에 비해 다소 높은 65% 이상이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등급이 하락한 경우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1998년 탈퇴자는 2003년과 2004년 공히 30～40%의 사람들이 사업장자격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탈퇴자는 약 20%대의 등급하락을 보이고 있다. 또한 등급이 변하지 않은 경우도 1998년 탈퇴자는 10% 대인 반면에 2000년 탈퇴자는 2003년에는 13%대 20004년에는 11%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이 변동된 경우 1998년 탈퇴자는 85% 이상이 2000년 탈퇴자는 80% 이상이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등급이 하락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급이 상승한 경우는 1998년 탈퇴자의 경우 2003년 약 11%대, 2004년은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탈퇴자의 경우에는 2003년에는 13～14%대, 2004년에는 15～16%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1998년 사업장탈퇴자에 비해 2000년 사업장탈퇴자들이 사업장 자격을 유지하거나 지역으로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등급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1998년 퇴사자의 2003년 및 2004년 등급변동(전체)

(단위: 명, %)

연 령		구 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2003	45세	사업장	7,086 (57.0)	3,959 (31.9)	1,377 (11.1)	12,422 (100.0)
		지역	2,406 (13.1)	15,669 (85.1)	334 (1.8)	18,409 (100.0)
	46세	사업장	7,551 (55.3)	4,553 (33.4)	1,539 (11.3)	13,643 (100.0)
		지역	2,337 (11.3)	18,068 (87.2)	311 (1.5)	20,716 (100.0)
	47세	사업장	5,437 (54.3)	3,479 (34.8)	1,091 (10.9)	10,007 (100.0)
		지역	1,704 (11.3)	13,201 (87.3)	221 (1.5)	15,126 (100.0)
	48세	사업장	5,689 (52.7)	3,927 (36.4)	1,175 (10.9)	10,791 (100.0)
		지역	1,876 (11.4)	14,316 (87.1)	253 (1.5)	16,445 (100.0)
	49세	사업장	5,320 (50.3)	4,114 (38.9)	1,143 (10.8)	10,577 (100.0)
		지역	1,856 (11.1)	14,595 (87.1)	313 (1.9)	16,764 (100.0)
	50세	사업장	5,082 (49.4)	4,123 (40.1)	1,077 (10.5)	10,282 (100.0)
		지역	1,968 (11.3)	15,090 (87.0)	288 (1.7)	17,346 (100.0)
	전체	사업장	36,165 (53.4)	24,155 (35.7)	7,402 (10.9)	67,722 (100.0)
		지역	12,147 (11.6)	90,939 (86.8)	1,720 (1.6)	104,806 (100.0)
2004	45세	사업장	7,098 (59.0)	3,678 (30.6)	1,248 (10.4)	12,024 (100.0)
		지역	2,125 (12.6)	14,520 (86.0)	241 (1.4)	16,886 (100.0)
	46세	사업장	7,604 (57.4)	4,260 (32.1)	1,388 (10.5)	13,252 (100.0)
		지역	2,355 (12.5)	16,239 (86.0)	281 (1.5)	18,875 (100.0)
	47세	사업장	5,410 (56.4)	3,203 (33.4)	973 (10.1)	9,586 (100.0)
		지역	1,712 (12.3)	12,009 (86.2)	201 (1.4)	13,922 (100.0)
	48세	사업장	5,630 (55.0)	3,626 (35.5)	970 (9.5)	10,226 (100.0)
		지역	1,953 (12.8)	13,007 (85.6)	237 (1.6)	15,197 (100.0)
	49세	사업장	5,144 (52.3)	3,755 (38.2)	938 (9.5)	9,837 (100.0)
		지역	1,925 (12.4)	13,343 (85.8)	282 (1.8)	15,550 (100.0)
	50세	사업장	4,836 (50.5)	3,897 (40.6)	850 (8.9)	9,583 (100.0)
		지역	2,181 (13.5)	13,651 (84.7)	281 (1.7)	16,113 (100.0)
	전체	사업장	35,722 (55.4)	22,419 (34.7)	6,367 (9.9)	64,508 (100.0)
		지역	12,251 (12.7)	82,769 (85.7)	1,523 (1.6)	96,543 (100.0)

주: 지역가입항목에서 등급하락 수치는 미가입자 및 가입상태가 취득 이외인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

자료: 원종욱·백화종·김태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 2003-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표 3-30〉 2000년 퇴사자의 2003년 및 2004년 등급변동(전체)

(단위: 명, %)

연 령		구 분	등급상승	등급하락	등급유지	계
2003	45세	사업장	10,048 (67.1)	2,892 (19.3)	2,038 (13.6)	14,978 (100.0)
		지역	2,309 (13.5)	14,374 (84.3)	365 (2.1)	17,048 (100.0)
	46세	사업장	8,394 (67.0)	2,469 (19.7)	1,658 (13.2)	12,521 (100.0)
		지역	2,010 (13.9)	12,139 (83.9)	325 (2.2)	14,474 (100.0)
	47세	사업장	7,170 (65.6)	2,239 (20.5)	1,514 (13.9)	10,923 (100.0)
		지역	1,646 (13.3)	10,442 (84.3)	293 (2.4)	12,381 (100.0)
	48세	사업장	7,684 (66.0)	2,418 (20.8)	1,548 (13.3)	11,650 (100.0)
		지역	1,881 (13.6)	11,592 (84.0)	333 (2.4)	13,806 (100.0)
	49세	사업장	5,648 (66.4)	1,736 (20.4)	1,121 (13.2)	8,505 (100.0)
		지역	1,405 (14.0)	8,363 (83.2)	280 (2.8)	10,048 (100.0)
	50세	사업장	6,039 (65.4)	2,033 (22.0)	1,156 (12.5)	9,228 (100.0)
		지역	1,596 (14.5)	9,136 (83.0)	276 (2.5)	11,008 (100.0)
	전체	사업장	44,983 (66.3)	13,787 (20.3)	9,035 (13.3)	67,805 (100.0)
		지역	10,847 (13.8)	66,046 (83.9)	1,872 (2.4)	78,765 (100.0)
2004	45세	사업장	10,007 (69.6)	2,644 (18.4)	1,719 (12.0)	14,370 (100.0)
		지역	2,468 (15.2)	13,432 (82.7)	349 (2.1)	16,249 (100.0)
	46세	사업장	8,267 (68.7)	2,315 (19.2)	1,451 (12.0)	12,033 (100.0)
		지역	2,083 (15.3)	11,239 (82.5)	307 (2.2)	13,629 (100.0)
	47세	사업장	6,941 (67.6)	2,012 (19.6)	1,320 (12.8)	10,273 (100.0)
		지역	1,860 (15.6)	9,825 (82.4)	239 (2.0)	11,924 (100.0)
	48세	사업장	7,558 (68.1)	2,195 (19.8)	1,336 (12.0)	11,089 (100.0)
		지역	2,033 (15.5)	10,787 (82.1)	321 (2.4)	13,141 (100.0)
	49세	사업장	5,497 (68.3)	1,628 (20.2)	923 (11.5)	8,048 (100.0)
		지역	1,590 (16.5)	7,822 (81.0)	246 (2.5)	9,658 (100.0)
	50세	사업장	5,908 (67.9)	1,797 (20.6)	999 (11.5)	8,704 (100.0)
		지역	1,769 (16.9)	8,474 (80.8)	246 (2.3)	10,489 (100.0)
	전체	사업장	44,178 (68.5)	12,591 (19.5)	7,748 (12.0)	64,517 (100.0)
		지역	11,803 (15.7)	61,579 (82.0)	1,708 (2.3)	75,090 (100.0)

주: 지역가입항목에서 등급하락 수치는 미가입자 및 가입상태가 취득 이외인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

자료: 원종욱·백화종·김태완,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 2003-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제3절 국민연금가입자 자격변동에 따른 실태변화

본 절에서는 2000～2004년 사이 국민연금의 신규가입자 및 탈퇴자[주12)]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 분석을 통해서는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연금가입자 및 탈퇴자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연도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금의 가입자는 2000년 787천여명에서 2004년에는 960천명으로 약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었음에도 연금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0년에는 약 447천명 이었으나 2004년에는 615천명으로 37.6%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에는 65.86%에서 2004년에는 52.99%로 여성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31〉 연도별 성별 사업장 및 지역의 신규가입자 추이

(단위: 명, %)

	사업장			지역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2000	446,982 (100.0)	152,618 (34.14)	294,364 (65.86)	340,305 (100.0)	60,043 (17.64)	280,262 (82.36)
2001	445,634 (100.0)	168,889 (37.90)	276,745 (62.10)	167,031 (100.0)	14,472 (8.66)	152,559 (91.34)
2002	542,067 (100.0)	234,098 (43.19)	307,969 (56.81)	235,267 (100.0)	18,273 (7.77)	216,994 (92.23)
2003	625,752 (100.0)	274,336 (43.84)	351,416 (56.16)	345,577 (100.0)	95,159 (27.54)	250,418 (72.46)
2004	615,170 (100.0)	289,202 (47.01)	325,968 (52.99)	345,009 (100.0)	121,965 (35.35)	223,044 (64.65)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주12) 엄밀한 의미에서 강제적용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서의 '탈퇴'는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기존 가입자 중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등을 포괄하는 자격변동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함.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 340천명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167천명, 235천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346천명, 345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와 같이 여성의 가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즉 2000년과 2001년에는 82%와 91%까지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4년에는 64.65%로 지역가입자로 남성의 가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규가입자에 비해 탈퇴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장이나 지역이나 모두 규모가 큼을 볼 수 있다. 먼저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2000년 2,376천명에서 2004년에는 3,402천명으로 약 4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장 및 지역 모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사업장의 경우에는 72.2%,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3.2%로 사업장 가입자의 탈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나타난 경기침체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 탈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2〉 연도별 성별 사업장 및 지역의 탈퇴자 추이

(단위: 명, %)

	사업장			지역		
	합 계	남	여	합 계	남	여
2000	968,605 (100.0)	649,840 (67.09)	318,765 (32.91)	1,407,721 (100.0)	900,335 (63.96)	507,386 (36.04)
2001	1,379,209 (100.0)	839,422 (60.86)	539,787 (39.14)	1,410,452 (100.0)	894,132 (63.39)	516,320 (36.61)
2002	1,491,612 (100.0)	899,715 (60.32)	591,897 (39.68)	1,392,946 (100.0)	886,300 (63.63)	506,646 (36.37)
2003	1,559,301 (100.0)	906,063 (58.11)	653,238 (41.89)	1,393,978 (100.0)	853,615 (61.24)	540,363 (38.76)
2004	1,667,804 (100.0)	943,125 (56.55)	724,679 (43.45)	1,733,921 (100.0)	1,087,985 (62.75)	645,936 (37.25)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성별 분석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경우 남성 및 여성 공히 탈퇴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서는 절대적으로 남성의 탈퇴자가 여성의 탈퇴자에 비해 높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연령별로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가입자 및 탈퇴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업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신규가입자의 대부분은 29세 이하로 2000년 81.5%에서 2004년에는 85.7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364천명에서 2004년 527천명으로 4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 한 것은 50세 이상에서도 적지만 신규가입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33〉 연도별 연령별 사업장 및 지역의 신규가입자 추이

(단위: 명, %)

	연령(사업장)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합계
2000	364,228 (81.49)	38,589 (8.63)	34,106 (7.63)	10,059 (2.25)	446,982 (100.0)
2001	363,213 (81.50)	38,297 (8.59)	34,342 (7.71)	9,782 (2.20)	445,634 (100.0)
2002	457,651 (84.43)	42,268 (7.80)	33,478 (6.18)	8,670 (1.60)	542,067 (100.0)
2003	530,461 (84.77)	47,969 (7.67)	37,732 (6.03)	9,590 (1.53)	625,752 (100.0)
2004	527,495 (85.75)	45,463 (7.39)	34,434 (5.60)	7,778 (1.26)	615,170 (100.0)
	연령(지역)				
2000	65,055 (19.12)	93,739 (27.55)	101,758 (29.90)	79,753 (23.44)	340,305 (100.0)
2001	14,207 (8.51)	51,628 (30.91)	57,552 (34.46)	43,644 (26.13)	167,031 (100.0)
2002	29,732 (12.64)	72,779 (30.93)	76,679 (32.59)	56,077 (23.84)	235,267 (100.0)
2003	152,052 (44.00)	74,473 (21.55)	78,700 (22.77)	40,352 (11.68)	345,577 (100.0)
2004	165,230 (47.89)	67,045 (19.43)	80,018 (23.19)	32,716 (9.48)	345,009 (10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년에는 30세 이상에서의 가입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3년 이후에는 29세 이하의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5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3년 이후 지역가입자중 20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첫째, 2000년 말 지역가입자 적용대상을 23세에서 27세로 상향조정된 점과 둘째, 강한 가정으로 볼 경우 2000년 이후 나타나는 경기침체, 청년실업의 증가로 청년층의 구직포기 및 자영업자로의 구직이동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탈퇴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공히 29세 이하에서의 탈퇴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4〉 연도별 연령별 사업장 및 지역의 탈퇴자 추이

(단위: 명, %)

	연령(사업장)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합계
2000	323,444 (33.39)	324,237 (33.47)	183,134 (18.91)	137,790 (14.23)	968,605 (100.0)
2001	691,216 (50.12)	347,040 (25.16)	199,992 (14.50)	140,961 (10.22)	1,379,209 (100.0)
2002	780,978 (52.36)	360,875 (24.19)	204,434 (13.71)	145,325 (9.74)	1,491,612 (100.0)
2003	835,400 (53.58)	360,199 (23.10)	221,479 (14.20)	142,223 (9.12)	1,559,301 (100.0)
2004	931,181 (55.83)	364,550 (21.86)	229,301 (13.75)	142,772 (8.56)	1,667,804 (100.0)
	연령(지역)				
2000	941,719 (66.90)	183,780 (13.06)	111,080 (7.89)	171,142 (12.16)	1,407,721 (100.0)
2001	375,721 (26.64)	402,078 (28.51)	289,028 (20.49)	343,625 (24.36)	1,410,452 (100.0)
2002	462,476 (33.20)	357,525 (25.67)	243,501 (17.48)	329,444 (23.65)	1,392,946 (100.0)
2003	534,544 (38.35)	355,714 (25.52)	242,832 (17.42)	260,888 (18.72)	1,393,978 (100.0)
2004	674,714 (38.91)	440,272 (25.39)	309,735 (17.86)	309,200 (17.83)	1,733,921 (10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사업장가입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서의 노동시장 변화가 매우 크고 또한 직업적인 안정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등급별로 신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6～20등급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2000년 54.3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39.4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1～15등급에서도 나타나는데 2000년 24.87%에서 2004년에는 5.23%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21～25등급의 신규가입자는 2000년 초기에는 14.78%였으나 2004년에는 35.17%까지 증가하였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변화 중 중요한 점은 최하위등급이라 할 수 있는 1～10등급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위등급인 11～20등급의 비중은 감소하고 20등급 이상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분포가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한 최하위등급의 가입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대부분이 1～5등급인 최하위등급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에는 77.59%까지 도달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는 51.70%까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21～25등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신고소득이 정확하지 않은 신규지역가입자의 경우 중위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이 등급의 비중이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급에 관한 분포가 사업장 가입자와 같이 상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업장 및 지역신규가입자들의 등급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경제위기 이후 비록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소득 및 임금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높은 등급에 포함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부담

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에 만들어진 현행 등급의 소득 최상위수준을 좀 더 넓혀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35〉 연도별 등급별 사업장 및 지역의 신규가입자 추이

(단위: 명, %)

	등급(사업장)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합계
2000	117 (0.03)	2,890 (0.65)	111,149 (24.87)	242,955 (54.35)	66,069 (14.78)	17,110 (3.83)	3,919 (0.88)	1,215 (0.27)	1,558 (0.35)	446,982 (100.0)
2001	104 (0.02)	1,076 (0.24)	71,109 (15.96)	237,999 (53.41)	101,256 (22.72)	24,273 (5.45)	6,351 (1.43)	1,641 (0.37)	1,825 (0.41)	445,634 (100.0)
2002	115 (0.02)	988 (0.18)	57,415 (10.59)	255,989 (47.22)	164,959 (30.43)	43,841 (8.09)	13,424 (2.48)	2,766 (0.51)	2,570 (0.47)	542,067 (100.0)
2003	206 (0.03)	3,381 (0.54)	44,978 (7.19)	256,958 (41.06)	215,814 (34.49)	67,734 (10.82)	26,783 (4.28)	6,050 (0.97)	3,848 (0.61)	625,752 (100.0)
2004	484 (0.08)	5,445 (0.89)	32,195 (5.23)	242,959 (39.49)	216,372 (35.17)	75,059 (12.20)	29,431 (4.78)	9,462 (1.54)	3,763 (0.61)	615,170 (100.0)
	등급(지역가입자)									
2000	102,001 (60.61)	590 (0.35)	3,119 (1.85)	14,667 (8.72)	41,078 (24.41)	2,967 (1.76)	1,846 (1.10)	499 (0.30)	1,517 (0.90)	168,284 (100.0)
2001	129,596 (77.59)	104 (0.06)	1,039 (0.62)	9,303 (5.57)	25,760 (15.42)	793 (0.47)	202 (0.12)	96 (0.06)	138 (0.08)	167,031 (100.0)
2002	130,338 (55.40)	167 (0.07)	1,868 (0.79)	17,997 (7.65)	78,484 (33.36)	5,047 (2.15)	790 (0.34)	241 (0.10)	335 (0.14)	235,267 (100.0)
2003	189,013 (54.69)	113 (0.03)	2,428 (0.70)	21,192 (6.13)	118,711 (34.35)	11,688 (3.38)	1,443 (0.42)	510 (0.15)	479 (0.14)	345,577 (100.0)
2004	178,357 (51.70)	308 (0.09)	4,001 (1.16)	47,029 (13.63)	97,648 (28.30)	12,123 (3.51)	3,079 (0.89)	1,164 (0.34)	1,300 (0.38)	345,009 (10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2000~2004년 사이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중 탈퇴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변화현상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점을 수치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공히 2000년 이후 연금에서의 탈퇴규모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

의 경우 2000년에 968천에서 2004년에는 1,667천명으로 7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0년 1,185천명에서 2004년 1,704천명으로 4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사업장 및 지역에서 탈퇴한 3,372천명의 연금탈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파악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탈퇴자들의 탈퇴사유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표 3-36〉 연도별 등급별 사업장 및 지역의 탈퇴자 추이

(단위: 명, %)

	등급(사업장)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합계
2000	1,283 (0.13)	10,381 (1.07)	137,595 (14.21)	301,754 (31.15)	236,821 (24.45)	152,061 (15.70)	67,346 (6.95)	30,346 (3.13)	31,015 (3.20)	968,602 (100.0)
2001	908 (0.07)	5,982 (0.43)	161,778 (11.73)	469,729 (34.06)	347,649 (25.21)	206,945 (15.00)	96,440 (6.99)	43,587 (3.16)	46,188 (3.35)	1,379,206 (100.0)
2002	1,052 (0.07)	4,860 (0.33)	133,790 (8.97)	472,331 (31.67)	412,595 (27.66)	246,982 (16.56)	115,463 (7.74)	51,225 (3.43)	53,311 (3.57)	1,491,609 (100.0)
2003	1,305 (0.08)	6,959 (0.45)	123,666 (7.93)	446,621 (28.64)	442,131 (28.35)	275,284 (17.65)	135,771 (8.71)	60,626 (3.89)	66,936 (4.29)	1,559,299 (100.0)
2004	1,562 (0.09)	9,679 (0.58)	104,568 (6.27)	470,280 (28.20)	482,464 (28.93)	302,773 (18.15)	154,294 (9.25)	71,487 (4.29)	70,691 (4.24)	1,667,798 (100.0)
	등급(지역가입자)									
2000	855,645 (72.21)	24,847 (2.10)	43,425 (3.66)	87,059 (7.35)	139,869 (11.80)	20,770 (1.75)	6,779 (0.57)	1,977 (0.17)	4,539 (0.38)	1,184,910 (100.0)
2001	610,488 (49.00)	37,138 (2.98)	69,347 (5.57)	170,003 (13.64)	276,019 (22.15)	47,765 (3.83)	16,631 (1.33)	5,869 (0.47)	12,739 (1.02)	1,245,999 (100.0)
2002	692,751 (52.45)	30,071 (2.28)	61,733 (4.67)	158,938 (12.03)	286,327 (21.68)	51,825 (3.92)	18,858 (1.43)	6,704 (0.51)	13,699 (1.04)	1,320,906 (100.0)
2003	694,239 (51.21)	17,699 (1.31)	61,988 (4.57)	155,345 (11.46)	323,520 (23.86)	57,339 (4.23)	21,800 (1.61)	8,359 (0.62)	15,496 (1.14)	1,355,785 (100.0)
2004	805,641 (47.27)	11,080 (0.65)	57,451 (3.37)	192,505 (11.30)	424,688 (24.92)	109,116 (6.40)	46,155 (2.71)	20,547 (1.21)	37,148 (2.18)	1,704,331 (10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국민연금 탈퇴 자료와 관련해 또 한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20등급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탈퇴자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20등급 이상에서의 탈퇴자 비중 및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등급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 역시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하위등급에서 탈퇴자 증가는 향후 노령에 도달했을 때 충분한 노후소득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들이 어느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를 보면 산업분류자료의 경우 앞의 자료들에 비해 그 대상인원이 사업장 가입자는 조금, 지역가입자는 크게 감소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가입자들의 산업분류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자료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를 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석되어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실만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항은 탈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신규가입자중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제조업 가입자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가입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점차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조업 분야가 2000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다가 2004년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화는 어느 정도 자료상의 한계로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탈퇴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부문에서 많은 수의 연금탈퇴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분야들은 경기침체와 관련이 깊은 산업으로 2000년 이후 나타난 경기침체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산업이외에 다음으로는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에서의 탈퇴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37〉 연도별 산업별 사업장 및 지역의 신규가입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업장 합계	424,955	(100.0)	419,313	(100.0)	509,966	(100.0)	581,751	(100.0)	558,415	(100.0)
농림어업	721	(0.17)	773	(0.18)	824	(0.16)	971	(0.17)	882	(0.16)
제조업(광업 포함)	182,648	(42.98)	159,334	(38.00)	184,214	(36.12)	184,736	(31.76)	179,354	(32.12)
전기·가스·수도사업	532	(0.13)	457	(0.11)	802	(0.16)	1,738	(0.30)	1,736	(0.31)
건설업	20,194	(4.75)	25,332	(6.04)	34,068	(6.68)	40,448	(6.95)	36,883	(6.60)
도매 및 소매업	43,848	(10.32)	51,492	(12.28)	66,781	(13.10)	83,641	(14.38)	83,579	(14.97)
숙박 및 음식점업	11,065	(2.60)	12,558	(2.99)	15,467	(3.03)	17,926	(3.08)	23,311	(4.17)
운수업	13,363	(3.14)	13,025	(3.11)	15,573	(3.05)	16,170	(2.78)	15,413	(2.76)
통신업	2,366	(0.56)	1,392	(0.33)	1,726	(0.34)	1,699	(0.29)	1,935	(0.35)
금융 및 보험업	12,111	(2.85)	10,727	(2.56)	13,808	(2.71)	12,909	(2.22)	11,625	(2.08)
부동산 및 임대업	9,508	(2.24)	9,087	(2.17)	9,865	(1.93)	10,153	(1.75)	10,553	(1.89)
사업서비스업	80,033	(18.83)	87,118	(20.78)	108,882	(21.35)	119,688	(20.57)	117,962	(21.12)
기타서비스업	48,566	(11.43)	48,018	(11.45)	57,956	(11.36)	91,672	(15.76)	75,182	(13.46)
지역 합계	68,725	(100.0)	37,247	(100.0)	62,904	(100.0)	135,306	(100.0)	31,973	(100.0)
농림어업	250	(0.36)	123	(0.33)	170	(0.27)	456	(0.34)	113	(0.35)
제조업(광업 포함)	7,186	(10.46)	3,244	(8.71)	5,415	(8.61)	10,607	(7.84)	6,331	(19.80)
전기·가스·수도사업	11	(0.02)	1	(0.00)	4	(0.01)	17	(0.01)	49	(0.15)
건설업	2,620	(3.81)	1,618	(4.34)	3,207	(5.10)	4,821	(3.56)	1,358	(4.25)
도매 및 소매업	17,948	(26.12)	9,874	(26.51)	15,909	(25.29)	37,778	(27.92)	7,856	(24.57)
숙박 및 음식점업	11,154	(16.23)	6,395	(17.17)	10,659	(16.94)	32,382	(23.93)	1,901	(5.95)
운수업	1,598	(2.33)	713	(1.91)	1,341	(2.13)	3,321	(2.45)	614	(1.92)
통신업	50	(0.07)	27	(0.07)	47	(0.07)	72	(0.05)	67	(0.21)
금융 및 보험업	3,149	(4.58)	1,833	(4.92)	2,612	(4.15)	2,987	(2.21)	2,167	(6.78)
부동산 및 임대업	7,263	(10.57)	4,193	(11.26)	7,394	(11.75)	16,370	(12.10)	1,860	(5.82)
사업서비스업	3,324	(4.84)	1,442	(3.87)	2,825	(4.49)	6,000	(4.43)	3,414	(10.68)
기타서비스업	14,172	(20.62)	7,784	(20.90)	13,321	(21.18)	20,495	(15.15)	6,243	(19.53)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표 3-38〉 연도별 산업별 사업장 및 지역의 탈퇴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업장 합계	922,171	(100.0)	1,319,365	(100.0)	1,419,762	(100.0)	1,460,148	(100.0)	1,529,890	(100.0)
농림어업	5,191	(0.56)	5,443	(0.41)	5,396	(0.38)	5,297	(0.36)	5,408	(0.35)
제조업(광업 포함)	365,987	(39.69)	532,765	(40.38)	545,818	(38.44)	533,555	(36.54)	537,064	(35.10)
전기·가스·수도	1,101	(0.12)	1,450	(0.11)	1,651	(0.12)	1,692	(0.12)	1,752	(0.11)
건설업	79,077	(8.58)	101,503	(7.69)	112,527	(7.93)	122,227	(8.37)	142,475	(9.31)
도매 및 소매업	89,921	(9.75)	139,999	(10.61)	166,981	(11.76)	186,687	(12.79)	207,092	(13.54)
숙박 및 음식점업	14,463	(1.57)	24,455	(1.85)	29,177	(2.06)	32,358	(2.22)	39,733	(2.60)
운수업	87,952	(9.54)	105,168	(7.97)	106,878	(7.53)	108,629	(7.44)	95,691	(6.25)
통신업	4,777	(0.52)	4,442	(0.34)	3,941	(0.28)	9,100	(0.62)	4,280	(0.28)
금융 및 보험업	28,714	(3.11)	32,830	(2.49)	30,468	(2.15)	28,795	(1.97)	28,951	(1.89)
부동산 및 임대업	30,571	(3.32)	37,488	(2.84)	37,517	(2.64)	34,705	(2.38)	36,443	(2.38)
사업서비스업	151,910	(16.47)	234,844	(17.80)	264,158	(18.61)	270,337	(18.51)	287,676	(18.80)
기타서비스업	62,507	(6.78)	98,978	(7.50)	115,250	(8.12)	126,766	(8.68)	143,325	(9.37)
지역 합계	230,028	(100.0)	741,063	(100.0)	788,142	(100.0)	813,359	(100.0)	892,175	(100.0)
농림어업	1,373	(0.60)	3,802	(0.51)	3,789	(0.48)	4,569	(0.56)	4,101	(0.46)
제조업(광업 포함)	60,411	(26.26)	239,997	(32.39)	247,533	(31.41)	244,864	(30.11)	296,990	(33.29)
전기·가스·수도	89	(0.04)	514	(0.07)	600	(0.08)	666	(0.08)	934	(0.10)
건설업	17,571	(7.64)	79,592	1(0.74)	88,959	(11.29)	83,823	(10.31)	85,046	(9.53)
도매 및 소매업	45,697	(19.87)	101,658	(13.72)	112,832	(14.32)	122,885	(15.11)	149,940	(16.81)
숙박 및 음식점	10,213	(4.44)	20,518	(2.77)	22,140	(2.81)	28,085	(3.45)	20,869	(2.34)
운수업	14,941	(6.50)	66,192	(8.93)	63,192	(8.02)	62,000	(7.62)	58,669	(6.58)
통신업	656	(0.29)	1,631	(0.22)	1,810	(0.23)	1,826	(0.22)	2,038	(0.23)
금융 및 보험업	5,575	(2.42)	14,329	(1.93)	15,637	(1.98)	13,865	(1.70)	14,738	(1.65)
부동산 및 임대업	12,402	(5.39)	36,716	(4.95)	34,777	(4.41)	39,729	(4.88)	26,287	(2.95)
사업서비스업	33,651	(14.63)	114,301	(15.42)	130,496	(16.56)	135,522	(16.66)	153,682	(17.23)
기타서비스업	27,449	(11.93)	61,813	(8.34)	66,377	(8.42)	75,525	(9.29)	78,881	(8.84)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자료, 2005.

제4장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와 연금재정(Simulation)

본 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즉 1998년 기준 사업장자격자들의 자격, 기간 및 등급변동에 따른 재정수지에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자격변동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재정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은 이미 원종욱(2003)의 연구에서 분석이 시도된 적이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분석과의 차이는 원종욱의 연구는 자격 및 기간이 변동되고, 등급이 하락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등급상승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재정수지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1998년 기준 사업장가입자들을 기초로 2004년 등급이 상승한 자와 하락한 자 및 미납자로 남은 사람들의 자격, 기간 및 등급변동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과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 및 분석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횡단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현행 자료를 가지고 자격변동에 따른 재정수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재정추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가정한 기초적인 사항들이다.

① 1998년까지의 보험료 수입은 1998년 이전의 가입기간을 1988년～1992년(보험료 3%), 1993년～1997년(보험료 6%), 1998년 이후(보험료 9%)로 구분하여 1998년까지의 보험료 수입을 추계 하였다.

※ 각 보험료별 기간은 1998년까지의 가입기간을 기본으로 하여 역산하여 추정하였다.

② 1998년 이후의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 9%, 가입등급 및 연금가입기간은 59세까지 유지되며 60세에 사업장가입자에서 탈퇴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③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998년의 45～50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며, 60세에 도달시 가입자수에서 제외하였다.

④ 연금급여산식

$$\left[2.4(A+0.75B)\times\frac{P_1}{P}+1.8(A+B)\times\frac{P_2}{P}\right]\times(1+0.05\times\frac{n}{12})$$

ⅰ) A(가입자 평균임금) : 1,412,428원(2004년 기준)

※ 2000년～2004년까지의 평균증가율 3.6%를 적용하여 2004년 이후 A값 추정

ⅱ) B(생애 평균임금): 현행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ⅲ) P_1 : 1988년～1997년까지의 가입기간(월)

P_2 : 1998년 이후의 가입기간(월) P : 국민연금 전체가입기간(월)

n : 가입기간 20년 초과년수

ⅳ) 10년 미만 가입자는 연금최소가입연수인 10년으로 보정하였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자는 감액노령연금을 가정하였다(10년 가입시 완전노령연금의 47.5%에서 1년마다 5%씩 상향하여 19년 가입시 92.5%적용).

※ 단, 미납자중 10년 이하의 가입자는 60세 도달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함.

⑤ 연금슬라이드: 물가상승률 3% 적용

⑥ 연금수급은 60세부터 시작

⑦ 연금수급기간: 18년 가정

- 2003년 원종욱(2003)의 연구를 참조

⑧ 연금보험료 수입 및 급여지출의 현재가치화: 이자율 5%가정

- 산식: 현재가치 = 추정연금액 / $(1+0.05)^{n}$ (n: 年數)

⑨ 사망률, 유족연금, 장애연금, 가급연금액, 이직률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등급 및 자격변동내용별 재정수지분석

가. 등급이 상승한 경우

1998년에서 2004년까지 연금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1998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가입자의 연금보험수입 및 급여지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은 원종욱(2003)의 연구와 동일하게 첫 번째, 연금가입자가 1998년의 등급을 2004년까지 계속 유지하고, 기간만 추가되었을 경우의-1998년에서 2004년까지의 기간추가- 보험수입과 급여지출을 비교하였으며, 두 번째는 2004년 기준으로 1998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사람들이 2004년 등급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연금보험수입과 급여지출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방법 모두 2004년 이후의 가입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아래 표를 보면 2004년 사업장가입자 중 1998년 대비 등급상승자들이 1998년의 등급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기간만 추가된 경우의 보험료 수입은 7,123억원, 연금급여는 1조 8,26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정수지는 1조 1,145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4년 사업자가입자중 1998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한 사람들의 보험료 수입은 1조 581억원, 연금급여는 2조 1,244억원이 소요되며 재정수지는 1조 663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오히려 등급상승이 연금재정수지의 적자폭을 다소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998년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보험료 수입은 1,377억원, 연금급여는 6,280억원으로 재정수지는 4,903억원의 수지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1998년에 비해 2004년에 등급이 상승한 사람

들의 경우 보험료 수입은 1591억원, 연금급여는 4039억원으로 재정수지적자는 244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1998년대비 2004년 기준 연금가입자 중 등급상승자들의 수지분석

(단위: 억원)

구분	보험료수입[1]			연금급여[2]			수지차		순수지차
	등급유지	등급상승	차이	등급유지	등급상승	차이	등급유지	등급상승	
전체	8,500	12,172	3,672	24,548	25,283	735	△16,048	△13,111	2,937
사업장	7,123	10,581	3,458	18,268	21,244	2,976	△11,145	△10,663	482
지 역	1,377	1,591	214	6,280	4,039[3]	△2,241	△4,903	△2,448	2,455

주: 1) 2012년까지의 누계임.

2) 2008년부터 2031년까지의 누계임.

분석에 있어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급이 상승한 경우-사업장가입자의 예처럼- 등급을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연금급여가 상승해야 함에도 여기서의 분석에서는 등급유지에 비해 연금급여의 총수준이 감소한 것(6280억원→4039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가 연금급여를 추정함에 있어 첫째, 각 등급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가입기간을 사용하였으며, 둘째, 실제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998년 혹은 2004년 이후 계속적으로 연금에 가입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즉, 분석에서 등급유지는 1998년의 가입기간에 59세 도달시점까지의 기간을 더해서 분석했으며, 등급변동의 경우는 2004년까지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59세까지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1998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가입기간-등급유지-이 2004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가입기간-등급상승-에 비해 가입기간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가입자중 등급상승자들은 1998년 이후에도 꾸준히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연금등급은 상승하였지만 1998년에서

2004년 사이에 연금가입기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나. 등급이 하락한 경우

1998년 사업장가입자에서 2004년 기준 연금가입자로써 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자격변동에 따른 국민연금수지차를 분석하였다. 첫째, 2004년 기준 지역가입자가 1998년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했을 경우와 둘째, 1998년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의 연금보험수입 및 급여지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를 볼 경우, 사업장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1998년에 비해 2004년에 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 1998년의 등급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보험료 수입은 1조 598억원, 연금급여는 2조 25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942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2004년에 등급이 하락한 경우 보험료 수입은 7083억원, 연금급여는 1조 5440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8357억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4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사람들이 1998년 이후 계속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 수입은 1조 1530억원, 연금급여는 3조 1395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1조 9865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1998년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의 보험료수입은 3125억원, 연금급여는 1조 1382억원으로 재정수지차는 8257억원으로 추계되었다.

2004년 기준 연금미납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금미납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만약 1998년의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보험료수입은 7758억원, 연금급여는 2조 5107억원으로 재정수지는 1조 7349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2004년 이후에도 연금미납자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 보험료 수입은 4763억원, 연금급여는 4863억원으로 재정수지는 1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1998년대비 2004년 기준 사업장가입자중 등급하락자들의 수지분석

(단위: 억원)

구분	보험료수입[1]			연금급여[2]			수지차		순수지차
	등급유지	등급하락	차이	등급유지	등급하락	차이	등급유지	등급하락	
전체	24,886	14,971	△14,915	76,527	31,685	△44,842	△46,641	△16,714	29,927
사업장	10,598	7,083	△3,515	20,025	15,440	△4,585	△9,427	△8,357	1,070
지 역	11,530	3,125	△8,405	31,395	11,382	△20,013	△19,865	△8,257	11,608
미납자	7,758	4,763	△2,995	25,107	4,863	△20,244	△17,349	100	17,249

주: 1) 2012년까지의 누계임.

2) 2008년부터 2031년까지의 누계임.

3. 소결

지금까지 1998년 45세～50세의 사업장가입자에서 자격이 변동된 사람들에 대한 실제 국민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횡단면적인 재정수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본 재정수지 분석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재정개계산에 비해 단순한 분석만을 한 것으로 인구적인 여건변화(사망률, 인구증가율 등), 경제적 여건변화(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국민연금내부의 변화(수급자 및 가입자 변화, 장애 및 유족연금 추이 등)등 많은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약 5년간의 경제 및 노동시장의 여건변화가 실제 연금가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분석의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볼 경우 첫째,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혹은 연금미납자로 남을 경우 재정수지가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 혹은 미납자로 변경되면서 보험료수입은 1조 1186억원 감소하였으며, 연금급여지출은 4조 2498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 혹은 미납자로 변경되면서 순수지차는 3조 1312

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단순히 이를 놓고 볼 경우 사업장가입에서 지역 혹은 연금미납자로의 자격변동은 국민연금 재정수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단순하게 파악한 것으로 원종욱(2003)의 연구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가입자로의 자격변동으로 인해 낮아진 급여로 실제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정부가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춤으로써 재정수지 악화를 막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격변동에 따른 급여수준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은 미래세대에게도 많은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연금급여측면에서 사업장 가입에서 지역으로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고 등급이 상승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장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1998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로 인한 여건의 변화가 지역가입자들에게 연금 자격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점은 지역가입자들의 가입기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재정추계는 1998년 기준 45～50세의 사업장가입자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들의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직접적인 자격, 가입기간 및 등급변동에 따른 재정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연령대 및 일정시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표 4-3〉 1998년기준 사업장가입자 연령별·등급별 분포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1	16	13	11	14	12	13
2	2	5	0	1	2	2
3	3	2	1	1	2	0
4	4	6	5	7	7	6
5	3	6	3	6	4	2
6	18	15	9	10	8	5
7	24	26	19	17	14	14
8	57	73	51	46	49	36
9	179	184	122	149	150	143
10	251	258	202	206	172	173
11	503	522	426	427	404	432
12	638	780	532	626	538	571
13	642	713	506	587	587	572
14	971	1,103	849	921	872	921
15	983	1,124	866	934	980	960
16	1,034	1,267	932	1,057	1,015	1,102
17	947	1,097	889	955	963	1,040
18	1,145	1,371	1,037	1,123	1,160	1,231
19	977	1,070	836	874	882	988
20	875	1,010	760	800	842	886
21	905	1,046	751	845	881	838
22	1,057	1,134	793	910	918	922
23	668	792	624	643	639	666
24	782	873	713	694	756	752
25	860	985	730	760	806	767
26	894	1,005	711	738	768	797
27	796	902	662	696	653	685
28	1,122	1,064	765	814	781	797
29	783	830	588	627	610	617
30	799	824	594	644	625	599
31	802	842	589	619	610	546
32	706	740	508	480	521	503
33	912	875	639	698	682	626
34	575	617	430	441	420	437
35	566	587	393	422	406	432
36	600	642	441	434	428	418
37	534	571	387	405	410	413
38	643	650	424	515	447	471
39	551	633	414	410	386	417
40	516	604	406	400	431	463
41	585	637	390	467	475	423
42	499	554	374	411	396	392
43	535	543	405	453	419	424
44	392	433	345	319	330	324
45	2,441	2,982	2,293	2,736	2,856	2,808

〈표 4-4〉 2004년 사업장가입자의 연령별·등급별 분포(1998년기준)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1	10	5	3	6	2	6
2		2				
3	1	1				
4	1	1	2	2	2	
5	1					
6	1	4	3	3	2	
7		3	1	2	1	
8	5	10	6	5	1	3
9	5	12	8	7	5	8
10	9	13	7	10	10	9
11	21	26	24	8	14	19
12	24	34	20	26	31	30
13	24	39	27	38	31	40
14	97	88	69	105	88	100
15	222	255	199	244	217	250
16	297	348	274	291	310	301
17	303	348	294	324	331	362
18	448	549	432	490	515	549
19	404	492	411	490	514	551
20	388	441	340	390	451	488
21	486	576	465	495	511	581
22	564	628	468	537	533	552
23	317	420	306	348	301	309
24	386	470	322	332	385	390
25	431	484	374	417	408	386
26	419	478	382	366	379	338
27	377	443	374	338	326	359
28	469	537	412	428	406	409
29	341	388	261	276	272	280
30	380	390	262	293	259	255
31	352	412	240	296	296	250
32	329	319	252	294	227	214
33	449	437	347	327	315	276
34	284	253	174	222	197	180
35	315	313	198	191	208	183
36	275	339	225	203	189	175
37	233	217	141	169	161	140
38	282	290	157	193	158	156
39	184	208	144	135	132	109
40	193	222	142	141	120	89
41	223	230	159	140	136	126
42	134	155	92	85	79	75
43	160	146	102	112	105	74
44	127	121	80	85	70	50
45	2,053	2,105	1,387	1,362	1,139	911

〈표 4-5〉 2004년 지역가입자의 연령별·등급별 분포(1998년기준)

등급	연령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1	3,161	3,499	2,667	2,882	2,851	2,656
2	3		2	3	2	1
3		2	1		1	3
4		2			2	
5			1		1	1
6		1	1			2
7	1	2		1	1	
8	2	4	5	5	3	1
9	23	25	29	19	19	17
10	20	18	12	21	13	19
11	29	32	20	25	23	27
12	14	17	7	11	11	14
13	20	16	17	14	17	22
14	69	97	77	72	91	76
15	105	126	74	101	114	142
16	137	160	119	149	140	153
17	221	245	177	207	217	223
18	251	273	180	224	234	240
19	229	241	208	206	207	217
20	422	456	307	370	398	394
21	287	325	215	239	219	229
22	1,192	1,278	1,000	1,056	996	1,061
23	1,285	1,472	1,071	1,291	1,306	1,496
24	367	401	289	306	299	329
25	345	383	290	336	341	351
26	211	230	171	213	195	205
27	143	171	119	145	147	164
28	177	170	142	135	149	133
29	115	122	79	92	69	87
30	92	119	82	97	123	113
31	82	82	62	69	93	75
32	41	54	33	52	54	46
33	68	67	66	64	55	65
34	42	56	27	29	31	28
35	36	32	20	36	33	35
36	39	26	29	27	20	27
37	26	26	15	30	15	24
38	27	31	26	24	26	30
39	16	20	17	12	15	23
40	15	17	8	16	14	17
41	16	16	10	16	17	22
42	18	13	6	10	8	10
43	10	5	8	10	12	6
44	7	14	10	6	4	7
45	106	102	84	104	102	125

〈표 4-6〉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대비 등급상승한 자의 1998년 연령별·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등급	연령(단위: 월)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1	106	47	55	33	39	7
2	14					33
3	27					
4	16	7		64	14	53
5	30	21		7	165	
6	18	35	37	5	18	72
7	32	52	28	19	57	47
8	26	41	42	42	43	48
9	20	31	38	24	39	48
10	27	32	39	27	28	37
11	24	37	26	31	29	37
12	28	29	27	35	36	34
13	30	33	24	32	30	34
14	32	31	40	38	35	33
15	33	32	40	40	39	37
16	36	33	45	36	39	38
17	39	42	41	46	43	42
18	45	42	46	50	45	42
19	46	44	50	52	51	53
20	48	53	53	52	54	57
21	50	58	50	60	57	61
22	53	52	52	57	53	54
23	60	62	61	62	62	63
24	55	54	59	63	67	63
25	58	57	59	64	60	68
26	59	56	65	61	69	72
27	69	71	65	67	63	68
28	66	67	70	67	63	71
29	65	70	68	75	78	66
30	82	66	71	78	74	73
31	74	75	78	78	88	68
32	82	90	91	95	83	71
33	85	85	74	85	85	74
34	95	99	99	93	103	88
35	94	97	107	94	83	95
36	99	100	99	95	103	104
37	105	99	105	97	109	95
38	96	96	110	99	91	89
39	105	105	95	101	104	110
40	100	103	101	101	106	90
41	104	109	102	103	97	104
42	115	109	117	104	104	105
43	111	116	115	109	103	103
44	109	116	120	116	116	105
45						

〈표 4-7〉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대비 등급상승한 자의 2004년 연령별·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등급	연령(단위: 월)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1						86
2						
3						
4						
5						
6		90				
7						
8		97	130			
9	182	54		74		165
10		197	93		33	
11	101	98	128	53	62	
12	70	99	107	60	137	116
13	78	103	106	89	99	118
14	94	88	86	101	90	97
15	88	81	83	87	77	85
16	79	87	77	84	82	100
17	84	80	85	89	87	88
18	81	86	86	91	89	90
19	89	89	93	93	99	94
20	90	86	104	95	98	99
21	93	93	93	102	94	100
22	98	93	100	107	105	105
23	92	108	106	117	118	109
24	99	101	107	107	110	111
25	99	112	114	118	109	115
26	112	102	114	115	120	116
27	113	107	110	114	115	128
28	108	111	117	120	118	114
29	118	116	119	124	119	125
30	117	122	127	130	120	118
31	118	119	120	126	127	127
32	131	127	137	129	133	137
33	125	128	125	125	129	122
34	122	137	124	138	134	134
35	137	133	142	137	136	140
36	134	137	131	128	143	141
37	138	144	147	142	144	133
38	133	136	143	137	140	139
39	145	137	150	135	138	149
40	153	149	153	153	147	171
41	142	141	145	145	157	137
42	149	162	165	160	165	161
43	160	168	152	161	157	149
44	166	172	160	165	174	158
45	173	176	176	175	170	165

〈표 4-8〉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대비 등급하락한 자의 1998년 연령별·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등급	연령(단위: 월)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1				22		
2						
3						
4						123
5						39
6						
7	8					
8		0	12		17	
9	64	49	0			2
10		35			30	
11	107	29	31	1	32	112
12	18	17	53	67	40	54
13	40	72	51	28	39	56
14	36	21	28	41	45	29
15	26	27	32	37	33	30
16	20	25	34	21	38	34
17	43	28	40	34	39	56
18	37	31	38	47	39	37
19	38	40	52	39	34	38
20	34	44	39	44	48	43
21	47	47	41	42	42	48
22	43	44	36	41	42	44
23	43	47	46	48	46	37
24	42	40	46	49	47	47
25	46	49	44	42	51	52
26	40	51	55	52	51	46
27	43	49	47	57	48	48
28	50	43	46	48	49	49
29	49	41	56	52	57	51
30	46	52	54	59	58	55
31	55	58	45	58	57	65
32	48	55	59	61	50	72
33	57	50	55	54	56	59
34	48	50	62	61	59	68
35	47	63	58	61	62	63
36	75	59	56	56	61	62
37	59	57	49	62	63	71
38	60	59	57	73	64	65
39	59	70	78	56	69	68
40	61	68	55	72	68	69
41	64	68	71	65	74	63
42	81	65	69	71	70	58
43	79	67	75	73	66	66
44	80	77	87	74	72	87
45	91	89	90	89	89	92

〈표 4-9〉 사업장가입자중 1998년대비 등급하락한 자의 2004년 연령별·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등급	연령(단위: 월)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1	123	115	125	89	141	132
2		35				
3	39	18				
4	77	61	114	118	19	
5	67					
6	58	146	51	43	56	
7		92	191	131	92	
8	104	93	78	97	204	133
9	133	83	93	78	69	133
10	92	113	83	88	99	83
11	85	102	95	84	84	112
12	77	84	60	79	72	98
13	96	111	102	86	96	82
14	95	85	91	83	109	95
15	85	83	90	87	80	87
16	91	75	90	103	94	100
17	90	90	92	86	100	98
18	92	96	97	103	95	102
19	96	106	100	107	104	100
20	90	104	105	100	108	110
21	98	103	105	107	106	114
22	99	104	105	106	108	113
23	100	106	113	120	120	127
24	111	105	109	119	120	112
25	108	113	118	113	112	119
26	119	110	110	107	107	119
27	112	123	109	119	130	125
28	112	105	115	118	119	126
29	125	112	126	106	143	126
30	122	116	123	129	127	135
31	115	119	126	116	121	128
32	120	123	133	137	134	140
33	121	126	121	127	124	125
34	129	129	130	132	136	138
35	136	121	151	137	133	144
36	144	121	122	146	153	142
37	150	133	146	143	150	139
38	128	131	142	140	146	161
39	133	135	131	141	137	134
40	132	148	131	150	144	158
41	135	142	151	118	127	128
42	168	158	161	158	145	161
43	145	138	149	134	165	151
44	151	161	147	182	140	169
45	177	178	180	183	180	185

〈표 4-10〉 2004년 지역가입자의 사업장자격변동전 1998년까지의 연령·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

등급	연령(단위: 월)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1	25	18	94	42	27	28
2		54			46	
3		14	59		35	
4	6	34	69	71	11	
5	73	116		9	34	118
6	24	33	42	9	7	120
7	14	15	33	25	32	36
8	21	22	29	36	38	39
9	30	25	29	27	36	35
10	25	28	27	29	20	27
11	23	25	20	28	25	25
12	22	24	26	25	28	22
13	18	27	25	29	24	20
14	21	22	30	23	21	26
15	26	23	24	26	23	27
16	27	25	27	26	29	26
17	26	30	33	33	31	28
18	36	33	33	32	33	24
19	28	32	31	32	35	30
20	24	32	37	26	29	32
21	28	32	30	34	32	34
22	28	27	29	32	29	27
23	35	34	31	34	32	34
24	32	27	33	35	36	35
25	27	30	31	33	33	29
26	35	34	34	35	39	35
27	29	33	37	37	36	38
28	31	31	31	35	34	35
29	34	30	39	39	44	36
30	41	38	42	35	33	44
31	40	43	37	42	39	44
32	38	41	46	49	41	51
33	34	41	36	41	43	39
34	41	49	37	48	48	53
35	46	50	42	56	45	51
36	43	50	51	45	40	52
37	43	45	41	49	51	53
38	38	38	43	43	44	49
39	46	50	40	49	45	46
40	45	56	54	49	46	52
41	51	52	47	55	48	44
42	59	52	42	61	53	57
43	59	58	60	71	62	63
44	56	56	61	51	62	59
45	42	47	50	47	48	52

〈표 4-11〉 2004년 지역가입자의 연령·등급별 평균가입기간 분포(1998년기준)

등급	연령(단위: 월)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1	48	53	53	54	55	54
2	54			27	51	87
3		9				58
4		77			104	
5			92			129
6			160			77
7	198	98		198	51	
8	4	23	58	5	46	3
9	21	20	49	57	47	20
10	65	80	81	67	70	91
11	50	50	68	79	69	80
12	82	75	67	91	92	76
13	99	72	111	84	58	91
14	65	68	66	75	81	69
15	80	77	83	92	94	86
16	60	77	78	71	71	77
17	75	77	77	73	79	82
18	76	77	80	72	71	70
19	79	74	76	82	71	81
20	72	72	72	74	76	73
21	67	76	80	76	75	74
22	67	71	71	73	75	75
23	79	76	80	81	82	80
24	84	85	89	91	84	97
25	85	85	87	101	84	96
26	86	88	90	93	94	97
27	85	90	88	95	88	99
28	89	87	85	101	98	93
29	97	91	86	98	107	105
30	107	103	98	99	103	126
31	86	101	110	106	97	103
32	74	91	97	96	110	105
33	87	99	93	103	108	108
34	88	106	90	85	104	116
35	102	97	108	108	117	118
36	86	130	98	95	112	118
37	118	105	98	104	121	83
38	96	87	124	127	119	105
39	106	117	136	102	111	96
40	127	107	110	136	106	119
41	72	114	127	105	129	127
42	102	82	106	122	117	153
43	114	141	137	100	117	123
44	67	89	103	130	134	100
45	104	109	111	116	127	126

제5장 선진국의 경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1절 조기퇴직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방안

1. 배경

오늘날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의 고령화는 근로세대의 감소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인력수급에 차질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공적연금제도를 포함한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부실을 초래하게 될 위험도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적 대응전략의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장차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노동인력의 부족문제와 연금재정의 불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공적연금제도가 추구하게 되는 사회정책의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높다. 가령 현실적으로 노령계층에 대한 고용환경이나 근로조건의 개선 그리고 기업차원에서 정년연령의 연장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연금재정의 안정만을 목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소득공백의 기간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용불안의 현상이 미숙련의 단순근로자, 여성근로자, 장애근로자 등 주변부 근로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른 경제적 충격 또한 사회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로생활주기의 후반부에서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게 될 경우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급여수준의 삭감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인상은 연

금의 조기수급기간을 추가로 확대하는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당사자는 노후빈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이 고령화 사회의 중대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대안이 사회정책적 수용능력과 경제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별도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점진적 퇴직제도의 취지와 기능적 특성

점진적 퇴직제도(gradual retirement system)는 경제활동주기의 후반부에 위치한 노령근로자들이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문제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충해 주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이러한 취지의 점진적 퇴직제도는 1976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10개 회원국가 그리고 스위스가 관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편적 퇴직모형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 또는 퇴직이 서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모형은 퇴직 이전의 경우 신체적 기능의 저하에 따른 작업의 부담 그리고 퇴직 이후의 경우 갑작스런 역할상실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반면 점진적 퇴직의 경우 아래의 [그림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와 퇴직이 서로 병행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퇴직모형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작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동시에 별도의 보충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노령인력의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중요한 유인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보고서 「고용정책적 수단의 개발에 대한 지침(Leitlinien für beschäftigungspolitische Maßnahmen)」에서는 점진적 퇴직제도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회원 국가들에게 관련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첫째, 점진적 퇴직은 노령계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점진적 퇴직제도는 노령계층의 장기근로를 유도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점진적 퇴직제도는 기업특수의 인적자본을 가진 노령근로계층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그들의 기술이나 지식을 다음 세대의 근로자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넷째, 점진적 퇴직은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균형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점진적 퇴직은 개인적으로는 퇴직시점과 연금수급시점의 연장을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식적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점진적 퇴직은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서구국가에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퇴직의 폐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5-1〕 점진적 퇴직의 진행과정과 부분연금제도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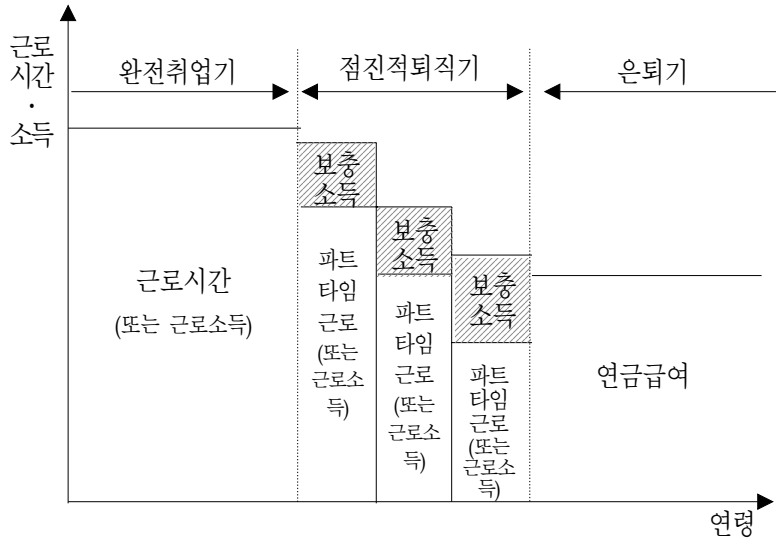

자료: Schüle, U., Flexibilisierung der Altersgrenze, 1988.

3.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 운영사례

아래에서는 점진적 퇴직제도와 관련한 국가별 사례들 가운데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현재 노령근로자들의 점진적 퇴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그 운영주체에 따라 고용보험 책임의 점진적 퇴직제도와 국민연금 책임의 점진적 퇴직제도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가. 고용보험 책임의 점진적 퇴직제도

1) 제도의 취지

독일 정부는 노령근로자들의 작업부담 경감과 고도실업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1996년 '점진적 퇴직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의 점진적 퇴직제도는 흔히 '고령자 파트타임모형'(Altersteilzeitmodell)으로 불리고 있으며, 고용보험제도의 수행주체인 연방고용에이전시(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담당해 오고 있다.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55세 이상의 노령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종전 근로시간을 절반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산업별 또는 기업별 단체협약에 일임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단축방법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 일일 근로시간의 단축・격일・격주・격월・격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의 독일 기업들은 인력관리의 편의와 노후여가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 등을 이유로 점진적 퇴직의 이행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 그 중 전반부는 전시간 근로 그리고 후반부는 전시간 휴가를 제공하는 소위 'Block-model'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경우 개인별로 3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환산한 값이 종전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절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경우 최고 10년까지 그 기간을 근로시기와 휴가시기로 반분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있다.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개인별로 점진적 퇴직의 종료시점이 어떠한 경우에도 조기노령연금이나 정규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연령 이후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점진적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점진적 퇴직을 통하여 노령근로자가 종전의 근로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게 될 경우 당사자는 임금의 하락과 연금 가입경력 상의 불이익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점진적 퇴직 촉진법'은 해당 기업이 파트타임 임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시에 파트타임 이전 정상소득의 9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파트타임 임금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보충소득은 세금이나 제반 사회보험료의 부담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는 최소한 종전 임금의 7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금보험료는 개인의 실제 임금에 상관없이 종전임금의 90%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고, 이 경우 각각의 차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전적으로 기업이 맡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연금보험료는 고령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통한 실제 임금의 경우 노사 반반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며, 실제 임금과 종전임금의 90% 상호간 차액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경우 기업이 전액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노령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은 개인의 근로시간 단축수준에 상응하는 만큼 신규채용의 여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기업이 그 자리에 실업자 또는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경우 점진적 퇴직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보충소득과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연수생이나 인턴사원을 채용하게 될 경우에도 지원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진적 퇴직 촉진법'에 따라 고용보험제도는 앞서 설명한 지원금을 개인별로 최고 5년의 기간동안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2000년 동 법의 개정에 따라 6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55세부터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므로 또 다른 형태의 '조기퇴직제도'(Vorruhestandsregelung)'로 불리고 있다. 이러

한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1997년 이후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에 따라 노령근로계층의 실업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진적 퇴직은 그들의 고용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은 파트타임 근로소득, 보충소득 그리고 연금보험료의 상향적용 등을 통하여 소득공백의 문제와 사각지대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점진적 퇴직은 고령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발생한 일자리의 공백을 젊은 실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용기회의 세대간 재분배' 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단기적 차원에서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용불안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점진적 퇴직 촉진법' 제정 당시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신청기한을 2004년 7월까지로 제한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용불안의 문제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00년 동 법을 개정하여 신청기한을 2009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적용대상

고용보험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은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 당시 55세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5년의 기간동안 실업급여, 실업부조 또는 의료보험의 상병급여를 수급한 기간 또한 자격요건에 가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에 준한 점진적 퇴직의 신청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에 따라 점진적 퇴직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기업은 노령근로자의 파트타임 근로 신청을 수락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다만 종사근로자의 5% 이상이 파트타임 근로를 신청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업이 선별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된 조정금고(Ausgleichskasse) 또는 노사단체의 공동기구가 운영될 경우 앞서 언급한 5%의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의 지원금은 조정금고 또는 공동기구에게 지급을 하게 된다.

3) 파트타임 노령근로자의 보호규정

파트타임 노령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 그리고 제반 사회보장의 내용이나 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 특별한 해고보호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고용불안이 발생하게 되어 기업 또는 노동조합이 불가피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별(soziale Auswahl)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파트타임 근로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의 해고보호법(Kündigungsschutzgesetz)상 기업이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 또한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의 대상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사의 합의에 따라 노령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지원금(보충소득과 연금보험료)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령 기업이 여타의 사유로 인해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금은 기업의 책임으로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노사간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파트타임모형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나 상병급여의 경우 급여의 산정이 파트타임 임금이 아니라 종전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급

격하게 하락하는 문제를 방지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이 경영상의 사유로 조업단축을 하게 될 경우에도 파트타임 노령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수준의 소득과 혜택(종전소득의 70%, 연금보험료 지원 등)이 계속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국민연금제도 책임의 점진적 퇴직제도

1) 제도의 취지

독일은 고령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서 1992년의 연금개혁에 따라 부분연금제도(Teilrentensystem)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 연금법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완전한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거나, 아니면 부분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 부분연금은 자신의 조기노령연금을 기준으로 1/3, 1/2 또는 2/3의 수준에서 지급이 된다.

부분연금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수준 이내에서 소득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소득활동을 통하여 개인은 완전한 노령연금의 수급 시까지 점진적으로 퇴직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과기간 동안 부분연금과 별도의 근로소득을 통하여 자신의 종전 소득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2) 부분연금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상한선의 적용

부분연금의 수급자에 대한 소득활동의 제한은 근로소득의 상한선(Hinzuverdienstgrenze)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부분연금의 수준 또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 되고 있다.

먼저 근로소득의 상한선은 부분연금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상한선은 1/3 부분연금 수급자의 경우 개인의 종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80%, 1/2 부분연금의 경우 60% 그리고

2/3 부분연금의 경우 40%의 수준에서 각각 결정이 된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상한선은 실제적으로 개인별로 종전 근로소득의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근로소득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 실질연금가치(aktueller Rentenwert)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 근로소득의 상한선은 개인별로 종전 근로소득의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3 부분연금의 경우 실질연금가치의 35배, 1/2 부분연금의 경우 26.25배 그리고 2/3 부분연금의 경우 17.5배의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근로소득의 상한선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의 상한선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규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5세 이전의 경우 앞서 설명한 근로소득의 상한선이 적용되는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아무런 소득의 제한이 없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점진적 퇴직은 정규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인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이미 수급을 하고 있는 부분연금 이외의 나머지의 부분(구체적으로 정규노령연금 - 부분연금)에 대하여 매 1년마다 6%의 가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령근로자는 점진적 퇴직 기간 동안 부분연금과 함께 무제한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완전한 퇴직 시에는 부분연금 그리고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나머지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3) 부분연금 수급자의 보호규정

부분연금모형을 통하여 점진적 퇴직을 하고자 하는 노령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장과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신청은 전적으로 당사자 자신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점진적 퇴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은 파트타임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전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여성의 수급권 보장

1. 육아로 인한 사각지대의 문제와 연금정책적 차원의 대처방안

출산과 육아는 미래세대의 생산과 육성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제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본적 작동원리가 되는 소위 '세대간 계약'(generational contract)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행위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출산과 육아활동을 통하여 창출하게 되는 효용은 전체 사회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일종의 '공공재적 특성'(public goods character)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는 해당 가정(특히 여성)에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육아의 과정에서 각종의 직접적 비용(일례로 양육비용, 교육비용, 주거비용 등)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하락 등 기회비용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육아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인적자본의 부식문제'(human capital depreciation)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한 '연공서열상의 불이익'(seniority loss) 등 각종의 경제적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다.[주13)]

앞서 설명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피해현상은 공적연금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다음과 같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먼저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공적연금제도의

주13) 여기서 연공서열상의 불이익이란 육아기간에 해당하는 근속연수의 상실이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겪게 되는 보수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의미함.

가입경력 공백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다음으로 육아기간 동안 인적자본의 부식문제와 연공서열상의 불이익 문제는 육아휴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금가입 소득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어 당사자는 연금수급권의 확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불이익 이외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육아휴직 이후 노동시장의 재진입에 실패를 하여 연금의 수급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는 문제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출산과 육아활동은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핵심적 사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다자녀 가정의 경우 연금수급권의 확보에 있어서 무자녀 또는 소자녀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출산과 육아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효용의 수혜주체(전체 국민)와 비용의 부담주체(해당 가정이나 여성)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육아로 인한 개별 가정의 경제적 피해를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육아비용의 사회화 방안은 가족정책, 사회보장정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등 각종의 정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연금정책적 대처방안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책영역들 가운데 하나로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독일

1) 육아기간의 연금가입 인정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은 1992년 연금개혁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연금가입의 인정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인정 수준 등이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그 내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개정 당시 1991년 이전의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1년의 연금가입 인정이 이루어졌으

며, 이후의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3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육아기간 동안 재차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경우 연금가입의 인정기간은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3년으로 연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육아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연금청구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당사자의 연금가입 인정소득은 매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100%가 되며, 이러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되고 있다. 만약 육아기간 동안 당사자가 별도로 소득활동을 하여 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경우 연금가입 인정소득(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실제 연금가입소득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양자를 합산한 연금가입소득은 법으로 정한 소득상한선(평균소득의 2배 가량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 연금가입 인정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규정(additive Lösung)은 1998년 법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허용되었으며, 이는 육아기간 동안 개인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주14)]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은 실제 육아의 책임자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의 책임을 담당하게 될 경우 합의를 바탕으로 수혜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나아가 부부가 전체 연금가입의 인정기간을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있다.

육아뿐만 아니라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발문제 또한 당사자에게 있어서 보험가입경력의 공백과 함께 사각지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1995년 장기요양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의 도입 이후 이러한 문제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5년 4월부터 수발의 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수발점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수발점수의

주14) 종전의 경우 연금가입 인정소득과 근로를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소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대체규정(substitutive Lösung)을 적용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 인정제도의 완전한 혜택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음.

인정요건으로서 당사자는 무보수로 주당 최소한 14시간 이상 수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소득활동시간을 주당 최고 30시간 이내로 제한하여야만 한다. 수발점수는 수발 대상자의 장애정도와 수발 서비스의 제공시간에 비례하여 전체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80%에서 최저 26.7%의 사이에서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수발업무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될 경우 당사자간 수발점수의 분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상자들은 공히 주당 최소 14시간 이상 수발업무를 담당해야만 한다. 이러한 수발점수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조치 이외에도 독일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양육 또는 수발 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례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2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양육의 경우 아동 1명당 최고 10년 그리고 수발의 경우 1992년부터 1995년 3월까지의 기간(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연금의 '고려기간'(Berücksichtigungszeiten)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고려기간은 각종의 특례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주로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육 또는 수발을 이유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고려기간은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주15)]

2) 육아기간 동안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

일반적으로 육아의 문제로 인해 부모들이 겪게 되는 경제활동의 제약은 법으로 정한 육아휴직기간(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독일은 육아활동에 대한 3년간의 연금가입 인정제도 이외에 별도로 개인의 연금가입소득을 인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해 오고 있

주15) 독일의 경우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은 최소 5년 이상의 보험가입경력과 함께 별도로 장애발생 이전 5년의 기간 동안 최소한 3년 이상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음. 여기서 고려기간은 일반 보험가입기간으로 동등하게 인정되고 있음.

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만 10세가 될 때까지 개인이 별도의 소득활동을 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2001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경우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은 가산점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개인별로 실제소득의 50%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가산점을 합한 연금가입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동 규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5년 이상의 연금가입경력이 요구되며, 이는 육아 책임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육아휴직의 기간을 가급적 짧게 활용하고 비록 파트타임의 형태라도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만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과 관련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규정은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부모에 대하여 더욱 관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부양의 경우 해당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양의 책임자에게 제도가입의 특례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이후의 시점부터 장애아동을 부양한 경력에 대하여 부양자 자신의 경제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에서 가산점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개인별로 근로소득과 가산점의 합산이 허용되며, 다만 실제적인 연금가입소득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다수의 어린 아동을 동시에 양육하게 될 경우 부부 가운데 한 사람(주로 부인)은 경제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앞서 설명한 바 있는 만 1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면서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주어지는 가산점의 혜택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2001년 연금개혁에 따라 가정에서 10세 미만의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고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의 가산점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산점의 혜택은 1992년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그 수준은 매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3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고 있다.

3) 유족연금제도의 개선

독일은 2001년의 연금개혁을 통하여 유족연금제도에서도 아동의 양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 정부는 사전적으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을 기존의 60%에서 55%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여유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될 경우 별도로 첫째 아동의 양육경력에 대하여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2배에 준하는 가산점이 주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매 1명당 평균소득의 1배에 상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최소한 아동 1명 이상을 양육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 유족연금은 종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일례로 당사자 자신의 노령연금)과의 병급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은 유족연금만으로는 정상적인 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정에게 있어서 특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의 연금개혁과 함께 유족연금의 병급제한규정 또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병급조정의 대상은 종전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득원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의 경우 개인의 소득이 법으로 정해진 소득상한선 이내에 있을 경우에만 완전한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급여의 감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과도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근로동기를 제한하게 되고 개인별로 상이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법으로 정해진 소득상한선에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kinderbezogene Freibetrag)'를 합산하여 가구별로 소득상한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따라 부양아동이 많은 가정의 경

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상한선이 적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족연금의 감액이 없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4) 연금분할제도

가정 내 부부간 역할구분에 대한 사회적 관습으로 인하여 여성은 배우자인 남편에 비해 연금급여의 확보에 있어서 불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대다수 여성의 경우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경제활동주기에서는 물론 향후 노후생활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경제적 의존성의 문제는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당사자인 여성에게 있어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문제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연금분할제도는 가정의 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하여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여성들에게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정우, 2003). 독일의 경우 연금분할제도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자 확보한 연금소득점수(Entgeltpunkt)를 합산하여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부간 연금의 분할은 이혼 당시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2001년의 연금개혁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연금분할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먼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부부 상호간 합의가 있을 경우 연금의 분할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연금의 분할은 부부가 공히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부부가 공히 최소한 25년 이상의 연금가입경력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될 경우 개인은 예전의 방법과 같이 유족연금을 수급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가입경력을 대상으로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 만약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경우 분할연금은 개인의 독자적 연금수급권으로 인정이 되며, 따라서 소득활동의 제한규정이나 재혼 시

급여정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장점이 발생하게 된다.

나. 스위스

1) 육아기간의 연금가입 인정

스위스는 1997년 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양육 그리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발로 인하여 보험가입경력에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먼저 양육의 경우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연금가입소득에 별도의 '양육가산점'(Erziehungsgutschrift)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산점은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향후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최저연금액(Mindestbeitrag)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연금소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 육아의 가산점은 출산 이후 아동이 16세에 도달하는 기간동안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게 될 경우 인정기간은 최종적으로 막내가 16세에 도달하는 시점까지로 정해두고 있다. 다음으로 '수발가산점'(Betreuungsgutschrift)은 직계가족의 수발책임을 가정에서 수행하게 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수발가산점의 운영방식은 양육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나, 다만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연금공단(Ausgleichskasse)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양육 또는 수발 가산점의 제공에 따른 비용은 전액 조세재원으로 충당이 된다.

양육기간이나 수발기간 동안 책임자가 근로를 중단할 경우 그 기간동안에 대하여 공히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 기간 중 당사자가 별도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금가입소득과 가산점이 합산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소득이 최저연금액의 6배를 초과하게 될 경우 그 기간동안 가산점에 대한 권리가 중단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기간동안 육아와 수발의 책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 한 가지이 가산점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개인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연평균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

$$\text{연평균 소득} = \frac{\sum_{t=1}^{n_1}(Y_t) + \sum_{t=1}^{n_2}(B_t)}{T}$$

n_1 : 국민연금 가입기간
n_2 : 육아기간 또는 수발기간
T : 완전한 가입기간
Y : 국민연금 가입소득
B : 육아 또는 수발의 가산점

2) 1인 1연금의 원칙 도입

1997년 제10차 연금개혁 이후 스위스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원칙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종전 '부부연금의 원칙'(Ehepaarenrentenprinzip)에 입각하여 운영되어 왔던 노령연금제도는 제도 개혁에 따라 '1인 1연금의 원칙'(Individualrentenkonzept)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본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종전 제도의 경우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가입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여성의 경우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이 보장될 수 없었으며, 나아가 심지어 혼인기간 동안 제한적으로나마 근로를 통하여 별도의 가입경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도 연금의 청구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신 이들에 대해서는 연령별 구분에 따라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근거한 추가연금(Zusatzrente) 또는 배우자연금(Ehepaarrente)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주16], 청구

주16) 추가연금과 배우자연금은 공히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부인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연금으로서, 일종의 '파생적 연금수급권'(derived pension right)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여기서 추가연금은 여성의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아직 공식적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남편의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30%가 지급됨. 반면 배우자연금의 경우 여성 자신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이후부터 제공되는 급여로서 남편이 받고 있는 노령연금의 50% 수준에 해당됨.

권은 여성 자신이 아닌 상대방 배우자에게 두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반의 문제에 대처하여 2001년부터 '1인 1연금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종전의 추가연금이나 배우자연금은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폐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적용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법으로 정한 최저보험료의 2배 이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당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여성은 국민연금제도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3) 연금분할제도

스위스의 경우 연금분할제도는 1997년 연금개혁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연금분할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배우자 상호간 연금의 분할은 이혼 시는 물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경우 분할의 방법은 상호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다음으로 독일의 소득점수 분할방식과는 달리 스위스의 국민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획득한 소득금액(Jahreseinkommen)을 합산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위스 연금분할제도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금분할의 방법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 경우 연금의 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자 획득한 연금가입경력(정확히 표현하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상호 동일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분할의 대상은 부부 각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금액 그리고 아동의 양육 또는 노인의 수발 등을 통하여 확보한 가산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연금분할은 배우자 모두가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는 시점 또는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중도에 사망하게 된 시점에 가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부부 각자의 연금급여를 합산한 금액은 법으로 정한 급여상한선(Höchstgrenze)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

(Plafondierung)을 적용받게 된다.

다음으로 이혼 시 적용되는 연금분할의 방법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 경우 연금의 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획득한 연금가입경력(구체적으로 소득금액)을 동등하게 배분하여 각자의 연금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의 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후 각자 가족상황의 변화(일례로 재혼, 사망 등)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이 독자적인 수급권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연금급여는 연금분할을 통한 소득금액 그리고 이혼 이후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이 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가족상황에 상관없이 노후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연금분할은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체계로 인하여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연금의 분할에 따라 가입자 본인은 물론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최소한 최저연금액 이상의 연금급여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위스의 국민연금제도는 1948년 최초 도입 당시부터 국민보험(Volksversicherung)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업주부에게도 배우자 연금급여의 50%를 별도로 보장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연금분할제도는 종전의 부부연금(Ehepaarenrenten)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고, 동시에 부부에게 분할된 연금급여의 합계가 급여상한선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연금재정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스웨덴

스웨덴의 공적연금체계는 1998년의 연금법 개정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종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하게 수행해 왔던 기초연금제도(AFP)와 소득비례연금제도(ATP)는 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소득연계연금제도(income pension system)와 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로 대체되었으며, 순수한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부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

는 보증연금제도(guarantee pension system)가 담당을 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적 차원의 지원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육아기간의 연금가입 인정

스웨덴의 경우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의 인정은 소득연계연금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득연계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을 토대로 운영이 되며, 보험료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근로소득, 자산소득, 사회보장소득 등)을 기준으로 16%로 정해져 있다. 소득연계연금제도에 있어서 육아의 경우 아동 1인당 4년간 그리고 수발의 경우 그 기간동안 연금가입이 인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아이의 출생을 전후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양육점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② 양육의무자의 연금가입점수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75% 수준까지 상향조정해 주는 방법으로서, 이는 주로 저임금 근로자나 전업주부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③ 양육기간 동안 당사자가 전시간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법으로 정한 기본점수를 본인의 연금가입점수에 추가하여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는 양육 책임자의 이중적 부담(육아와 직업활동)을 보상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판단된다.

2) 연금분할제도

1998년 연금법개정에 따라 스웨덴은 수익연금제도를 대상으로 연금분할과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경우 연금의 분할은 부부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중도에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허용되고 있다. 연금분할의 신청 시 수혜자의 선정, 분할기간 그리고 분할수준 등은 전적으로 부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

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분할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분할된 소득은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라. 영국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완전한 노령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16세부터 64세까지 그리고 여성의 경우 16세부터 59세까지의 기간동안 최소한 90% 이상의 보험가입경력이 요구되고 있다.[주17]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감액을 받게 되며, 심지어 전체 요구기간의 25%(여성의 경우 10년)를 미달하게 될 경우 연금의 수급자격이 박탈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여성은 최고 20년까지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반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경우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철저히 보험료의 납부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의 평균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영국의 경우 보험가입경력이 없는 전업주부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별도의 부인노령연금(category B retirement pension)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인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그 이전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부인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배우자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60%가 된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러한 부인노령연금은 자동적으로 기초노령연금(category A retirement pension)으로 전환이 된다.

주17) 영국의 경우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종전의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2020년에는 남성과 같이 65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완전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 또한 점차 연장되어 가고 있음.

제3절 소결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외국의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본 장에서는 서유럽국가들의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는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지만 특히 노령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은 효율성 증대라는 목적하에 고연봉, 고연령, 고직급자들에 대한 다양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많은 고령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게 되었다. 결국 고령의 연령대에 진입시 미충분한 수급권은 연금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점진적 퇴직제도 및 부분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점진적 퇴직제도의 경우 기업입장에서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제도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소득파악이 미진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연령대의 감소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보육의 어려움이다. 특히 직장여성, 맞벌이부부들의 경우 자녀 보육문제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는 사회적인 손실일 뿐 아니라 연금측면에서는 개인가입기간의 축소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자녀를 둔 여성들에 대해 가입기간을 연장해주거나-독일, 스위스, 스웨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되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영국-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의 여성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가별로 연금분할제도, 유족연금의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많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문제, 고령인구의 증가, 아동보육, 교육여건의 개선 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지난 1998년의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다소 극복하였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양극화-비정규직 양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괴리, 소득양극화, 수출의 비약적 증가와 국내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등-라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경제적인 여건변화가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영향-특히 노동시장-을 미쳤으며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제여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를 들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조치로 인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초래해 결국 국민들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계속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었다.

앞의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하면 연도별 직종별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1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12,879천명 중 6,951천명(54.0%)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 8월에는 13,803천명 중 8,599.8천명으로 2001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금가입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1년 8월 15.7%에서 2002년 8월 15.2%, 2003년 8월에는 15.1%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 8월에는 16.8%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 변화중 하나인 소득양극화를 부가조사상의 임금자료를 통해 살펴볼 경우, 분위별 분포에 있어 정규직은 대부분이 3분위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3분위 이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가입수

준에 있어서도 2001년 이후 정규직의 경우에는 1분위에서의 연금가입자가 전체 근로자 대비 16.1%에서 2004년에는 27.3%까지 증가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001년 4.9%에서 2004년 7.5%로 비정규직의 연금가입수준이 낮으며, 분위가 증가 할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31참조).

국민연금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1998년 45세～50세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자격변동자의 2004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분석에 비해 사업장가입자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지역가입자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등급변동에 있어서도 사업장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경우는 55.4%가 등급이 증가한 반면 지역으로 가입자격이 변동된 사람들의 85.7%는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입기간에 있어서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기간이 축소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사업장에서 지역으로 자격 변동에 따른 연금가입자들의 등급변동 및 이에 따른 가입기간의 영향이 매우 큼을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국민연금의 신규가입자 및 탈퇴자에 대한 변동자료를 살펴볼 경우 먼저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모두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 비해 지역가입자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퇴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2004년에 1,734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30만명이 증가한 반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1,668천명으로 지역가입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에서의 탈퇴 즉 자격변동이 바로 국민연금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가입자에서의 자격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의 특정연령대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의 자격변동은 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 및 납부예외자로의 전환은 가입자의 향후 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완화 혹은 대처할 수 방안은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장단기대책, 정책대안 측면에서는 재정안정화, 급여의 적정성 확보,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세가지 측면 등 양자를 복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안정화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안정화 측면으로는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논의 되어 오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재계산에 의할 경우 현재의 연금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은 2036에 처음으로 수지적자를 보인후,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2003년 재정재계산을 통해 확정된 정부안-보험료의 단계적 인상(15.9%), 소득대체율의 축소(40년 60%→50%)-을 토대로 현재의 저부담·고급여의 연금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 및 연금지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정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연금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국민 특히 가입자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계속적이고 꾸준한 설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급여의 적정성측면에서 현행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의 가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1998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나타난 급여연령의 단계적 상승과 둘째, 소득대체율의 축소라 할 수 있다. 이 두 문제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앞에서도 분석했듯이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조기퇴직이 일상화되는 시점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과 소득대체율의 축소는 노령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다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위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미 2000년대 들어 민간보험을 통한 개인연금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아직 일반 민간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제도적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개인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후 노령세대에 들어갔을 경우 충분한 소득대체수단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퇴직연금제

도에 대한 이점과 다른 제도-퇴직금제도-와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민간보험회사의 파산이나, 저금리현상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의 해소방안을 들 수 있다. 현재 매년 지역가입자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납부예외 및 체납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앞의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등급이 상승하더라도 가입기간의 불안정으로 인해 연금급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 및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조기퇴직,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단기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대처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조기퇴직 및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으로는 독일 등 서유럽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점진적 퇴직 및 부분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특히 점진적 퇴직제도의 경우 고령 근로자들의 급격한 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감소인 연금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시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사각지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 육아 및 보육은 전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육아 및 보육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막게 되고 이는 여성들의 연금가입에의 기회나 연금가입기간을 축소하는 현상을 만들게 됨으로써 노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소득원의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 및 보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연금제도내의 지위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 개정안내에 출산크렛딧 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여건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금 사각지대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문제라 할 수 있다. 장기적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현재도 충분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미래의 연금제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도가 어떤 식으로 도입되느냐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가져올 수 있어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제도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국민연금의 특정연령대의 자료 및 2000년 이후 국민연금의 신규가입자 및 탈퇴자들에 대한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실제자료 및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최근까지의 노동시장 및 국민연금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대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는 분석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경제활동부가조사 자료의 경우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모호하며, 소득자료가 임금밖에 파악이 안 되어 정확한 소득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조사항목이 일부 해마다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분석을 시도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국민연금 분석자료의 경우 일정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었으며, 1998년과 2004년 사이의 변화만을 파악하는 횡단면적 분석만이 가능하였다는 점이 분석에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법 해설』, 2001.

_____,『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박동운,『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박래영,「노동시장의 유연화」,『홍익대 경제연구』14, 1999.

박무환·최기홍,『국민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2002-08,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박양수·문소상,「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원인과 향후 전망」,『조사통계월보』9월, 한국은행, 2005.

백화종·원종욱·김수봉·김태완,『저금리시대의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 연구』, 연구 2004-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석재은,「사각지대와 연금개혁」, 200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한국 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모수적 개혁 대 파라다임적 개혁』, 2004.

_____,「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한국사회복지학』제50호, 2002.

안주엽·김동배·이시균,『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Ⅲ)』, 정책연구 2003-10, 한국노동연구원, 2003.

안주엽·조준모·남재량,『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Ⅱ)』, 정책연구 2002-1, 한국노동연구원, 2002.

안주엽·노용진·박우성 외 3인,『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Ⅰ)』, 정책연구 2001-05, 한국노동연구원, 2001.

어수봉,「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정책토론회, 1997.

원종욱·백화종·김태완,『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연구 2003-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병희,『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연구 2003-1, 한국노동연구원, 2003.
이정우,「이혼여성을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개선방안」,『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2003, pp.63～95.
_____,『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02.
통계청,「경제활동부가조사」, 각 연도.

Bundesministerium für Sozialversicherung, *Schweizerisc Sozialversicherungsstatistik 2004 - Gesamtrechnung, Hauptergebnisse und Zeitreihen der AHV, IV, EL, BV, KV, UV, EO, ALV, FZ*, 2005.
Bundesministerium für Sozialversicherung, *Leitfaden AHV, IV, EO, EGL*, 2005.
Becker, S., Schweiz, DRV(ed.) *Rentenversicher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2003, pp.255～291.
Camir, B., *Staatliche Rentenversicherungssystem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 Eine Studie über die Systeme in Großbritannien, den Niederlanden, der Schweiz, den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Österreich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9.
Hauser, R., *Mindestsicherung innerhalb des Systems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Deutsche Rentenversicherung, Hf. 8-9, 1999, pp.471～479.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Ein Europa für alle Altersgruppen - Wohlstand und Solidarität zwischen den Generationen*, 1999.
Rahn, M., Österreich, DRV(ed.) *Rentenversicherung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2003, pp.167～206.
RFV, *The Swedish Pension System* - Annual Report, 2003.
____, *The Swedish National Pension System*, 2003.
____, *Information from the Insurance Office about Maintenance Support for the Elderly*, 2004.
Schüle, U., *Flexibilisierung der Altersgrenze*, 1988.

부 표

〈부표 1〉 산업별 고용유형의 분포(2001년)

(단위: 천명, %)

구분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전 체
전체	11,839 (100.0)	415 (100.0)	1,287 (100.0)	13,540 (100.0)
농림어업	121 (1.0)	7 (1.6)	37 (2.9)	165 (1.2)
제조업(광업 포함)	3,243 (27.4)	14 (3.4)	196 (15.3)	3,453 (25.5)
전기·가스·수도사업	51 (0.4)	1 (0.2)	3 (0.2)	55 (0.4)
건설업	1,013 (8.6)	46 (11.1)	180 (14.0)	1,239 (9.2)
도매 및 소매업	1,494 (12.6)	46 (11.2)	266 (20.7)	1,807 (13.3)
숙박 및 음식점업	957 (8.1)	5 (1.2)	73 (5.7)	1,035 (7.6)
운수업	611 (5.2)	6 (1.4)	79 (6.1)	696 (5.1)
통신업	177 (1.5)	4 (0.9)	11 (0.8)	192 (1.4)
금융 및 보험업	463 (3.9)	3 (0.6)	216 (16.8)	682 (5.0)
부동산 및 임대업	213 (1.8)	13 (3.2)	11 (0.9)	238 (1.8)
사업서비스업	712 (6.0)	245 (58.9)	48 (3.7)	1,004 (7.4)
기타서비스업	2,783 (23.5)	26 (6.3)	167 (13.0)	2,976 (22.0)
전체	87.4	3.1	9.5	100.0
농림어업	73.3	4.2	22.5	100.0
제조업(광업 포함)	93.9	0.4	5.7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93.0	1.2	5.8	100.0
건설업	81.8	3.7	14.5	100.0
도매 및 소매업	82.7	2.6	14.7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92.5	0.5	7.1	100.0
운수업	87.8	0.8	11.4	100.0
통신업	92.5	2.0	5.5	100.0
금융 및 보험업	68.0	0.4	31.6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89.7	5.5	4.8	100.0
사업서비스업	70.9	24.4	4.7	100.0
기타서비스업	93.5	0.9	5.6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산업별 고용유형의 분포(2002년)

(단위: 천명, %)

구분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전 체
전체	12,288 (100.0)	407 (100.0)	1,334 (100.0)	14,030 (100.0)
농림어업	96 (0.8)	0 (0.0)	43 (3.2)	139 (1.0)
제조업(광업 포함)	3,288 (26.8)	14 (3.3)	176 (13.2)	3,477 (24.8)
전기·가스·수도사업	51 (0.4)	0 (0.0)	1 (0.1)	52 (0.4)
건설업	1,016 (8.3)	18 (4.3)	258 (19.3)	1,291 (9.2)
도매 및 소매업	1,582 (12.9)	37 (9.2)	258 (19.3)	1,877 (13.4)
숙박 및 음식점업	1,018 (8.3)	8 (1.9)	69 (5.2)	1,095 (7.8)
운수업	596 (4.8)	5 (1.1)	70 (5.3)	671 (4.8)
통신업	186 (1.5)	3 (0.7)	10 (0.7)	199 (1.4)
금융 및 보험업	485 (3.9)	3 (0.8)	185 (13.8)	673 (4.8)
부동산 및 임대업	217 (1.8)	10 (2.4)	20 (1.5)	247 (1.8)
사업서비스업	731 (5.9)	296 (72.7)	47 (3.5)	1,073 (7.7)
기타서비스업	3,024 (24.6)	15 (3.6)	197 (14.8)	3,236 (23.1)
전체	87.6	2.9	9.5	100.0
농림어업	68.9	0.0	31.1	100.0
제조업(광업 포함)	94.6	0.4	5.1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97.5	0.0	2.5	100.0
건설업	78.7	1.4	20.0	100.0
도매 및 소매업	84.3	2.0	13.7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93.0	0.7	6.3	100.0
운수업	88.8	0.7	10.5	100.0
통신업	93.6	1.5	5.0	100.0
금융 및 보험업	72.1	0.5	27.5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88.1	3.9	8.0	100.0
사업서비스업	68.1	27.6	4.3	100.0
기타서비스업	93.4	0.5	6.1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3〉 산업별 고용유형의 분포(2003년)

(단위: 천명, %)

구분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전 체
전체	12,471 (100.0)	417 (100.0)	1,261 (100.0)	14,149 (100.0)
농림어업	103 (0.8)	0 (0.0)	37 (2.9)	140 (1.0)
제조업(광업 포함)	3,301 (26.5)	8 (2.0)	160 (12.7)	3,469 (24.5)
전기·가스·수도사업	76 (0.6)	0 (0.0)	0 (0.0)	76 (0.5)
건설업	977 (7.8)	8 (2.0)	332 (26.4)	1,318 (9.3)
도매 및 소매업	1,552 (12.4)	31 (7.4)	202 (16.0)	1,785 (12.6)
숙박 및 음식점업	951 (7.6)	3 (0.8)	65 (5.1)	1,019 (7.2)
운수업	549 (4.4)	3 (0.7)	42 (3.3)	595 (4.2)
통신업	193 (1.5)	0 (0.0)	17 (1.4)	210 (1.5)
금융 및 보험업	534 (4.3)	1 (0.4)	160 (12.7)	695 (4.9)
부동산 및 임대업	225 (1.8)	10 (2.3)	22 (1.8)	258 (1.8)
사업서비스업	799 (6.4)	338 (81.2)	48 (3.8)	1,186 (8.4)
기타서비스업	3,211 (25.7)	13 (3.2)	175 (13.9)	3,399 (24.0)
전체	88.1	2.9	8.9	100.0
농림어업	73.5	0.0	26.5	100.0
제조업(광업 포함)	95.1	0.2	4.6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100.0	0.0	0.0	100.0
건설업	74.1	0.6	25.2	100.0
도매 및 소매업	87.0	1.7	11.3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93.3	0.3	6.4	100.0
운수업	92.4	0.5	7.1	100.0
통신업	91.8	0.0	8.2	100.0
금융 및 보험업	76.8	0.2	23.0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87.5	3.8	8.7	100.0
사업서비스업	67.4	28.6	4.1	100.0
기타서비스업	94.5	0.4	5.1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4〉 산업별 고용유형의 분포(2004년)

(단위: 천명, %)

구분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전 체
전체	12,636 (100.0)	498 (100.0)	1,450 (100.0)	14,584 (100.0)
농림어업	100 (0.8)	0 (0.0)	44 (3.0)	144 (1.0)
제조업(광업 포함)	3,378 (26.7)	14 (2.9)	202 (13.9)	3,595 (24.6)
전기·가스·수도사업	66 (0.5)	0 (0.0)	3 (0.2)	69 (0.5)
건설업	954 (7.6)	16 (3.3)	331 (22.8)	1,302 (8.9)
도매 및 소매업	1,583 (12.5)	27 (5.4)	209 (14.4)	1,819 (12.5)
숙박 및 음식점업	974 (7.7)	7 (1.4)	82 (5.6)	1,063 (7.3)
운수업	561 (4.4)	5 (1.0)	61 (4.2)	627 (4.3)
통신업	197 (1.6)	1 (0.3)	20 (1.4)	219 (1.5)
금융 및 보험업	507 (4.0)	2 (0.4)	178 (12.2)	687 (4.7)
부동산 및 임대업	231 (1.8)	11 (2.3)	22 (1.5)	264 (1.8)
사업서비스업	827 (6.5)	397 (79.8)	71 (4.9)	1,296 (8.9)
기타서비스업	3,258 (25.8)	16 (3.3)	227 (15.7)	3,501 (24.0)
전체	86.6	3.4	9.9	100.0
농림어업	69.4	0.0	30.6	100.0
제조업(광업 포함)	94.0	0.4	5.6	100.0
전기·가스·수도사업	96.0	0.0	4.0	100.0
건설업	73.3	1.3	25.4	100.0
도매 및 소매업	87.0	1.5	11.5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91.7	0.6	7.7	100.0
운수업	89.4	0.8	9.8	100.0
통신업	90.0	0.7	9.3	100.0
금융 및 보험업	73.8	0.3	25.8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87.5	4.3	8.3	100.0
사업서비스업	63.8	30.7	5.5	100.0
기타서비스업	93.0	0.5	6.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5〉 산업별 고용별 근로자수(2001년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3,540	10,195	1,056	298	127	288	769	219	587
농림어업	165	71	37	34	6	1	2	1	13
제조업(광업 포함)	3,453	3,061	143	31	6	8	52	113	39
전기·가스·수도사업	55	43	7	0	1	0	3	0	1
건설업	1,239	704	265	154	17	30	23	2	45
도매 및 소매업	1,807	1,324	85	9	44	2	243	14	85
숙박 및 음식점업	1,035	738	84	31	3	2	38	3	134
운수업	696	573	31	6	3	2	70	4	7
통신업	192	157	19	0	4	0	10	1	1
금융 및 보험업	682	410	50	2	1	2	212	2	3
부동산 및 임대업	238	188	16	0	2	11	11	0	9
사업서비스업	1,004	643	61	9	23	221	31	8	8
기타서비스업	2,976	2,283	258	21	16	10	74	72	24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2	0.7	3.5	11.5	4.7	0.3	0.3	0.3	2.2
제조업(광업 포함)	25.5	30.0	13.6	10.3	4.9	2.8	6.8	51.5	6.7
전기·가스·수도사업	0.4	0.4	0.6	0.0	0.5	0.0	0.4	0.2	0.2
건설업	9.2	6.9	25.0	51.8	13.0	10.3	3.0	0.9	7.6
도매 및 소매업	13.3	13.0	8.1	3.1	34.9	0.7	31.5	6.4	14.5
숙박 및 음식점업	7.6	7.2	8.0	10.5	2.7	0.5	5.0	1.6	22.8
운수업	5.1	5.6	2.9	1.9	2.7	0.8	9.1	1.6	1.2
통신업	1.4	1.5	1.8	0.0	3.1	0.0	1.2	0.4	0.2
금융 및 보험업	5.0	4.0	4.7	0.6	0.9	0.5	27.6	0.9	0.6
부동산 및 임대업	1.8	1.8	1.5	0.0	1.4	3.9	1.5	0.0	1.6
사업서비스업	7.4	6.3	5.8	3.0	18.3	76.8	4.0	3.6	1.3
기타서비스업	22.0	22.4	24.4	7.1	13.0	3.3	9.6	32.7	41.2
농림어업	100.0	42.9	22.6	20.8	3.6	0.6	1.4	0.4	7.9
제조업(광업 포함)	100.0	88.6	4.1	0.9	0.2	0.2	1.5	3.3	1.1
전기·가스·수도사업	100.0	79.3	11.9	0.0	1.2	0.0	5.0	0.8	1.9
건설업	100.0	56.8	21.4	12.5	1.3	2.4	1.9	0.2	3.6
도매 및 소매업	100.0	73.3	4.7	0.5	2.5	0.1	13.4	0.8	4.7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71.3	8.2	3.0	0.3	0.1	3.7	0.3	13.0
운수업	100.0	82.3	4.5	0.8	0.5	0.3	10.0	0.5	1.0
통신업	100.0	81.8	10.1	0.0	2.0	0.0	5.0	0.5	0.6
금융 및 보험업	100.0	60.1	7.3	0.3	0.2	0.2	31.1	0.3	0.5
부동산 및 임대업	100.0	79.2	6.6	0.0	0.8	4.7	4.8	0.0	4.0
사업서비스업	100.0	64.1	6.1	0.9	2.3	22.0	3.0	0.8	0.8
기타서비스업	100.0	76.7	8.7	0.7	0.6	0.3	2.5	2.4	8.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1.

〈부표 6〉 산업별 고용별 근로자수(2002년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4,030	10,601	1,123	412	92	316	743	179	565
농림어업	139	57	27	37	0	0	5	0	12
제조업(광업 포함)	3,477	3,084	162	46	9	4	46	84	42
전기·가스·수도사업	52	44	6	1	0	0	1	0	1
건설업	1,291	671	298	227	9	8	28	3	46
도매 및 소매업	1,877	1,397	95	9	36	2	236	13	90
숙박 및 음식점업	1,095	821	84	39	3	4	29	1	112
운수업	671	559	32	5	1	4	65	0	5
통신업	199	162	20	1	2	1	8	1	5
금융 및 보험업	673	423	58	3	0	3	180	2	5
부동산 및 임대업	247	185	18	1	0	10	17	2	14
사업서비스업	1,073	652	64	14	24	272	26	7	15
기타서비스업	3,236	2,544	258	28	8	7	101	68	2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0	0.5	2.4	9.1	0.0	0.0	0.7	0.2	2.1
제조업(광업 포함)	24.8	29.1	14.4	11.2	10.0	1.4	6.2	46.8	7.3
전기·가스·수도사업	0.4	0.4	0.5	0.1	0.0	0.0	0.1	0.0	0.1
건설업	9.2	6.3	26.6	55.1	10.1	2.7	3.8	1.6	8.1
도매 및 소매업	13.4	13.2	8.5	2.1	38.8	0.6	31.8	7.2	15.8
숙박 및 음식점업	7.8	7.7	7.5	9.6	3.3	1.4	3.9	0.4	19.8
운수업	4.8	5.3	2.9	1.3	0.7	1.3	8.7	0.2	0.8
통신업	1.4	1.5	1.7	0.2	1.9	0.4	1.1	0.3	0.8
금융 및 보험업	4.8	4.0	5.2	0.8	0.4	0.9	24.2	0.8	0.8
부동산 및 임대업	1.8	1.7	1.6	0.2	0.2	3.0	2.3	0.9	2.4
사업서비스업	7.7	6.2	5.7	3.4	25.9	86.2	3.5	3.6	2.6
기타서비스업	23.1	24.0	23.0	6.9	8.6	2.1	13.6	37.8	39.2
농림어업	100.0	41.0	19.3	27.0	0.0	0.0	3.8	0.3	8.7
제조업(광업 포함)	100.0	88.7	4.6	1.3	0.3	0.1	1.3	2.4	1.2
전기·가스·수도사업	100.0	85.0	11.3	1.0	0.0	0.0	1.5	0.0	1.2
건설업	100.0	52.0	23.1	17.6	0.7	0.6	2.2	0.2	3.6
도매 및 소매업	100.0	74.4	5.1	0.5	1.9	0.1	12.6	0.7	4.8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75.0	7.7	3.6	0.3	0.4	2.7	0.1	10.2
운수업	100.0	83.3	4.8	0.8	0.1	0.6	9.6	0.1	0.7
통신업	100.0	81.4	9.9	0.4	0.9	0.6	4.2	0.3	2.3
금융 및 보험업	100.0	62.8	8.6	0.5	0.1	0.4	26.8	0.2	0.7
부동산 및 임대업	100.0	75.1	7.4	0.4	0.1	3.9	7.0	0.6	5.5
사업서비스업	100.0	60.8	5.9	1.3	2.2	25.4	2.4	0.6	1.4
기타서비스업	100.0	78.6	8.0	0.9	0.2	0.2	3.1	2.1	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2.

〈부표 7〉 산업별 고용별 근로자수(2003년 기준)

(단위: 천 명, %)

구분	임금근로 전체	무기계약 근로	유기계약 근로	일용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 근로	재택근로	시간제 근로
전체	14,149	10,032	1,792	589	94	322	551	121	647
농림어업	140	43	45	36	0	0	0	0	15
제조업(광업 포함)	3,469	2,979	282	52	8	1	44	64	40
전기·가스·수도사업	76	68	7	0	0	0	0	0	1
건설업	1,318	531	405	315	5	3	17	0	41
도매 및 소매업	1,785	1,273	168	33	31	0	161	8	111
숙박 및 음식점업	1,019	697	139	55	2	1	9	1	116
운수업	595	505	39	7	3	0	35	0	5
통신업	210	161	24	5	0	0	12	0	8
금융 및 보험업	695	433	95	0	1	0	160	0	5
부동산 및 임대업	258	169	46	2	1	9	21	0	10
사업서비스업	1,186	661	128	32	33	305	12	4	10
기타서비스업	3,399	2,512	415	50	10	3	82	43	28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0	0.4	2.5	6.2	0.0	0.0	0.1	0.3	2.3
제조업(광업 포함)	24.5	29.7	15.7	8.8	8.1	0.2	8.0	53.2	6.2
전기·가스·수도사업	0.5	0.7	0.4	0.0	0.0	0.0	0.0	0.0	0.2
건설업	9.3	5.3	22.6	53.5	5.7	1.0	3.0	0.3	6.3
도매 및 소매업	12.6	12.7	9.4	5.6	32.3	0.1	29.1	6.8	17.2
숙박 및 음식점업	7.2	6.9	7.7	9.4	2.3	0.3	1.5	0.8	17.9
운수업	4.2	5.0	2.2	1.3	3.2	0.0	6.3	0.0	0.8
통신업	1.5	1.6	1.3	0.9	0.0	0.0	2.2	0.0	1.2
금융 및 보험업	4.9	4.3	5.3	0.0	1.1	0.1	29.0	0.0	0.8
부동산 및 임대업	1.8	1.7	2.6	0.3	0.9	2.8	3.7	0.0	1.5
사업서비스업	8.4	6.6	7.1	5.5	35.4	94.7	2.2	3.1	1.6
기타서비스업	24.0	25.0	23.2	8.5	10.9	0.9	14.8	35.6	43.8
농림어업	100.0	30.7	32.0	26.1	0.0	0.0	0.3	0.2	10.7
제조업(광업 포함)	100.0	85.9	8.1	1.5	0.2	0.0	1.3	1.9	1.2
전기·가스·수도사업	100.0	89.3	9.0	0.0	0.0	0.0	0.0	0.0	1.7
건설업	100.0	40.3	30.7	23.9	0.4	0.2	1.3	0.0	3.1
도매 및 소매업	100.0	71.3	9.4	1.8	1.7	0.0	9.0	0.5	6.2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68.4	13.6	5.4	0.2	0.1	0.8	0.1	11.3
운수업	100.0	85.0	6.5	1.2	0.5	0.0	5.8	0.0	0.9
통신업	100.0	76.5	11.5	2.5	0.0	0.0	5.8	0.0	3.8
금융 및 보험업	100.0	62.3	13.7	0.0	0.1	0.1	23.0	0.0	0.8
부동산 및 임대업	100.0	65.6	18.0	0.7	0.3	3.5	8.0	0.0	3.9
사업서비스업	100.0	55.7	10.8	2.7	2.8	25.7	1.0	0.3	0.9
기타서비스업	100.0	73.9	12.2	1.5	0.3	0.1	2.4	1.3	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3.

〈부표 8〉 근로형태별 사회보험적용여부(2004년 기준)

(단위: %)

구분	미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건강	연금+고용	건강+고용	전부적용	전체
임금근로전체	37.0	0.2	1.4	1.2	9.3	0.3	0.8	49.9	100.0
상용근로자	2.3	0.1	0.8	0.4	15.2	0.2	0.6	80.4	100.0
임시근로자	67.4	0.3	3.0	2.4	3.4	0.4	1.3	21.7	100.0
일용근로자	95.3	0.2	0.3	1.5	0.6	0.2	0.2	1.7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4.

〈부표 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적용여부(2004년 기준)

(단위: %)

구분	미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건강	연금+고용	건강+고용	전부적용	전체
임금근로전체	37.0	0.2	1.4	1.2	9.3	0.3	0.8	49.9	100.0
무기계약근로	26.3	0.2	1.1	1.2	11.9	0.3	0.8	58.2	100.0
유기계약근로	39.9	0.1	1.2	1.1	5.3	0.5	0.7	51.2	100.0
시간제근로	93.7	-	1.2	1.5	0.5	0.1	0.7	2.3	100.0
일용근로	98.0	0.3	-	1.4	0.1	-	-	0.1	100.0
파견근로	31.1	-	2.9	1.5	0.9	-	0.4	63.2	100.0
용역근로	25.3	-	12.8	1.0	5.2	0.1	3.3	52.5	100.0
독립도급근로	69.1	0.6	1.9	1.0	3.4	0.1	0.8	23.1	100.0
재택근로	78.7	-	0.9	0.8	1.4	-	0.7	17.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 2004.

연구보고서 2005-07

경제여건 변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The Impact of Recent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 on National Pension Scheme

발행일 2005년 12월 일 값 6,000원
저 자 백 화 종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예원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ISBN 89-8187-348-8 93330